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 및 역할정립 방안

2025. 5.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 및 역할정립 방안” 연구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5. 5. 30.

- 제출기관: 자연환경국민신탁
- 연구책임: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 연구원: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정은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인은숙 (사회혁신연구소)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박정호 (사회혁신연구소)

Contents

	연구 요약	i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5
	3. 주요 연구내용	6
	4. 연구 흐름과 추진 방법	12
II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3
	1. 선행연구 개요	13
	2. 해외 사례 연구	25
	3. 한국 사례	57
	4. 종합 분석	65
III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 및 네트워크 분석	71
	1. K-SDGs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	71
	2. 11개 정부위원회 심층 분석	82
	3. 네트워크 분석	90
	4. 종합 분석	104
IV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107
	1. 개요	107
	2. 조사 경과 및 결과	109
	3. 종합 분석: 시사점	123

V	전문가 포럼 125 1. 개요 125 2. 운영 결과 130 3. 종합 분석 142
VI	위원회 간 협력의제 분석 145 1. 핵심 위원회 담당관 면담 분석 145 2. 국가위원회 - 관련 위원회 간 협력 의제 158
VII	결론 및 제언 165 1. 결론 165 2. 제언 169
부록	[부록 1] 향후과제: 법제 개선론 189 [부록 2] 12개 위원회 조사 자료 195 [부록 3] 정부위원회와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간 연관성 검토 총본 244 [부록 4] 네트워크분석(전체) 273 [부록 5] 국가위원회 - 정부위원회 간 협력 방안 277

<표 차례>	[표 1] 리더십과 수평적 통합 여부에 따른 실행 유형 17
	[표 2] 유형에 따른 분류 20
	[표 3]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특징 비교 56
	[표 4]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성 높은 정부위원회 71
	[표 5]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빈도(지표)가 가장 높은 11대 위원회 75
	[표 6]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위원회 연관성 77
	[표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위원회 82
	[표 8]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위원회의 등급 분포 82
	[표 9] 12개 정부위원회 요약 비교표 83
	[표 10] 정부위원회와 K-SDGs 간 연관성 87
	[표 11] 예상되는 정부위원회의 중첩 88
	[표 12] 위원회 중심성 분석 결과 94
	[표 13] 세부목표 중심성 분석 결과 98
	[표 14] 델파이 조사 대상자 108
	[표 15]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1. 응답자(전문가) 관점 분석 110
	[표 16]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2. 위원회 중첩 및 해소 방안 113
	[표 17]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 117
	[표 18]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1. K-SDGs와 국가위원회 120
	[표 19]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2. 위원회 간 중첩 양상 121
	[표 2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122

〈그림 차례〉	[그림 1] K-SDGs 비전 및 전략 (2021~2040)	6
	[그림 2]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	8
	[그림 3] 연구 흐름과 연구방법	12
	[그림 4] SDGs 주류화의 단계와 영역	19
	[그림 5] 그르넬 환경포럼 연혁	26
	[그림 6] 프랑스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29
	[그림 7]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35
	[그림 8] 독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40
	[그림 9] 일본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47
	[그림 10] 영국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50
	[그림 11]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55
	[그림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기별 특징	58
	[그림 13]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방향	64
	[그림 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위원회 도식화	99
	[그림 15]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 위원회와 목표	100
	[그림 16] SDG 11 관련 위원회 및 목표	100
	[그림 17] 경제사회분야 위원회와 목표	101
	[그림 18] 전문가 포럼 현장 모습 (1~4차)	128
	[그림 19] 전문가 포럼 현장 모습 (5~7차)	129
	[그림 20] K-SDGs 7번 의제(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양자 협의절차	160
	[그림 21] K-SDGs 7번 의제(에너지 복지, 에너지 기본권 확립) 다자 협의절차	163

I.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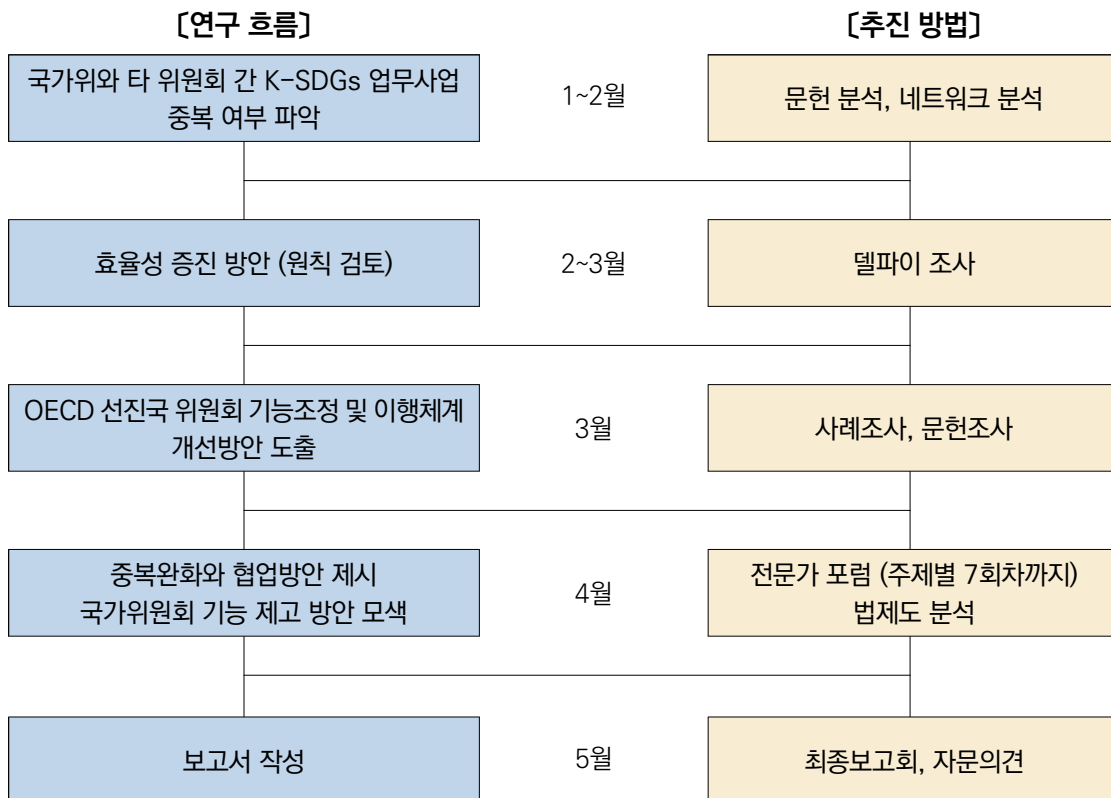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와 생태적 훼손으로 인한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속가능성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발전하였다.
 -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발표 이후 국제 사회는 환경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으나, 2002년 이후 환경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함.
 -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 이후의 과제로,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검토하여, 2015년 UN총회 결의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확정함.
-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에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2010)」에 의거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접근이 용이해졌다.
-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각 부처의 정책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고 소통한 경험이 있으나,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국가위원회는 타 부처 혹은 타 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여러 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들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함.
 - 반면, 여러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아서 국가위원회의 기본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본 연구는 기본법과 시행령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위원회 상호 간의 기능과 직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첩 및 협업 가능성을 조사·분석하여, 정부 기구(위원회 포함)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 운영 근거 및 기능 분석
 - K-SDGs 관련 주요 정부위원회 목록화 및 기능분석
 - 관련성이 높은 핵심위원회 선정
 - 상호역학관계, 네트워크 분석, 선진 사례 분석
- 주요 위원회의 기능·직역 중첩 및 협업 방안 제시
 - K-SDGs 역할에 대한 기능 중첩 여부 파악,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사례 분석을 통해 타 위원회와의 협업 방안 검토
 -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시
 -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위 구성, 위상, 역할에 대한 의견 제시
 - 연구내용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가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협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3. 연구 흐름과 추진 방법



II.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 선행 연구

- SDGs 국내 이행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류화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담론적인 수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 둘째, 법과 규정을 통해 SDGs를 정책체계에 반영하는 단계, 셋째, 제도적 이행장치로 새로운 부서를 두거나 사무국을 두어 이행효과를 살피고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수준에 이르는 단계이다.
 - 제도 통합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독일과 같이 부처 간 조정기관에서 SDGs 정책조정을 겸한 사례가 있음. 제도적 정합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분업화와 시차를 두어 조율,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거대담론적 지향은 구체적인 탄소중립, 불평등 완화, 정의로운 전환, 균형발전, 시민참여 등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적 정합성을 통해 구현되기도 함.
- SDGs 통합 이행을 위해 제도적 설계를 국가별로 유형화할 경우 4가지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리더십, 둘째, 수평적 통합성, 셋째, 수직적 통합성, 넷째, 사회적 통합성이다.
 - 정치적 리더십은 SDGs 이행 책임기관의 위상을 의미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속할 경우 부처 산하보다 파급력이 있음.
 - 수평적 통합성은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에 따라 달라짐. 소통과 조율에 의해 통합적 접근 가능.
 - 수직적 통합성은 중앙정부 하위 기관들이 SDGs 이행에 동참하는 정도로 평가되며, 지방정부 참여도 포함됨.
 - 사회적 통합성은 비정부 기구들의 참여, 즉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구의 참여가 광범위하고 영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가능함.
- 사례 선정 배경은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뚜렷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하나의 부처 중심 혹은 다양한 부처 참여에 따라 정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면서 참여 부처가 두 곳 혹은 다수인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지만 다수 부처 참여: 캐나다
 - 국무조정실 담당이면서 하나의 부처가 맡는 경우: 영국
 - 국무조정실과 두 부처가 중심이 되는 경우: 프랑스, 핀란드
 - 국무조정실(총리실)과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경우: 독일, 일본

2. 해외 사례

- 프랑스의 경우 생태전환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관할하며, 생태전환부에 속해 있다. 생태전환위원회가 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부처 간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총국(General Commission for SD)’이 있어서 국무조정실 역할을 맡는다. 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의 SDGs 이행과 국내 SDGs 이행계획은 ‘고위급 SDGs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들은 환경지속가능발전감사원, 이해관계자그룹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 생태전환위원회는 생태전환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국 담당 2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방선출직 공무원, 전문가, 기업, 환경단체, 시민사회(협회), 의회, 청년 분과로 나뉘어 각 8명씩 구성.
 - 기후고등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과학자, 경제 전문가 등 13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데이터와 자료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생태전환위원회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구분됨.
- 핀란드의 경우, 2016년 환경부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확대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기후법」은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법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보호법」, 「재생에너지촉진법」, 「공공조달법」, 「통계법」 등의 법률에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오히려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 SDGs 추진의 기반이며, 정부는 <2030 의제 이행계획> 로드맵에 따라 SDGs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의견을 받는다.
 -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며, 총리실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사무국을 담당. 공식회의 외에도 세미나, 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개발정책위원회와 협력.
 - 전문가 패널이 있어서 자체적인 연구 수행,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연구기관이 조정 업무를 지원함. 국정과제 평가 포럼을 운영하고, 국가위원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 지속가능발전 조정네트워크 의장은 국가위원회 사무차장이 맡고, 매월 회의 개최, 행정 부처의 책임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업무 조정에 참여하게 함.
 - 의회의 미래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입법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성명서 제출.
- 독일의 경우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전략(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기반하여 SDGs를 추진한다. 핀란드와 유사하게 관련 법으로 「기후보호법」, 「자원절약법」, 「재생에너지법」 등 개별 법률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돕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독

립적인 자문기구로 구성되었으며, 연방정부가 위원을 임명한다. 15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워크숍, 특별세션, 포럼 등 비정기 회의도 병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사무국 1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팀장은 전문가급 정책관이 맡으며, 컨퍼런스 개최.
-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조정기구로 전략 수립부터 이행점검, 정책평가, 국제보고, 주요 부처 정책 충돌 조정의 기능을 담당.
- 의회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는 2004년부터 운영되면서 각종 입법안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무시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청문회와 입장 문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 유럽 자문위원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제안을 모아서 회기 내 실행 요청.
- 정책 적합성을 위한 정책 조율에는 각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이 있어서 실무 코디네이터 네트워크가 작동함.
- 관련 위원회로는 사회통합연방위원회가 미래위원회로 변경되어, 교육, 고용, 디지털 전환 등 회복력과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주로 담당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거나, SDGs 권고사항을 통해 SDGs 이행에 관여함.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창생과 연계하여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하였다. SDGs 실시지침에는 Society 5.0, SDGs 기반의 지방창생, SDGs 이행 주역으로 미래세대와 여성 권한 강화가 포함되었다. SDGs 추진본부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근거는 없으나 내각의 결정에 근거한 강력한 정치기구이다. 일본의 정치적 특성상 정권의 변화가 없다 보니 2016년 작성되고, 2019년, 2023년 두 차례 개정된 실시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꾸준히 SDGs 이행이 우선시되고 있다.

- SDGs 추진본부는 실시지침과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지방창생 정책으로 '미래도시' 선정과 인증제도가 있음. SDGs 추진을 위해 간사회(관계부처회의)를 두어 SDGs 실시지침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실행계획에 반영.
- 관련 위원회로는 경제산업성 소속 녹색성장전략회의가 있어서 산업전환을 다루고, 환경성에는 지구환경부회 중앙환경협의회가 있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과 심의를 담당.
- 성평등은 총리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심의위원회, 고령사회대책회의 등이 SDGs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SDGs 이행에 입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

● 영국의 경우도 별도의 법제도 없이 SDG 이행은 국제개발부가 담당하다가 외교, 영연방 및 개발부로 개편되면서 이곳에서 SDGs 이행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회의 '환경감사위원회'가 국내 SDGs 관련 활동을 점검한다.

- 관련 위원회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있어서 탄소중립 정책 자문, 감축방안 제시.
- 연료빈곤위원회는 넷제로로 인해 연료 빈곤문제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 이 외에 SDGs 이행과 관련된 계획은 각 부처별 계획으로 수립되고, 각 부처의 이행계획을 총리실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종합.
- 캐나다는 연방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환경기후변화부가 이를 담당하며, 3년마다 지속가능성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를 두게 했고, 각 지방정부 1인씩 10인, 준주대표 1인씩 3인, 선주민대표 6인, 환경단체, 기업, 노조 등에서 3명씩 참여한다. 주로 2030의제 국가전략, 연방 이행계획 등을 작성하는 데 의견을 개진한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사무국을 설립하고, 자문위원회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 전략 초안에 대해 위원회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부처 간 차관보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는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구성.
- 각 부처가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내고, 이행계획을 집행함.

3. 종합분석

- 행정-입법-시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정합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부와 의 협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로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의제 실현에서 SDGs 세부목표 연계와 통합적 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은 거버넌스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통합성은 지방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장이 활발해지고,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강화될 여지가 크다.
- 부처 간, 위원회 간 협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써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등장한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 간 조율 방법(예, 정책조정 소위원회)과 정례적인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하는 방법(부처별 SDGs 담당)이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아직 흔하지는 않지만, 정책 주류화 모델로서 성인지예산제도나 기후예산 등과 같은 범부처적(Cross-cutting) 쟁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정가치와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바라보면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 및 네트워크 분석

1. K-SDGs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

-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K-SDGs를 조사 분석 틀로 사용했다.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비전과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정부 정책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총 198개이다.
- K-SDGs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575개(2024.12. 기준, 헌법기관 포함) 중,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는 103개로 나타났다.
 - 국가위원회에 통보 의무가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 198개의 소관 심의·자문 위원회 확인 결과, 103개 위원회가 확인됨. 이 가운데 K-SDGs 지표에 대한 연관 빈도가 가장 높은 정부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30개)이고, 이어 양성평등위원회(17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6개), 사회보장위원회(14개), 국가물관리위원회(12개) 등이 뒤를 이음.
- K-SDGs 지표(236개)와 연관성이 높은 상위 11개 위원회의 연관 정도는 61.4%(145개)를 차지했다.
 - 위원회별 관련 정부위원회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간 중첩 및 협력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빈도(지표)가 가장 높은 11대 위원회〉

구분	정부위원회	소속	K-SDGs 연관빈도(지표)	
			연관 수(개)	비중(%)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30	12.7
2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17	7.2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16	6.8
4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14	5.9
5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12	5.1
6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12	5.1
7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11	4.6
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9	3.8
9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9	3.8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	8	3.4
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7	3.0
합계			145	61.4 (145/236)

2. 11개 정부위원회 심층 분석

-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연관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낮은 정부위원회 중에서도 K-SDGs의 4대 전략(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과 정부위원회별 소속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정부위원회 11개를 다시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12개 정부위원회 요약 비교표〉

주요항목	국가 지속위	탄핵위	양성 평등위	저출산·고령위	사회 보장위	국가물관리위	중앙환경 정책위	농어업·농어촌위	평생교육 진흥위	국제개발 협력위	아동정책 조정위	경제사회 노동위	
소속 (주관)	대통령 (국무조정실)	대통령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대통령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대통령 (농축산부)	교육부 (교육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대통령 (고용노동부)	
성격	자문,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위원구성 (공무원/민간)	55명 (12명/43명)	52명 (22명/30명)	25명 (15명/10명)	24명 (9명/15명)	구성 중 (15명/00)	38명 (10명/28명)	150명 (1명/149명)	30명 (5명/24명)	20명 (10명/10명)	29명 (15명/14명)	25명 (10명/15명)	17명 (2명/14명)	
분과	5개 지속가능발전 전략전문, 포용적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대응, 이해관계자협력	5개 총괄기획,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 적응, 녹색성장·국제 협력	3개 실무,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 참여	4개 운영, 일생돌봄, 백세사회, 미래전략	7개 실무, 전문(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 데이터, 제도통합)	3개 계획, 물분쟁조정, 정책	7개 환경정책,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 보건화학/ 생활환경	7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특위)미래산림, 미래수산, 농업세계개선, 바이오경제	1개 평생교육실무 조정	3개 국제개발협력, 실무, 평가	1개 아동정책실무	8개 운영, 의제개발조정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	
K-SDGs 세부 목표 지표 연관	빈도 (개)	-	30	17	16	14	12	12	9	9	8	7	3
	연관 정도 (등급)	-	(1)	(2)	(3)	(3)	(4)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관 정도 등급기준 : 빈도수 20개 이상(1등급), 15~19개(2등급), 10~14개(3등급), 5개~9개(4등급), 4개 미만(5등급) 연관성이 있는 총 103개 위원회 기준 : 1등급(1개), 2등급(2개), 3등급(4개), 4등급(17개), 5등급(79개) 													
위원회 운영인력*	추진단 (10명) 3개팀	사무처 (58명) 4개국, 2개관, 8개과, 6개팀	사무국 (없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사무국 (59명) 3개국, 11개과	사무국 (38명) 3개과	지원단 (58명) 4개팀	사무국 (없음)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사무국 (29명) 6개팀	사무국 (없음) 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 정책관 평생직업교육 기획과	국제개발 협력본부 (35명) 2개국, 6개과	사무국 (없음)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사무처 (40명) 1개국, 3개실, 2개과	
2024년 예산편성 (천원)	729,000	5,165,000	0	10,497,000	3,265,000	4,511,000	2,002	3,388,000	4,500	2,972,000	0	3,530,000	
2025년 예산편성 (천원)	628,000	5,049,000	0	- (미공개)	- (미공개)	4,253,000	0	3,447,000	4,500	5,396,000	0	3,905,000	
2024년 회의실적 (소위원회 운영 포함)	6	32 (2024.9. 기준)	4	12	42	7 (2024.6. 기준)	64	38	1	9 (2024.9. 기준)	2	119	

* 파견 인력 포함.

- 11개 정부위원회별 '운영 목적, 주요 심의·자문 사항,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결과, 국가위원회 및 타 위원회와 중첩 가능 지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정부위원회의 중첩〉

정부위원회	위원회 핵심 내용	연관 정부위원회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정책 심의 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2, G7, G9, G11, G12, G1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가환경종합계획(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품종 개발 등)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4, G5, G8, G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생애 전반성·재생산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정책(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 G3, G4, G5)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빈곤과 취약계층 실질적 보장, 회복력 강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률,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계획(성·재생산 건강 증진 도모)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주요 시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 G2, G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빈곤층과 취약계층 실질적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약자보호(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중요사항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농어촌지역 안전한 식수 보급)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물·상하수도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주요 환경관련 정책·계획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3, G9, G11, G12, G15)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본계획(자원순환 부문 등)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하천유역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정부위원회	위원회 핵심 내용	연관 정부위원회	주요내용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2, G6, G1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기후위기대응 품종개발 등)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정책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계획·전략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조정 및 심사·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6, G1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 정책 수립 및 범부처 차원의 주요 아동 정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3, G4, G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 사회적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등 협의,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도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8, G10)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계획(성별임금격차 개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강화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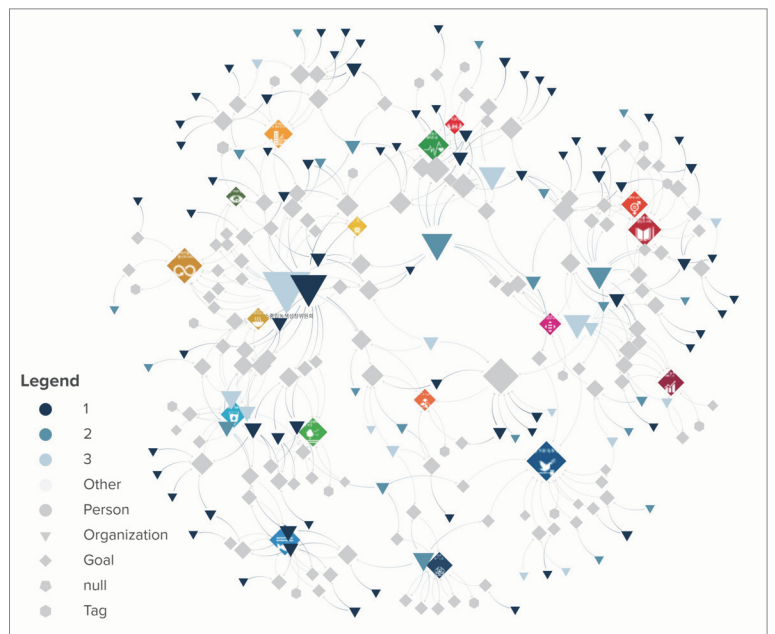
3.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대상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복잡한 관계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SDGs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103개 관련 위원회를 맵핑하고, 이들 사이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 위원회 중심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연계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는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순이었음.
- 목표 중심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세부목표는 16번 목표이나, 앞서 관련 위원회 분석 결과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3번, 4번, 11번 목표가 18개 위원회와 연계되고, 9번 목표가 14개 위원회, 16번 목표가 11개 위원회와 연계된다. 목표와 지표가 많고, 다양한 위원회와 연결된다

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부서, 범분야 이슈일 확률이 높다. 그런 점에서 9번 목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성이 필요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범분야이다. 반면 6번 목표와 7번 목표는 물과 에너지라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참여대상이 다소 한정됨을 알 수 있었다.

- 세부목표 9-3, 9-2 등이 경제분야 목표 중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데이터 정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등 관련 위원회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목표이며, 중소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목표임. 시와 기후위기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
- 세부목표 6-5는 통합적 수질관리 이행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소속의 위원회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환경과 농업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목표임. 따라서 다양한 위원회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목표임.
- 세부목표 4-2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 보장인데, 아동빈곤, 유아교육 및 보육, 아동정책, 성평등, 국가재정 운용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용이한 구조로 보아서 특정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례임.
- 세부목표 3-1, 3-7은 건강과 관련된 목표이나, 부처 소속 위원회로 접근성이 낮음. 따라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협조 대상이자 가교 역할 가능.
- 이 외에도 고령화 사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부목표(3-8) 등이 협력 이슈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 위원회 도식화 결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중첩 부분이 크며, SDG 12, 7, 13, 2, 6 등에서 관련성이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아무도 소외되지 않기, 환경과 생태적 전환 등에 무게를 두고, 미래와 혁신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목표와 관련하여 협업할 위원회는 잘 드러나지 않고, 환경과 사회분야 목표와 관련하여 위원회 간 중첩/협업 지점이 많이 포착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위원회 도식화〉

4. 종합 분석

-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들은 교육, 기후위기 대응, 인권, 불평등 해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등과 같은 교차 쟁점(cross-cutting issues)에 해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를 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특성을 볼 때,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중첩(업무 및 소관)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갖는다.
- 국가위원회 외 11개 주요 정부위원회 간에도 정책 분야와 방향성 등에서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주제가 그만큼 시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위원회 간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중복으로만 보기보다는 시너지를 내기 위한 상호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
- 정부위원회 간 중첩 관련, 국가위원회에 상호 소통 및 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현재 국가위원회가 가진 권한은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슷한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치므로, 점차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발생하는 중첩에 대해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가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시, 해당 정부위원회와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기준)에 대한 소통과 협의 추진. 또한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서면 협의뿐 아니라 해당 정부위원회의 위원 등이 참여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음.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K-SDGs 17개 목표별 정책, 지표와 통계, 이해관계자 협력과 사회갈등 조정 등 다양한 영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및 부처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원활하게 총괄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IV.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1. 목적 및 개요

- 목적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중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중첩 해소 또는 협력 방안 도출.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및 위상 제고 방안 마련.
- 대상
 - 정부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K-SDGs 분야별 관련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
- 방법
 - 3단계 진행('문항 설계' - '1·2차 조사' - '결과 분석'), 사전 협의 후 E-Mail 통한 서면조사 실시.

2. 조사 경과 및 결과

- 1차 조사 주요 문항 및 결과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추진, 달 성 수준	2.5	0.7	27.3	●
	* 응답 평균 2.5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인식 부족 및 소극적인 정책 추진"을 꼽음			
국가위원회와 적극 협업 할 필요가 있는 정부위원 회 상위 3개	[위원회별 빈도(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9 사회보장위원회 :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5 양성평등위원회 : 4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 국가물관리위원회 :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1	지방시대위원회 : 1 국가재정운용위원회 : 1 국가인권위원회 : 1 국민경제자문회의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	●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국가위원회-정부위원회 간 중첩 동의 여부	3.3	1.0	28.9	●
	* 응답 평균 3.3점("보통이다" 수준) * 조사에서 '중첩'을 '상충' 또는 '협력 지점' 두 가지를 아우르는 의미로 제시함 * 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라 '중첩'에 대한 응답이 엇갈림. 중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 은 경우(4점 이상), 대체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염두에 둠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국가위원회 총괄 역할(권고/조언) 강화 동의 여부	4.2	0.7	17.5	●
	*응답 평균 4.2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함. 정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고, 위원회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합적 관점에 공감.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현재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 적절성	2.0	0.8	40.8	●
	*응답 평균 2.0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현재 추진단 규모가 '위원회 개최' 및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방대한 정부 조직 및 위원회 간 총괄조정 역할 수행에 무리"라고 평가			

● 2차 조사 주요 문항 및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2. 위원회 간 중첩 양상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사이에서 중첩은 보통 정도이며, 어느 정도 중첩은 필요하다. 또한 중첩은 '중복(충돌)' 또는 '협력지점'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4.3	0.9	22.2
	*응답 평균 4.3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며, "협력시대 발굴, 상호 시너지 도모 필요하다는 점" 등 제시 "디지털/녹색/인구 대전환 시기 맞아 중첩은 불가피. 관련 담론 개발 통해 상호 협력 필요성 부각", "에너지전환, 탄소 저감과 산업 재편 전략 수립 등 영역별 역할 조정 통해 상호 시너지 제고 가능"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이 중첩 사례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부처 또는 위원회와 협의·조정', '빠른 회신' 등 절차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4.2	0.6	13.8
	*응답 평균 4.2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며, 추가 의견으로 "정부위원회와 국가위원회 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어느 결정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합의 필요" 등이 거론됨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 중, 사무국(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와 예산은 업무 대비 상당히 열악하며, 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 역시 충분하지 않다	4.6	0.7	14.4
	*응답 평균 4.6점("매우 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매우 동의"하며, "현재 국가위원회와 추진단 모두 예산, 조직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데 공감함.		

3. 종합 분석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으며, 정부는 K-SDGs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과 업무상 '중첩'은 일정 부분 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 '중복' 또는 '협력 지점'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협력 지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는 정부위원회와의 대표적 중첩 사례로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이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부처 또는 정부위원회와 협의/조정', '국가위원회의 빠른 회신'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 국가위원회는 K-SDGs 이행 및 정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는 총괄 역할(권고/조언/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질적 운영체계 구축 및 영향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회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성격, 직제, 인력, 예산 규모 등)은 현재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향후 K-SDGs 이행 과정에서 위원회 간 협력을 포함한 총괄 역할(권고/조언)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사무국)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국가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을 강화해야 한다.

V. 전문가 포럼

1. 목적 및 개요

-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확인 및 위원회 간 협력 필요성 논의
 - K-SDGs 이행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운영 개선, 정책연계 방안 도출
- 대상
 - 정부 주요 위원회 참여 경험자,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48명 (그룹별 7~8명)
 - 7개 그룹(분야) : 환경1·2, 사회1·2, 경제·과학, 거버넌스, 전현직 공직자
- 방법
 - 공동연구진 촉진(모더레이팅) 기반 숙의공론 방식 진행 (그룹별 2시간씩)

2. 조사 결과 및 분석

-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위원회 간 협업의 구조적 한계 인식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위원회 간 지속가능발전 쟁점에 대한 협의 체계(프로토콜)와 연계망(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 정부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공유 및 회의 구조를 디지털화하여 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정부위원회 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정책 조정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을 대중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활성화와 강화를 위하여 국가위원회 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 기능 확대 및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지역 기반 확산과 지방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VI. 위원회 간 협력 의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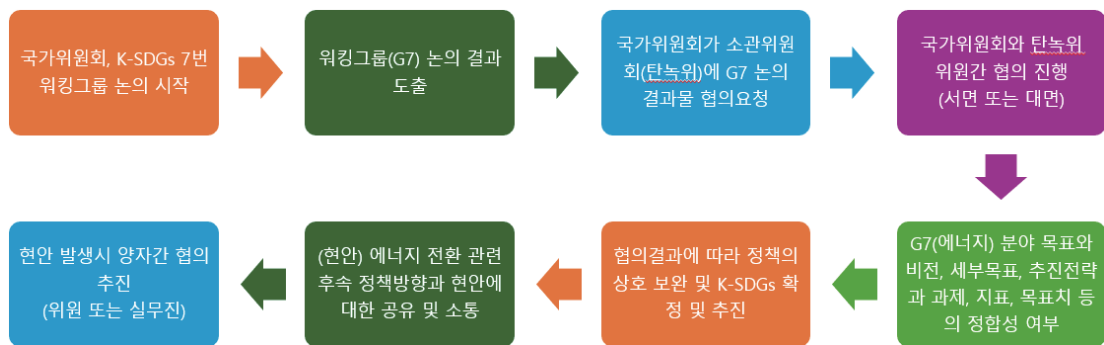
1. 핵심위원회 담당관 면담 분석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핵심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각 위원회 담당관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K-SDGs에 대한 이해도, 타 위원회와의 소통 경험, 협력 사업 경험, 협력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중첩의 문제의식이나 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대개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잦은 담당자 변경과 SDGs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협업을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보였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SDGs에 대한 정부 보고서 작성에서 협업도 가능하고 SDGs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가능. 타 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위원들의 교차참여, 연석회의의 방법 활용 제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재부와 외교부 내부에서 원조사업 대부분을 결정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SDGs 관심도 및 협력 가능성이 낮음.
- **국가물관리위원회:** SDGs에는 수리권, 녹조, 기후변화대응담 등 현안에 대한 목표는 없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역할에 협력 가능. 특히 국가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녹조나 수리권에 대하여 협력지점 발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갈등관리에 주력하므로 SDGs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역동성에 차이가 있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남녀 임금격차에 관하여 각 담당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협력에 어려움 있음.
- **양성평등위원회:** 다양한 위원회와 부처에서 양성평등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협업과 협력이 필요한 접점이 있더라도 실행조직의 차이로 인해 책임 소재의 불분명, 다자간 협업의 어려움 예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선을 넘는 과제로 인식. 목표는 상향식으로 만들더라도 목표이행이나 지표점검은 하향식도 필요. 지속가능발전 지표 총괄하는 위원회가 먼저 제안한다면 소통과 협력 가능. 단계적 소통 바람직.
-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의 상황상 협력사무 가늠이 어려움.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이라면 타 정부위원회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공동위원장 체제 제안, 협업 의제는 국가위원회에서 먼저 발굴하고 제안하길 바람.
- **시사점:** 협업과 협력 경험이 낮고, 상호 협력을 위한 행정적, 절차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 이 외에도 협업 의제 발굴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국가위원회-관련 위원회 간 협력 의제(안)

가. K-SDGs 7번(에너지 정책) 분야 정책 수립 단계

- 협의 주체 : 국가위원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자 간 협의)
- 협의 의제
 - SDGs 7번 목표(‘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및 비전(‘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적절성.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 세부 목표(‘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적절성.
 -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국가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 및 추진과제(‘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친환경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 적절성.
 - 추진 과제별 지표 적절성.
- 협의 절차



〈K-SDGs 7번 의제(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양자 협의 절차〉

나. 일상 추진 또는 점검 단계

- 협의 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전체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건물에너지효율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지표 추진 현황 점검.

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단계

- 협의 내용
 - 국가위원회는 탄녹위가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Ⅷ.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연구의 좌표와 방향

- 본 연구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좌표로 삼고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기반으로 삼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을 성찰하였다.
- UN사무총장의 「SDG 동향보고서」(2023)는 많은 목표가 중간에서 심각하게 궤도를 이탈하였고 분석하였음. 우리 국가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성평가 보고서」(2024)는 K-SDG 지표 중 절반 정도에 대하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유엔개발단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류화(Mainstreaming), 가속화(Acceleration), 정책지원(Policy Support)[MAPS]을 제시한다.
- 각 행정기관들이나 위원회들의 활동에서 서로 공통되거나 접점을 지니는 주제[예컨대, 일자리, 성평등, 기후행동, 탄소저감 또는 환경보전 등의 주제]를 하나로 연결하면, 즉 교차쟁점(cross-cutting issue)으로 통합하면, 전체 정책이나 인식증진에서 SDGs를 주류화시킬 수 있다.

나. 협업 우선순위 및 대상 위원회들

- 우리나라에서 정부위원회 간 협업 추진 우선순위로 꼽히는 SDGs는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10(불평등 해소),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및 목표 9(산업 성장과 혁신·사회기반시설 구축)이다.
- 국가위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사료된다.
- 위원회별 역할의 타당성 및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추가 가능한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겠다.

다. 현안과제

- 정부위원회들은 여러 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호 간의 협업이나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었음을 알게 되었다.
- 기본법상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은 종래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이루어 경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위원회의 조율이 필요하다.
- 정부위원회 실무진은 변화된 상황이나 여건에 따른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의 수립·변경·적용 요령을 적기에 숙지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고 국가위원회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조사 대상 선진국(프랑스·핀란드·독일·일본·캐나다)들은 대부분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협력 의제와 경로

- 국가위원회가 관련 정부위원회들과 협력 가능한 의제로서는 (가)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격차 등 국내의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K-SDGs의 재설정, (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제를 들 수 있다.
- 국가위원회가 관련 정부위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경로로서는 (가)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의 구축, (나) 부처별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기능 복원, (다) 지방위원회 지원체계 마련, (라) 국가위원회 역할·위상 재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 국가위원회 본회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방향[국가기본전략 또는 중앙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모색하고, 중요정책[법령안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포함한다]을 조율하며, 주요한 교차쟁점들을 검토하고 평가결과 등을 점검하는 고위급 책임관회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수평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 안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책조정 소(小)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주요 정부위원회 간 실무회의[작업단 Taskforce]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 중앙정부와 위원회들 상호 간의 수평적 협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시·도 사이의 수직적 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도 물론 필요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행정적 접근을 위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지 아니하고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예규로 협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

마.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정책 기능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가) 중앙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나) 법령안이나 행정 계획안에 대한 조율, (다) 관련 정부위원회들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지원·제안에 필요한 법제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 아울러 본 연구는 직제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 대통령 비서관(지속가능발전담당) 임명 및 자문위원 위촉, (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제, (다) 국가위원회 간사위원, (라) 전문위원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 관한 법제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상의 과제들이나 입법의견들이 당초 연구범위에 따른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델파이 조사 및 연속 포럼에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제언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위원회 기능분석에 따른 핵심 위원회 도출

1) 지속가능발전 주요 위원회 (연관분석 결과)

- K-SDGs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는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10개 이내의 위원회이며, 이들과의 전략적 연계가 SDGs 정책 실행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합성, 부처 간 시너지, 성과 중심의 SDGs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발생하는 중첩 지점에 대해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선 영역	제안 방안
검토체계	수립단계부터 사전검토기준 협의 및 검토 참여
협업방식	위원회 간 교차 참여(협의) 및 가치 공유
정보연계	지속가능발전포털 고도화, 합동 포럼 운영
실행역량	사무국 확충, 예산 확대, 위원회 중심 독립적 활동 강화
거버넌스	17개 목표별 다양한 소관 위원회들과 협업 구조 마련

2) 정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가능성

-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각 위원회의 기능, 소관 법령, 심의 기능 유형, 예산 및 사업 내용을 종합하여 K-SDGs와의 기여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관련 핵심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할
통합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K-SDGs 조정·점검 총괄
기후·환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환경 전략 수립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사회 포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용사회 조성, 취약계층 대응
	사회보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노동·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 및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
물·생태계	국가물관리위원회	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글로벌 SDGs 연계 외교전략

나. 국가위원회와 타 정부위원회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세부실행안은 본문 참조)

1) K-SDGs 역할 분담 방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위원회 간 기능의 구분이 필요하다. 큰 원칙은 국가위원회는 K-SDGs 관련 기본전략과 정책의 총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소관분야 정부위원회와 소관부처는 추진계획과 정책을 검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영역	주체별 역할과 기능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소관 부처
K-SDGs 기본전략	기본전략 수립 총괄, 조정 / 심의	소관 기본전략 점검	전략 내용 수립 및 추진
K-SDGs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조정 및 협의 / 심의	소관 추진계획 점검	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지표 평가 총괄 / 심의	소관 지표 평가 및 점검	소관 지표 관리 및 데이터 취합
중장기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검토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 마련(송부)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시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 반영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립(변경)
일상정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의견 제시	관련 정책의 일상 추진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추진

2) K-SDGs 달성을 위한 협업 방안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 시 고려사항〉

- K-SDGs 수립 시 공동으로 목표 설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위원회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협업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K-SDGs의 성과 공유 및 공동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공동 책임에 기반한 위원회 간 수평적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1) K-SDGs 목표설정 및 지표관리 체계화

- K-SDGs 목표 및 지표 설계 시 해당분야 전문성이 높은 정부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목표별 지표관리와 성과 평가를 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운영한다.

(2)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의 내실화

-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검토 권한을 실질적인 협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사후 반영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정부 차원의 위원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위원회 간 주요안건, 정책 의제, 정책 연계, 성과공유,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1~3단계로 확대 운영한다.

(4) 정부위원회 연석회의 및 실무협의체 제도화

- K-SDGs 중심 정책과제의 효과적 이행과 범정부적 연계를 위하여, 각 위원회 고위급 연석회의, 분야별 실무협의체, 중앙-지방 책임관 협의체를 제도화시킨다.
- 이를 통해 위원회 간 중첩·점점 과제를 조정·분담하고, 공동 사업 발굴 및 협력 이행 구조를 상시화한다.

다.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세부실행안은 본문 참조)

1) 국가위원회 역할과 방향

- ① 국정철학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연결하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심의기구이다.
- ②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점검을 총괄한다.
- ③ 중앙정부 주요 행정계획·법령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성의 주류화 및 국가위원회의 기능 고도화

- 국가위원회를 국정철학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로 위상을 정립한다.
- 국가 중장기 행정계획 및 법령 검토 시 지속가능성 반영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조정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정·감시·검토 기구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

-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사무처 독립성과 전문조직 확대

-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대통령 국정철학 내재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사무국을 위원장의 상시 지휘를 받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 특히 K-SDGs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실무팀을 세분화하고, 기획-집행-점검 기능을 포괄하는 상시적 정책 조직체계로 재편한다.

구분	현행	개선
사무처 명칭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국가위원회 사무처
총괄책임자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정무직
직제	3팀	직제와 인력 확대 개편
인원	10명	

2)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1) 지속가능발전주간 및 사회 인식 제고 캠페인

-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발전주간(Sustainability Week)'을 지정하여 범사회적 대국민 홍보 및 시민참여 확산 전략을 전개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공동 주관하고,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전국적 참여형 캠페인 체계를 구축한다.
-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미래세대에서 고령세대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이 되도록, 세대별 정책 참여 플랫폼과 세대 간 통합적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 지속가능인증제 정착 및 확산

- 도시, 기관·단체, 사업 프로그램 등 각종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3) 지방 실행력 강화 및 지역 확산 전략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실행역량을 제고하여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실천 구조를 강화한다.

(4) 국가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기획·조정·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과 실무조직의 전문성과 협업역량을 제고한다.
- 국가위원회 위원과 추진단 구성원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통의 지향점을 형성하고, 정책 추진의 내부 동력을 확보한다.

(5) 지속가능성 개념의 헌법 반영

- 지속가능성 개념을 헌법 전문 또는 기본권 조항에 반영하여, 국정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 국가 운영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한다.

(6) 정부 업무평가 시 지속가능성 개념 반영

-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에 반영하여, 국가운영 철학과 행정체계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한다.
- K-SDGs 목표 달성과 연계한 행정 실행체계를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규범적으로는, “현존하는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들이 함께 번영·건강을 누리면서 다양하고 복원력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적 건강, 사회적 형평 및 경제적 활력의 통합”¹⁾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존속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며, 복지는 우리의 자연환경에 직접 간접으로 의존한다.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인류와 자연이 현재와 미래세대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생산적 조화 속에’ 존속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다.”²⁾
- 지속가능성을 이념적 기초로 삼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브룬트란드 보고서』(1987년)의 정의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수요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현재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³⁾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UN이 전 세계의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17개의 SDGs로 구성되었다. 즉 하나의 목표를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는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행보는 부단히 계속되었지만 때로 순탄하지 않다. UN 사무총장이 2023년 4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SDG 동향 보고서』[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우리 세계를 바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총회 결의안 70/1)에 대한 응답인데, SDGs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203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SDGs 이행상황을 담았다. UN 사무총장은 여기에서 “많은 목표가 중간에서 심각하게 궤도를 이탈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⁴⁾

1) <https://www.sustain.ucla.edu/what-is-sustainability>.

2) <https://www.epa.gov/sustainability/learn-about-sustainability>.

3) <https://www.un.org/en/academic-impact/sustainability>.

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pecial edition),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wards a rescue plan for people and planet. A/78/80-E/2023/64, Distr.: General, 27 April 2023.

- 2015년 9월 유엔 총회는 Post-2015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로서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이룩하고자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공론과정과 작업반을 거쳐 2018년 K-SDGs를 수립하였다.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에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2010년 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정 및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면서 지속가능발전 본연의 특성인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이 용이해졌다.
- 국가위원회 역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다양한 부처와 관련 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의 노력, 즉 정책적 일관성을 견비하고, 효율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겠다.
- 2022년 재정립된 기본법상에는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제7조), 기본전략하에 수립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들과도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각 부처의 개발정책이나 경제정책이 각 부처의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로 해안가 갯벌을 매립하여 지방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주민의 이동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반면,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들의 경우 시민사회나 주민갈등 문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가 드러나기도 한다. 과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고 소통한 경험이 있으나,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국가위원회는 타 부처 혹은 타 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이러한 이유에서, 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여러 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들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는 검토대상의 중장기 행정계획을 198개 나열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주요 행정계획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계획들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의 관계, 즉 검토와 자문의견 반영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들은 관련 법(안)과 행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의 행정계획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나 개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 제25조제7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가 이를 심의하기 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담당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검토를 요청하고, 본 계획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함을 확인한 이후 심의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개별 행정계획의 근거법이 상호 참조가 되지 않을 경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요구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책임 의무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검토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위원회와의 소통만으로도 198개 행정계획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를 파악하고 이 위원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현행 제도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들과 국가위원회 간의 서면 협의를 통하여 협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서는 관련 위원회들 사이에 소통·협력의 경로가 없어서 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상호 간의 실행 프로그램이나 활동계획에 관한 소통·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 기본법과 시행령이 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에 관한 소통과 협력 범위와 방안에 관하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과 중장기 행정계획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들 및 국가위원회의 권능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 상호 간의 기능과 직무영역이 일부 겹치는 현상에 대하여 해당 법제도에 기반하여 K-SDGs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 경제·사회·환경 전반이 융합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위원회들 상호 간에 업무 중첩 및 소관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이것이 상충인지 협력지점인지 이에 관한 혼선이 존재하므로, 위원회 간 기능과 의제, 정책의 중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부기구(위원회) 간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협력 방

안을 모색한다.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에 참고할 만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법제와 행정청 상호 간의 조율 기능 및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감안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범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요 정부위원회들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위원회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DGs 관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지표와 평가 체계 등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가 조력함으로써, 주요 위원회들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구 범위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 운영근거 및 기능 분석

- 1) K-SDGs 관련된 주요 정부위원회들의 기능과 직역을 목록화하고 이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2)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사무들을 분석하여 본 조사·분석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핵심 위원회들을 선정한다.
- 3) K-SDGs 관련 위원회별 기능을 중심으로 상호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 분석을 통하여 핵심 위원회 등 위원회의 관련성 척도를 개발한다.
- 4) OECD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기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조직 상호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청 상호 간의 거버넌스 수준을 성찰한다.

나. 주요 위원회의 기능·직역 중첩 및 공백 현황 해소방안 제시

- 1) 국가위원회와 관련 주요 위원회 간 K-SDGs 역할에 대한 기능 및 직역의 중복 범위와 수준을 파악한다.
- 2) K-SDGs 세부목표와 지표 관련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위원회들 사이에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하는지 파악, 관련 위원회들의 기능이나 직역이 중첩될 경우 문제 해소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3) OECD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관련 기구들 상호 간의 기능 중복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안을 제시한다.

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시

- 1) UN이 제시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 방안을 정립한다.
- 2) OECD 국가군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행정청 상호 간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사례를 통하여 국가위원회 역할을 검토하고 위상 관계를 분석한다.
- 3)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른 주요 위원회들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협력과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접근 경로를 제시한다.

3. 주요 연구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함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기능 분석

1) K-SDGs 관련된 주요 정부위원회 목록화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분석

-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된 K-SDGs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목록화하고, 법제와 행정 소속, 위원회 기능과 실질적인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한다.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번영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평화·협력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 전망 강화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 한 농업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 거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 설 구축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 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그림 1] K-SDGs 비전 및 전략 (2021~2040)

2)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사무를 분석하여 핵심 위원회들을 선정

- 전체 정부위원회 576개(정부위원회 572개+헌법상 위원회 4개)와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간 연관성 검토를 통해 핵심 분석 대상(103개)을 도출하고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간 연관성을 검토한다.

- 연관성 검토 방법을 통해 핵심 위원회들을 도출한다.
 - 예, 2024년 9월 기준 우리나라 행정부 위원회 총 576개 위원회(헌법상 위원회 포함) 중 연관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119개)와 지표(236개)에 관련된 위원회는 103개임(「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198개 관련 행정계획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관성을 검토).
 - 103개 연관 위원회 중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연관성(빈도)이 8회 이상인 곳은 총 10개 위원회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곳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30회)임. 이어 '양성평등위원회'(17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6회), '사회보장위원회'(14회), '국가물관리위원회'(12회) 등이 뒤를 이음. (이에 관한 분석은 III장 참조)

3) K-SDGs 관련 위원회별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상호 간 역학관계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위원회 간 관련성 척도를 개발

- 17개 SDGs 목표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복 및 유사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다. 2개 모드로 세부목표와 관련 위원회를 각 노드에 배치하고, 각 목표별 관련 위원회를 연결하여 관계성을 파악한다.
-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를 통해 각 위원회의 중첩성, 근접배치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통해 목표별 위원회의 협업 가능성 및 협업 의제를 도출한다.

4) OECD 선진국 지속가능발전 기구 현황 및 관련 조직 상호 간의 역학관계 분석

- 여러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대통령제, 의원집정제, 내각제 등 국가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다만 SDGs 이행을 위한 행정 조직이 있다는 점,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혹은 협의회가 있다는 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 실무를 조정하는 단위가 있다는 점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관련 조직이 상호 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이나 정책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기관 혹은 관련 기구의 역할과 정책은 각 기관 고유의 법 규정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행정,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타 위원회 간 기능 중첩 여부와 협업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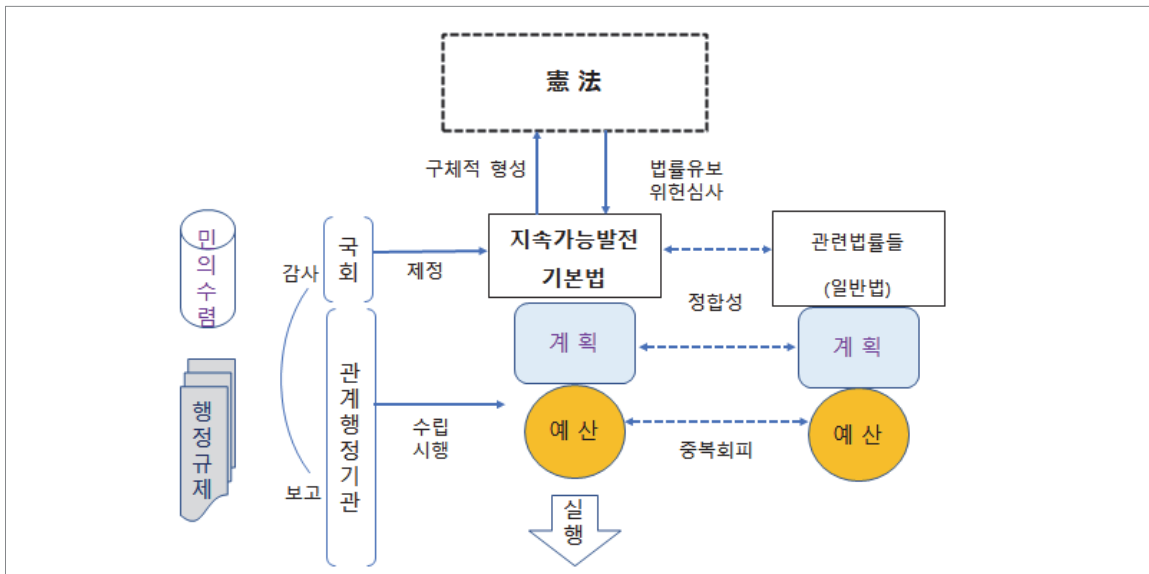
1) 국가위와 타 위원회 간 K-SDGs 역할에 대한 기능 중첩 여부 파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주요 중앙정부 위원회 법적 기반(직제)과 기능, 사업 등 중첩 부분에 대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다.

- 직제(근거법령, 소관부처, 조직 규모와 구성, 위원 선출방법 등)
- 주요 심의사항, 기능상 분류(자문, 심의, 의결, 집행 등)
- 추진사업과 예산편성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타 법률과의 관계(제6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국가기본전략(제7조:정부)·지방기본전략(제8조:지자체장)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과 정책: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국가 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 전략과 조화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5조: 국가위원회/지방위원회)



[그림 2]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

2) 주요 위원회의 기능 중첩 시 문제 해소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중복 여하에 대한 검토 및 협업을 위한 경로를 제안한다.
 - **협업을 위한 직제 개편안:** 대통령 및 정부 전반의 계획에서 SDGs 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정치적, 행정적 개편 방안 마련.

- **거버넌스 원리와 방식의 확장:** SDGs는 “뜻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모든 행위 주체 내지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함. UN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인식증진과 역량 강화라는 경로를 통하여 거버넌스 정신과 요령을 전파함. 지속가능발전 영역에서의 거버넌스는 지휘자가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맡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 간·계층 간·지역 간 혹은 행정부서 간에 타인(타 부서)의 수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각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혜와 분배의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 **심의 대상 수정 및 변경안:** 현재 심의 대상은 기본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기본법 제7조제2항)

-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
-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
-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
-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관리
-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
-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역할 변경안:** 중첩되거나 상충하는 경우 국가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역할로 변경할 것을 제안. 선진국 사례 및 델파이 조사,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안.

3) OECD 중심의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해 타 위원회와의 협업 및 기능 중복 해소방안 검토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안 제시

- 국무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혹은 협의회)의 역할과 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문헌 및 전문가 면접 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한다.
 - 국가별로 국무조정실에서 국가위원회를 담당할 경우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의 핵심 행위자이자 조정의 역할을 두기로 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기본 기능이 SDGs 이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며,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 부여된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임.
 - 국무조정실의 정책 중립적 이유도 중요하며, 부서 정책을 조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소집의 권한이 있음.

- 일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이 분야 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정 전문성이 풍부하고 대통령 등 행정 수반의 정치적 의지 등 정치적 민감성도 있음
-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한국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
 -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체계 고려.
 - 각 부처, 공공부문 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두어 SDGs 이행을 위한 책임과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전담 조정 메커니즘 확립.
 - 예산과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 수립 및 계획 작성 과정에서 SDGs 영향(Policy Impact Assessment)을 고려하는 절차를 삽입하는 등 통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치 고려.

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1)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위의 역할 정립

- 각 위원회와의 중복이나 상충 요소를 보완하는 제안을 반영하여 국가위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잦은 이동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 위원 및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방법을 택한다.
- 2018~2024년까지의 지속가능성 국가보고서에서 가장 미흡하게 진척되거나 후퇴한 지표에 대해 국가위의 관심 영역으로 구분하고, 상쇄효과를 낮추고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가위 역할 및 역할/위상 관계 분석

-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담당부처, 활동내용, 예산 및 전문성, 타 위원회와의 상호 관계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 정책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시각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보완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위와 타 위원회의 협력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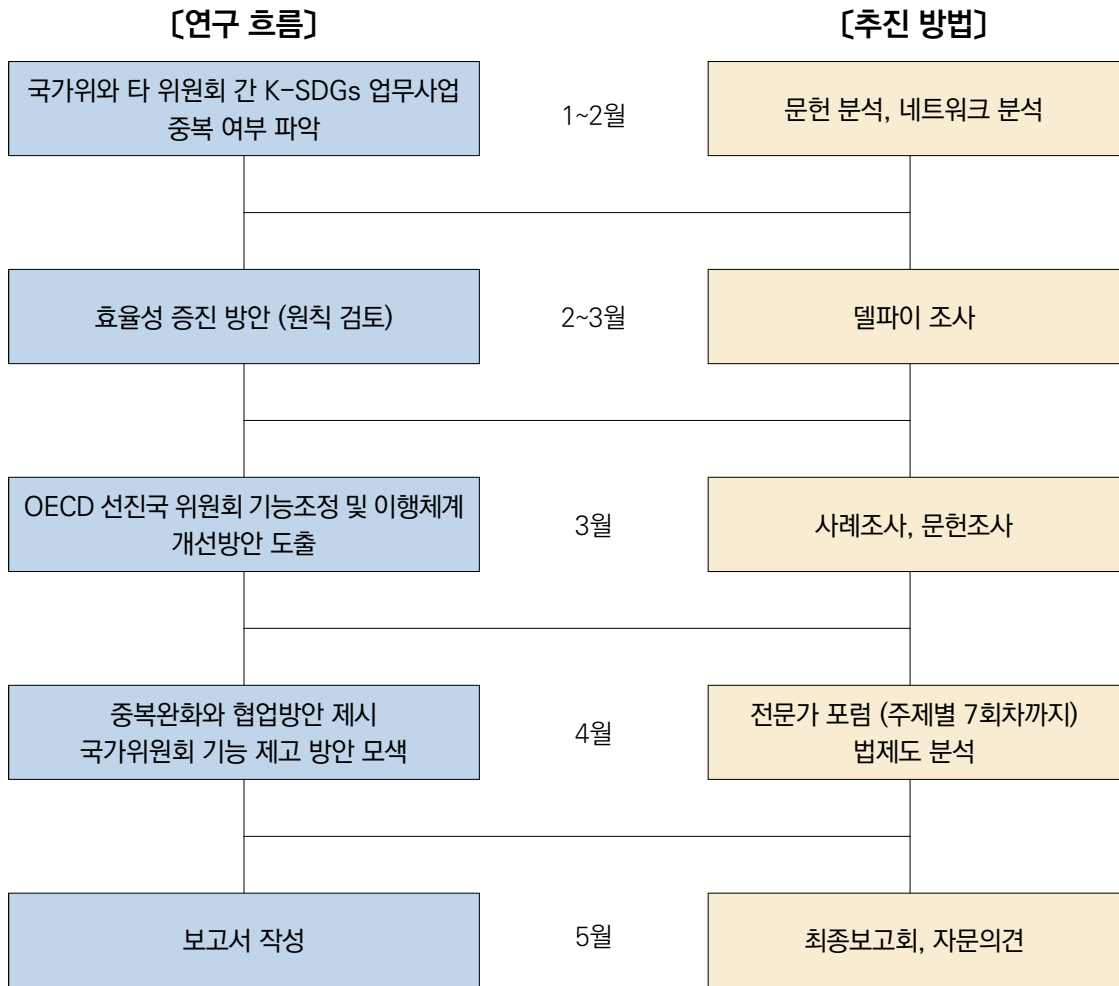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경우 2008년의 舊 「지속가능발전 기본법」⁵⁾을 입안할 당시부터 같

은 법에 강력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제15조)도 권능이 강력한 독립 규제위원회로서의 권능을 부여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할(統轄)할지 여부를 법리상 검토하였으나, 대통령제에서 수직적 분업에 익숙한 행정체계는 이러한 접근을 어렵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들의 달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유형의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등의 사례를 보면, 기후 [탄소]·환경·생태 오염을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강력한 제어장치를 갖추기보다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 간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법규정 개편안을 포함하여 국가위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른 주요 위원회들의 시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예산 운용에 대하여 중첩과 사각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교차검증', 즉 관련된 주제들을 횡단하는 '날줄걸기'(cross-cutting)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다른 관련 위원회들과 대화·협력할 수 있는 권능의 수평적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12호, 2007. 8. 3., 제정].

4. 연구 흐름과 추진 방법



[그림 3] 연구 흐름과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개요

가. 목적 및 문헌 분석

1) 목적

- 여러 국가의 행정 시스템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에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식별해 내는 것은 2030 SDGs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SDGs의 제도 운영의 방법을 살펴보고, 행정부에 필요한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또한, 선진 사례에서 본 과제의 주목적인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완화와 위원회와 부처 간 협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그러나 1992년 리우회의에서 제시된 ‘의제 21’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적 전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각 의제별 논의의 장만 지속되는 등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추진되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형식을 빌려 국가계획 속에서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 2015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는 SDGs 국내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내 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실제로 제도적 주류화와 목표달성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SDGs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가,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Biermann 외(2022)⁶⁾는 3가지 수준으로 SDGs가 발현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담론적인 수준으로 다뤄지면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의제를 다루는 수준이

6) Biermann *et al.* (2022) “Scientific evidence on the political impac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ure Sustainability* Vol.5, Sept. 2022: 795~800.

다. 정책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 둘째는 법과 규정에서 SDGs를 다루는 것으로 정책체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는 제도적 이행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새로운 부서를 만들거나, 사무국을 두어 이행 효과를 살피고, 전환의 영향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실행 활동을 포함하는 수준이다. Biermann외(2022)는 61명의 연구자가 3,000개 이상의 문헌, 특히 동료검토보고서(peer-review reports)를 기반으로 5가지 정치적 효과를 위의 3가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 둘째, 국내 정치시스템에 미친 영향, 셋째,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 넷째,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태적 통합성(integrity) 보전에 기여하였는지를 정치적 영향성으로 구분하였다.

-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영향은 담론적이었다. 즉 고위급회담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뜻이다. 국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SDGs가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타 계획과의 충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⁷⁾ 특히 법과 계획, 모니터링 방법 등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타 부서의 개발계획은 원래대로 추진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타 계획에 우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정치 영향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더 드러났으며, 시민단체 주도로 예산과 사업,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지역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가 내에서 SDGs의 정치적 영향력은 국제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담론적 수준에 머문다는 결론에 이른다.
- 국내 제도 통합성이나 정책 일관성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그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정부에 SDGs 관련 정책조정자를 둔 사례가 있고, 독일과 같이 부처 간 조정 기관에서 SDGs 정책조정을 겸한 사례가 있다.⁸⁾ 그러나 같은 조정의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과 효과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 요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구성을 가진 국가들을 유형별로 클러스터링을 한다면 체계화된 혁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정정길(2002)⁹⁾은 정책 정합성을 시간적 인과관계와 문화적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국가의 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범사례를 도입하되, 도입하는 국가에 적절한 정책 조율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반

7) *Ibid.*, p.789.

8) Breuer, A., Leininger, J., Malerba, D., & Tosun, J. (2023). Integrated policymaking: Institutional designs for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orld Development*, 170, Article 106317.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3.106317> - 연방총리실의 기존 국무조정 기능을 통한 조율.

9) 정정길(2002)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1~19.

드시 필요하다. 그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에 주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합성이 중요하면서도 기존의 가치와 충돌하다 보니,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업화와 시차를 제시한다. 충돌하는 가치와 정책을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하위체계에 분업화하면서 조율,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과 경제가 전혀 다른 정책 가치(예, 보전과 개발)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모순된 상태이고, 정책 정합성에도 맞지 않지만, 하위체계에서는 부분 최적화를 통해 상충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또 다른 정책 정합성을 이룰 방안은 시차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주도적 가치는 변화되고, 가치의 변동이 반복될 수 있지만, 정책 추진의 경우 주도적 가치와 부수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실질적인 비중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실행부서의 제도 운영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면서도 복지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가치를 다루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정책 정합성에 부합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문태훈·김희석(2022)¹¹⁾은 내적 정합성과 외적 정합성이 높을수록 정책과 제도가 서로 협력, 조정되어 통합됨으로써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내적 정합성은 일관성, 유효성, 수평적 정합성, 수직적 정합성을 의미하며, 외적 정합성은 제도 외부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 국민 여론과 수요, 기업 활동과 수요 등으로 보았다.¹²⁾ 국제적 합의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 현재의 위기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요구는 정책적 수요로 존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그 문제해결에 부합할 때 외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거대담론적 지향은 구체적인 탄소중립, 불평등 완화, 정의로운 전환, 균형발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환경, 사회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서, 가급적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 게다가 SDGs 이행의 효과는 정책 일관성 혹은 정책 통합성¹³⁾에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UN(2015)¹⁴⁾은 SDGs가 “불가분의(indivisible)” 관계로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한다.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SDGs 체계는 정책적 통합성 혹은 일관성을 위해서는 공공 정책과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조정의 행정 행위

10) *Ibid*, pp.15~16.

11) 문태훈, 김희석(2022)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 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 한국행정연구 31(1) 27~56.

12) *Ibid*, pp.31~32.

13) Policy coherence는 정책 일관성 혹은 정책 정합성으로 번역되고, 다른 영역의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일치를 의미함. policy integration은 정책 통합성으로 번역하고,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이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임. 그러나 두 개의 다른 개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주류화와 국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정책 이행은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음.

14)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https://doi.org/10.1201/b20466-7>.

를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이 없다면, SDGs에 내재된 상호 시너지 효과와 상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가 현재의 정책이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목표를 우선시하고, SDGs 중에서 충돌되거나 상쇄되는 상황을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 영역과 관할권, 서로 다른 거버넌스 수준에 있는 행위자들의 노력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중요하다.¹⁵⁾ 상호 협력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충돌, 중첩, 상쇄의 문제로 인해 SDGs 통합적 목표달성은 요원해진다. Wiegant 등(2024)¹⁶⁾은 OECD가 개도국의 개발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영역 간의 상호연계와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 Swanson 등(2004)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이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의 차원에만 집중함으로써 다른 차원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지속가능성의 전략으로 택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고, 개도국의 경우 빈곤퇴치를 핵심 전략으로 집중한 국가에서는 환경적 측면이 도외시되었다.
- Breuer 등(2023)은 SDGs가 통합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국가 체제의 제도적 설계를 유형화하였다. 137개 국가의 UN보고서 및 SDGs 국가전략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통합성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정책 통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차원의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적 리더십, 둘째 수평적 통합성, 셋째 수직적 통합성, 넷째 사회적 통합성이다.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정책 통합성이 주도될 수 있는 경우는 SDGs 이행의 책임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법」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과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 파급력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평적 통합성은 얼마나 다양한 부처의 참여를 끌어내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통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부처가 참여할 수 있다면 소통을 통해 정책 조율이 가능하고, 통합적 접근까지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수직적 통합성은 중앙정부 하위의 기관들이 SDGs 이행에 얼마나 동참하느냐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산하 단체들의 참여가 수직적 통합성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끝으로 사회적 통합성은 비정부 기구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영속적으로 발생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5) Breuer, A., Janetschek, H., & Malerba, D. (2019). Trans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interdependencies into policy advice. *Sustainability*, 11(7), 2092. <https://doi.org/10.3390/su11072092>.

16) Wiegant, D., Dewulf, A., & Van Zeben, J. (2024). Alignment mechanisms to effectively gover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182, Article 106721.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4.106721>.

3) 사례 선정 배경

- 본 연구에서는 Breuer 등(2023)¹⁷⁾이 제시한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영역 간의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차원의 정부 간 협력과 조정 메커니즘의 유형 중에서 담론을 이행의 차원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책 통합성과 이행 점검을 다루는 국무조정실의 역할 유무와 수평적 통합을 위한 부처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같은 협력과 조정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기관의 리더십, 부처 간의 협력과 조율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정하여 더 상세히 들여다보았다. 앞서 제도와 문화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기에, 이를 참고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며, 사례조사와 분석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 연구방법이다.

[표 1] 리더십과 수평적 통합 여부에 따른 실행 유형

분류	참여부처 0	참여부처 1	참여부처 2	참여부처 다수
국무조정실의 역할 없음	라트비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	캐나다 헝가리 스위스
국무조정실 담당	멕시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한국 호주 폴란드 스웨덴 일본

* 노르웨이는 2020년 정책 조율의 책임을 '지방정부 및 현대화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에 부여함.

** 자료: Breuer *et al.*(2023) 중 OECD 국가 국한하여 연구진 정리.

-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OECD 소속 국가들로 한정하였다. 이 중에서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표 사례를 한정하였는데, 참여부처도 없고 국무조정실도 역할을 하지 않는 네덜란드는 독특한 사례여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책임부처가 없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SDGs 이행보고서를 두 번이나 제출하였고, 외교부가 작성 주체이다. 다만 특이한 점은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령에 해당하는 아루바, 쿠라사오, 세인트마텐을 아우르는 네덜란드 왕국의 리포트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카리브해 지역의 섬 국가들이기에 지속가능한 식량과 건강, 복지, 기후적응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네덜란드 국가 SDGs 조정자를 새로 임명하였는데, 자산운용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사급으로 분류된다. SDGs 조정자는 'SDG 네덜란드연대'¹⁸⁾와 협력하고, SDG 네덜란드연대의 사무국은 외교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활동을 진행하며,

17) Breuer *et al.*(2023) *Ibid.*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 산하 소규모 SDGs팀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참여부처는 외교부라 볼 수 있고,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책임 부서는 없지만, 국가 SDGs 조정자가 일부 그 책임을 지고 있다.

- 노르웨이의 경우¹⁹⁾는 수평적 정책 조율보다는 수직적 통합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다. 2019년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지역과 지방정부 전략 및 계획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일례로 정책 조율의 담당 부서를 ‘지방정부와 현대화부’로 지정하였다.²⁰⁾ SDGs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은 중앙과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또한, 각 부처는 SDGs 관련 예산 및 결산자료, 목표 이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12개의 상임위가 각각 해당 분야의 SDGs 이행자료를 점검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총리는 정책정합성포럼(Forum on Policy Coherence)을 통해 정책 정합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환류 과정을 거쳐 SDGs 이행을 강화한다.
-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처럼 정책 조율의 기능을 국무조정실이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3가지 유형이 남는다. 하나의 부처가 주도하면서 국무조정실이 보조적으로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경우와 두 개의 부처가 주도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가 취하는 방식인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부처와 정책 통합성을 추진하면서 SDGs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여섯 국가(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에 대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섯 국가의 유형이 늘 불변은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던 초기 거버넌스 모델과 SDGs 이행의 시대, 그중에서도 SDGs 이행의 초기모델과 현 모델에 변화가 발생한 국가도 있어서, 특정 유형이 사례 국가의 절대적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8~2022년 자발적국가보고서(VNR)와 지속가능발전 전략보고서를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사례는 해외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기별로 그 형태가 달라, 각각의 특성을 사례로 다루어도 좋겠다는 착수보고 자문 의견에 따라 한국의 모형은 별도의 절에 정리하였다.

18) <https://www.sdgnerland.nl/does-mee/> - 개인, 마을, 기업, 노동연맹, 학교, 지자체 등 140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고, ‘SDG 네덜란드 재단’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사무국에는 8명이 근무하고, 외교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SDGs 조정자인 안나 포트를 통해 정부와 함께 일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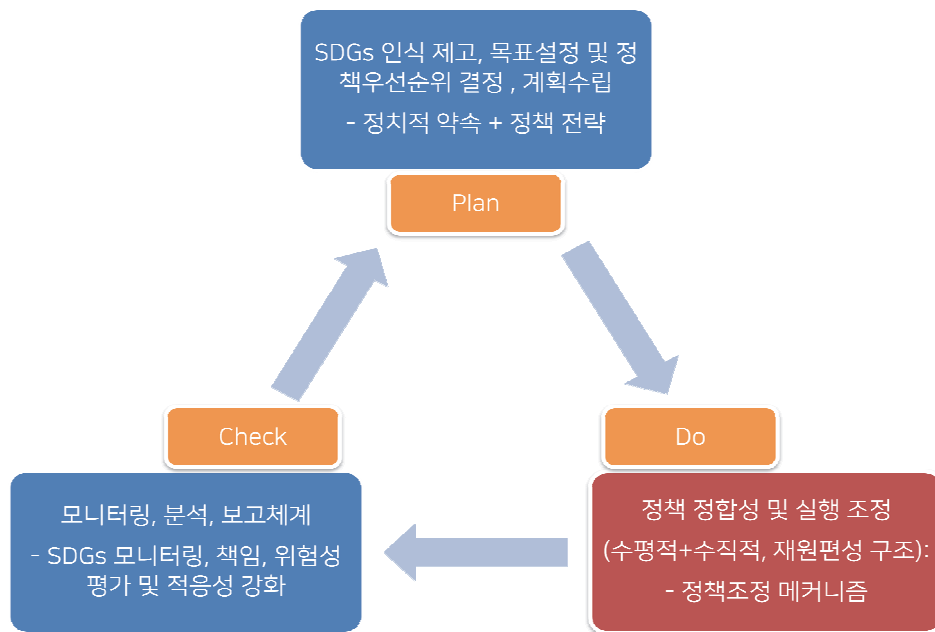
19)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voluntary-national-review-2021-norway/id2863155/?ch=5>.

20) 2016~2019년의 SDGs 정책 조율 담당부처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였음.

나. 분석의 틀

1)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단계

- 지속가능발전 정책 정합성은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전반에 주류화함으로써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 UN(2017)²¹⁾은 8가지 실천 영역을 중심으로 주류화 단계를 설명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5가지 영역을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① 대중의 인식 제고, ②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적용, ③ 계획 검토 및 국가 상황에 맞는 SDGs 적용, ④ 수평적 정책 정합성 창출, ⑤ 모니터링, 보고 및 책임성이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잘 활용하면 2030 의제와 SDG를 주류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수직적 정책 정합성, 미래를 위한 재정 및 예산 확보, 위험 평가 및 적응력 배양 등이 나머지 세 가지 실천 영역이다. 우선적인 5개의 영역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SDGs 주류화의 단계와 영역

- 우리나라의 SDGs 주류화 과정은 거대담론과 정치적 약속, 수직적 전략 및 계획의 수립으로 일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정책 정합성을 실행하는 단계[DO]는 미흡한 편이다. 정책의 이행 및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목표 중심적 이행 로드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과 협조의 단위를 구성하는 실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전문가 분석과 자문, 보고체계를 제안하는 것도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제도 기반, 기구의 속성 및 이웃하는 부처나 위원회와의 역학관계, 수평적 정책 정합성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과 보고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UN(2017) 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Guide to UN Country Teams.

2) 유형에 따른 기관 운영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 조율에서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과 같은 통치중심(center of government)이 작동된다. 중심기구의 역할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문 간 상호작용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정부 전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 SDGs 달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의 행위자들을 소집하고 국가적 논의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부처의 규모를 떠나 중심기구의 역할이 SDGs 이행과 정책 정합성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국가별 사례에서 우리 국무조정실과 같은 기구의 역할과 관련 위원회들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주로 살펴보았다.

[표 2]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단일부처	두 개의 부처	다수의 부처	기타
국가	영국, 스웨덴 (한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연방SDGs담당 부서 없음)

- 단일 부처와 의회 중심 유형
 - 외교부(국제개발협력) 중심: 영국 외교부와 의회 국제개발위원회가 국제 및 영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SDGs 이행 관할.
 - 재정부 중심: 덴마크²²⁾ - 의회 내 유럽 업무위원회, 재정위원회에 국가개혁프로그램에 관하여 보고하고 국가개혁 프로그램과 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시행함.
 - 참고로 스웨덴은 현재 기후기업부(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²³⁾가 주도함.
 - SDGs 이행의 조정 기능은 담당 부처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고, 국무조정실에 있더라도 담당 부서가 어느 실·국에 속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재정 쪽에서 담당하느냐, 기후생태 쪽에서 담당하느냐,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 SDGs 이행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탄소중립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을 두는 경우가 다수인데, 스웨덴의 경우 기업활동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부처와 국가위원회 중심의 방식
 - 외교부와 생태전환부, 위원회 중심: 프랑스
 - 선진국의 경우 SDGs가 국제개발협력 의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의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개입이 클 수밖에 없음. 그러나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조율과 정합성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부처의 역할이 중요함. 프랑스는 국토, 물, 해양, 산림, 생물다양성 등 광범위한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생태전환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

22) <https://www.dst.dk/en/Statistik/temaer/SDG>.

23)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limate-and-enterprise/>.

회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운영위원회는 생태전환부와 국제개발 연대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음.

- 외교부와 지속가능발전사무국, 위원회 중심: 핀란드
 - Breuer 등의 분류에서 핀란드는 두 개의 부처 중심으로 분류하였지만, 지속가능발전사무국을 별도로 두었다고 해도 국무조정실 내부에 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지속가능발전 목표(1~16번) 관리를 국무조정실 주도로 진행하고, 외교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를 이행하는 방식임.

● 다수 부처와 국가위원회 방식

- 독일 (다중이해관계자 대표 참여)
- 일본 (총리-국무위원 중심)
- 한국 (대통령 소속의 국가위원회 시기,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 캐나다 (국무조정실 역할 없이, 국가 전략과 이행계획에 따라 다수 부처 참여)

● 기타

-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 SDGs 이행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지정하지 않음. 다만 백악관 지속가능성 사무국(Office of Federal Sustainability)은 <환경의질위원회> 소속으로, 연방정부 건물, 수송, 폐기물 발생에 대한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마치 기업의 지속가능성 담당업무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다만, 해외 원조사업에 대한 SDGs 적용은 USAID에서 담당하고 있음.

3) 세부 사례 선택 및 용어 사용 기준

- SDGs 달성 및 이행에 관해 모범사례를 다수 가진 EU는 ‘유럽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 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s Network)’²⁴⁾를 운영하면서 자원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13개국의 18개 자문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주요국가와 기구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 Federal Council for SD Belgium - 다중이해관계자²⁵⁾ 24명, 사무국 8명 지원
 - **스페인 카탈루냐**: Advisory Council for the SD of Catalonia - 학계/전문가 15명,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지원
 - **핀란드**: Finnish Expert Panel for SD - 학계/전문가 14명, 총리실 지원과 상근 사무총장
 - **프랑스**: French National Council for Ecological Transition - 다중이해관계자 58명, 2명의 사무국 지원

24) <https://eeac.eu/> 참조.

25) 다중이해관계자는 유엔의 MGoS와 유사하게 시민, 여성, 청년, 농부, 기업, 선주민, 전문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미함.

- **독일:** ① German Advisory Council on the Environment - 총리 지명 전문가, 17명 사무국 지원, ② German Advisory Council on Global Change - 9명의 전문가와 10명 사무국 직원(7명의 상근 과학자가 포함), 전문가 한 명당 1인의 연구보조원 지원, ③ German Council for SD - 총리 지명 다중이해관계자 15명, 14명의 사무국 직원 지원
 - **아일랜드:** ①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28명의 다중이해관계자, 17명의 사무국 직원 지원, ② The Climate Change Advisory Council 전문가와 주무 부처 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 7명의 전문가가 상근하는 사무국의 지원
 - **룩셈부르크:** Luxembourg High Council for SD - 다중이해관계 15명으로 구성, 환경기후지속가능발전부의 실장급이 사무국 담당
 - **네덜란드:** ① Council for the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 다중이해관계자 10명으로 구성, 2016년 이후 3명의 청년 대표 포함, 28명의 상근/반상근 사무국 직원 지원, ② the Netherlands Scientific Climate Council - 10명의 과학/전문가가 매월 회의를 갖고 매년 3~5개의 정책 의견 제출, 20명 이상의 전문가가 상근하는 사무국 지원 [지속가능발전과 일부 연계]
 - **포르투갈:** National Council on Environment and SD - 34명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8명 중앙정부, 2명 광역정부, 2명의 지방정부에서 참여, 4명의 직원이 있는 사무국이 지원
 - **루마니아:** Consultative Council for SD - 34명의 다중이해관계자 참여하며, 지속가능발전부(중앙부처)의 전문가팀이 지원하는 형태
- 모두 위원회로 구분되지만,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모와 정부와의 관계, 지원 수준에 따라서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개별 전문가들이 별도로 자문을 하기보다는 사무국을 통해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고, 적극적인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직원을 통해 연구와 정책 개발까지 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환경 분야 정책에 구체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된다.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자문위원의 기초 자료를 '유럽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 네트워크'에서 수집하였고, 다양한 보고서들을 분석하여 세부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부 내 수평적 정책 정합성을 위해 기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 세부 사례 연구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3가지 유형에 따른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통체계를 다양하게 가진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다수의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기능 중복이나 협업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소한 국가들이라는 판단하에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수평적, 수직적 정책 통합성이 이루어졌지만, 하향식 제도로써 우리와 유사한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인

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같은 현상에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았다.

- UN 회원 선진국으로서 OECD에 속한 국가 중심
- 자국 내 SDG 이행과 정책 통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가: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
- 국제개발협력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국가: 미국, 영국

● 세부 사례에서 언급되는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비교와 분석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원회, 포럼, 협의회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법적/공식적 상설 위원회(심의의결 혹은 자문형식)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council*’, ‘*committee*’, ‘*commission*’을 모두 위원회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용어가 약간씩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국가별 제도적 맥락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 등장하는 위원회는 다음의 특징이 있음을 밝혀둔다.²⁶⁾

- **Council:** 위원회 혹은 협의회, 의회, 회의로 번역. 일반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식기구로서, 정책자문 또는 자문그룹 역할을 하나,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예,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Germ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많음. *Council*을 회의 혹은 협의회로 표기할 경우, 정부 공식기구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로 동일하게 번역함.
- **Commission:** 위원회로 번역. 보통 법령이나 행정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준독립 기구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음. 자문 또는 규제 기관일 수 있으며 일부 집행 권한을 가짐. [예,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총국(General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생태전환부에 속하는 기구이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조율 목적]
- **Committee:** 위원회로 번역. 행정 관료나 고위급 (선출직) 관계자들로 구성. 정책 조율이나 특정 정책(분야)에서 합의제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관하고 검토하는 기구[예,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국무차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다수이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서도 존재함.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경우 법에 기반한 독립적인 자문위원회이나 에너지 안보 넷제로부(Department of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 탄소 배출량 목표, 적응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함]

26) 위원회에는 Council, Commission, Committee, Board, Task Force 등 광범위한 조직이 포함됨(Luthans, 1992:355). 권한과 성격에 따른 유형화에서 국내 학자들은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혹은 조정위원회 등으로 분류[박동서(1990), 유훈(1991)]하거나 권한을 기준으로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기능을 기준으로 조사연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위원회, 규제위원회 등으로 구분한 예도 있음. [한중희, 김정훈(2007) 해외 주요국의 위원회 제도와 운영현황(국회입법조사처) 재인용].

- 정리하자면, 세 종류의 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목적이자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의 형태는 *council*이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Commission*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으로 설립되고, 의사결정의 권한이 강한 편이며, 집행권도 일부 갖고 있다. 행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보고에 관여하는 위원회가 *committee*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committee* 중에서도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많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해진다.

2. 해외 사례 연구

가. 프랑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적 기반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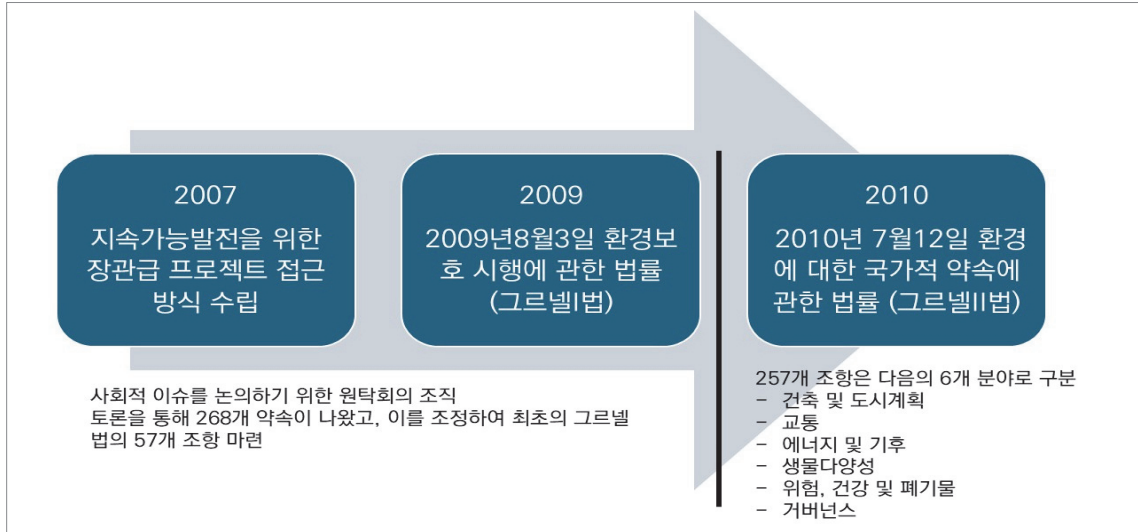
-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여 대통령 권한을 실질화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제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 프랑스는 2013년 8월 16일, 「국가생태전환위원회에 관한 법령」 제2013-753호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르넬 환경포럼을 ‘국가 생태전환위원회’로 대체하였다(동법 제3조).²⁸⁾
- 「그르넬 환경법」²⁹⁾은 최초의 「지속가능발전법」의 내용을 담은 법령이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프랑스는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지역의제21 수행을 위한 국가관리청’을 설립하였고, 2003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Stratégies nationales de développement durable, SNDD)을 공표하고, 2004년 법령(décrets)³⁰⁾을 반포하였다. 법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 간 공동위원회(le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CIDDD)’가 만들어졌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Durable, CNDD)’가 창설되었다.
- 2007년 10월25일 환경 그르넬이 행정입법된 이후, 2009년 7월 23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2009년 8월 3일 자로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정책이 담긴 「그르넬 I 환경법」이 공포되었고, 2010년 「그르넬 II 환경법」이 반포되었다.

27) <https://www.agenda-2030.fr/en/agenda-2030/france/> 와 위원회 링크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conseil-national-transition-ecologique>), 법제처 링크 참조(<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27851708/2013-08-19>).

28) 프랑스 환경법규: D134-1조~11조 (제4장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관에 따른 규정, 제2절 지속가능발전 부처 간 위원회 규정) 별첨 자료 참고.

29) 그르넬은 1968년 5월 정부와 노동조합 간에 협정이 체결된 “그르넬 거리”에서 유래하였고, 생태, 지속가능발전과 계획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의지를 천명한 법임.

30)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명령(décrets)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ordonnances)을 제정할 수 있음. 대통령과 총리 명령 권한 분배가 불분명하지만 데크레(행정입법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됨. (국회입법조사처(2024.3.15), NARS 2213호:이슈와 논점, “프랑스 행정입법의 현황 및 주요특징”).



[그림 5] 그르넬 환경포럼 연혁

*자료: <https://cahiers-nantais.fr/index.php?id=882>.

- 「그르넬 I 환경법」은 방향성과 프로그램 중심의 내용을 담은 법규로서 국가위의 실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실행 부분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그르넬 환경법을 위한 국가위원회(후일 그르넬 환경포럼)’로 명명하였다.
- 그르넬 환경법은 환경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다방면의 주요 논의들을 다루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여, 그르넬 환경법과 그르넬 환경포럼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생태전환위원회를 시작하고, 환경세 부과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어려움에 부딪혔다. 특히 대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세’로 인해 대규모 시위(일명 레드 캡)로 인해 환경세 부과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탄소세 부과에 대한 저항으로 잘 알려진 엘로우 재킷 시위(2018~2019)처럼, 그르넬 환경법도 강력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2017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환경법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 내용 면에서, 「그르넬 I 환경법」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건축, 도식계획, 에너지, 생물 다양성, 농업 등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20%의 온실가스 감축, 20% 에너지 효율 향상, 2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20.20 목표)이다.³¹⁾ 「그르넬II 환경법」은 구체적인 적용 방안, 지역의 실행을 담아서 제정되었다. 시민들 참여를 도모하는 아틀리에를 조직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들을 재구성하여 규약을 만들고 실행에 옮겼다.
-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에 관한 법으로서 「그르넬II 환경법」은 수직적 통합성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두었다. 또한, 의제21의 형태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21위원회 (Le Comité 21) 역시 「그르넬II 환경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

31) 법제처(2012)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

회적 책임,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환경법하에 생태전환위원회규정은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³²⁾ 장관이 시행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2017년 담당부처는 생태와 연대 전환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로 새롭게 탄생한 이후 2020년 생태전환부, 2024년 생태전환, 에너지, 기후, 위기방지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de l'Énergie, du Climat et de la Prévention des risques)로 통합 재편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각 부처 장관이 각 역할을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즉 다부처적 성격을 가진 통합 조직으로 기후, 에너지, 교통, 건축, 지속가능성 전반을 다루는 복합 행정부처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 융합형 부처로 볼 수 있다. 생태전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생태전환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하여 위원장을 맡는다.
- 생태전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지속가능발전총국'(CGDD: Commissariat Général au Développement Durable, 환경법 8조~10조)이 있어서 법적 기반으로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CGEDD: Conseil Général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가 있다.
- 앞서 프랑스는 2개의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끌고 간다고 분류하였다. 지금까지는 환경 관련 부처의 변천사였다면, 국제적으로 VNR을 작성하고, 보고하는 역할은 외교 및 국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유럽및외교부의 몫이다. 유럽및외교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CNSDI: 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et de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가 있고, 유럽및외교부 장관이나 국무 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프랑스가 해외 원조사업을 하고, 개발 협력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 환경 마커 사업을 하도록 조율하고, UN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구의 역학관계

- 프랑스의 환경부처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기타 관련 위원회의 명칭도 여러 차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생태전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총국(CGDD: Commissariat général au développement durable)이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생태환경부 소속으로 독립적이면서 감시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였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포럼(그르넬 환경포럼)은 환경지속가능발전감사원으로 변경되었다. 생태전환부 내에서는 생태전환위원회가 다중이해관계자들이 58명 참여하는 권위 있는 위원회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32) 2012~2016년까지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2007~2012년까지 Ministère de l'Écologi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로 2007~2016년까지 부처 이름에 지속가능발전이 포함되어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부처임을 바로 알 수 있음.

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계되어 있다. 생태전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생태전환부 장관 + 58명 위원(투표권) + 담당관 2인 사무국
- 타 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경사노위와 비슷한 역할이나 시민참여가 확대됨, 2021)
- 지속가능발전총국 사무총장
- 7개 분과(각 8명)
 - (지방 선출직 공무원)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
 - (전문가) 국가 차원에서 전문직 간 직원 노동조합 조직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단체,
 - (기업) 고용주 조직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단체
 - (환경단체) 환경보호협회 및 재단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조직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회의로서 주요 활동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
 - (시민사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협회 위원
 - (의회) 의원단
 - (청년) 임명 당일 회원의 나이가 35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협회, 재단 또는 조직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위원

● 생태전환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간 균형을 재조정하고, 역량과 자격 기준으로 선정된 외부 인사들을 모집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되면 본회의에서 승인한 업무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다. 현재 전문위원회는 2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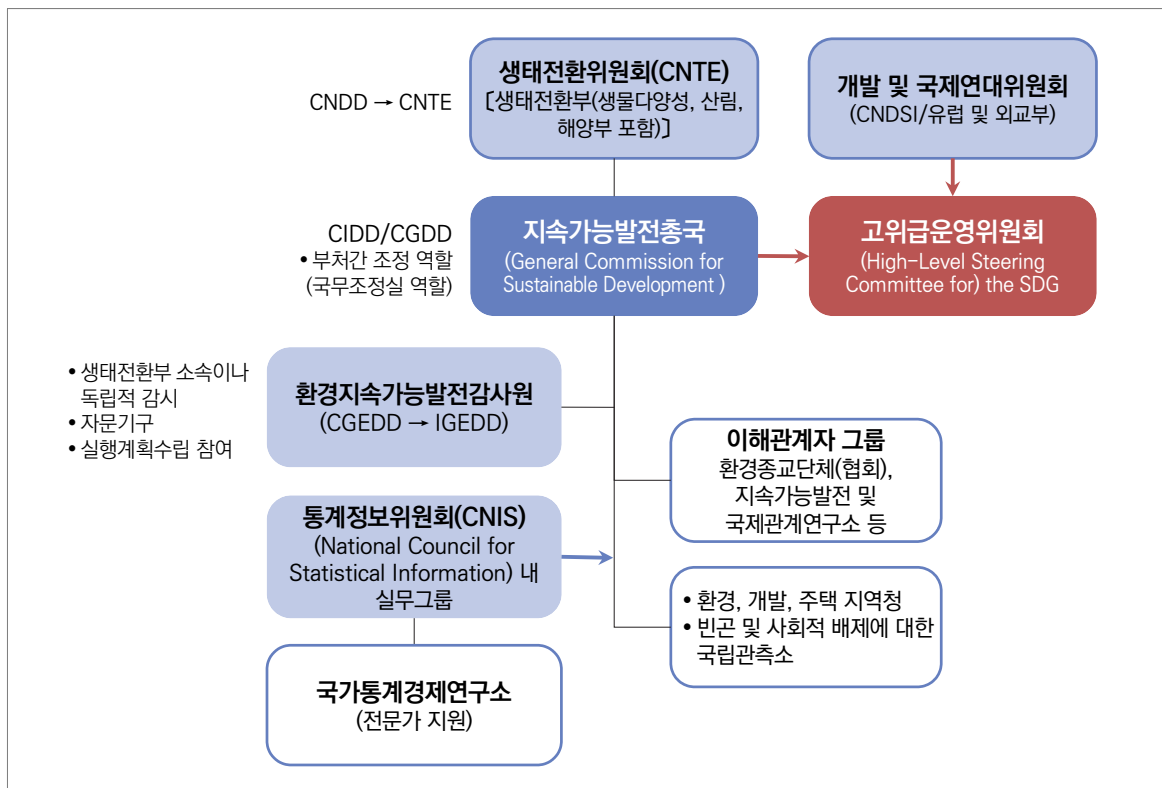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영향 국가관측소 책임전문위원회
- 생태계획위원회(생태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전문위원회)

● 유럽 및 외교부가 담당하는 국가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CNDSI)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자문기구로서 약 50명의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의 비정부 기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개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따라서 두 개의 부처가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위급 운영위원회는 생태전환부 장관과 유럽및외교부의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통해 생태전환위원회 내의 환경 관련 분과와 국가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의 합동 워크숍이나 협의, 교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두 개 부처의 행정부 협력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들의 합동 워크숍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프랑스의 VNR에 따르면, SDGs를 지지하는 행위자들의 커뮤니티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력 워크숍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워크숍은 국제 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에 결정으로 생태전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 또 다른 협력이 이루어지는 조직은 국가통계경제연구소이다. SDGs 지표 244개 지표 중 중복되지 않는 지표는 232개이고, 이 중 198개는 통계적 지표이기 때문에 국가통계경제연구소가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 국가통계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지표 수정 및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정보위원회' 내에 프랑스 SDGs 모니터링 지표 실무그룹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연구기관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에서 SDGs 이행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통계정보위원회를 통해 요청하면 국가통계경제연구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정보를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교육을 담당했던 '21위원회(Comité 21)'는 지금도 활발한 생태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에서 개최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림 6] 프랑스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의회보고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프랑스는 3회의 VNR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SDGs 이행을 보고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총국의 사무총장이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 부처 간 위원회의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SDG를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Brice Huet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마다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라운드 테이블(RDD)을 지원하고, 외교연구소, 생태전환부, 국회, 프랑스 2030(시민사회, 기업, 정부 파트너십)와 공동 개최하기도 한다.³³⁾
- 프랑스의 탄소중립정책은 기후고등위원회(HCC: Haut Conseil pour le Climat)가 담당하는데, 2018년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었다. 프랑스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와 행정부에 정책 개선 권고안을 제시한다.
- 기후고등위원회는 과학자, 경제학자, 에너지 전문가 등 13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독립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없어야 한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구로는 기후정책 라운드테이블(Table ronde Climat)이 있으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정책 라운드테이블은 기후고등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공론장) 역할을 한다.
- 기후고등위원회는 생태전환위원회와 구성 및 성격이 달라 위원회 간 업무상 중첩이나 협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기후고등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총국에 데이터와 정보,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정도의 협력이 발생한다. 기후고등위원회가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정부의 기후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이라면, 생태전환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후대응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수준에 그친다.
- 다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의 예를 찾아본다면, 환경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협력을 들 수 있다. 환경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로드맵³⁴⁾은 디지털위원회가 작성하였지만, 기후변화, 생태전환, 지속가능한 혁신, 적정기술, 사회적 경제, 농업, 에너지, 미래 산업, 모빌리티 등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후고등위원회와 생태전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더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후고등위원회, 디지털위원회 등에 기본적인 참조사항

33) 프랑스 2030 의제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agenda-2030.fr/>.

34) 프랑스 디지털위원회 언론용 리포트 (2020.7) <Roadmap on the environment and digital technologies> 50 measures for a French and European agenda on responsible digital technologies: sustainable and at the service of the ecological transition and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에 관한 책임있는 디지털 기술에 관한 프랑스와 유럽 의제에 대한 50가지 조치.

임과 동시에, 주요한 사업 목표이다.

- 문서가 아닌 사람의 역할도 있는데, 경제사회환경위원장³⁵⁾은 당연직으로 생태전환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에 있어서 불평등, 지역 불균형, 일자리 등 국토·환경 분야 외부의 사회적 이슈, 정의문제 등을 논의한다.
- 생태전환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총국을 통해 수직적 정합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의회를 거쳐서 국가적인 변화를 창출하진 않는다. 즉 정책자료와 지표 등을 발간하고,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보고서 혹은 정책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나. 핀란드

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핀란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총리가 내각을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가진 국가이다. 의원내각제가 함께 운영된다고 보았을 때, 총리가 국내 정치와 행정면에서 영향력이 크다. 총선 후 각 당 대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 과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 그리고 총리는 부총리, 장관들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총리는 다음의 모든 법정 부처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 경제위원회 / 연구 및 혁신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명예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네 개의 법정 내각위원회와 부처별 작업반(실무그룹(7))이 수평적 정책 정합성을 위해 노력한다.³⁶⁾
 - 외교안보정책위원회 / EU위원회 / 금융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 현 총리는 각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그룹(7)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각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지속가능 복지사회에 관한 장관급 실무그룹
 - 사회복지부 장관(의장), 지방정부 및 지역개발부 장관(부의장), 체육, 스포츠 및 청소년부 장관, 농업 및 임업부 장관, 사회보장부 장관, 내무부 장관

35)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적인 자문기구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유사. 입법 권한은 없으나, 정책 제안과 자문기능이 중심이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권고안을 발표함. 2021년 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사회에 환경이 더해졌음. 시민참여, 숙의 공론 등을 촉진하는데, 특히 환경분야에 관한 시민회의 결과를 공식 보고서 형태로 발행하기도 함. 주로 노동, 기업,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학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됨.

36) 핀란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부보고서(2024) pp.113~114.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상임장관들, 지속가능발전 조율 네트워크, 자문단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

- 사회복지보건부 선임 전문관이 사무총장, 전문관이 부총장
 - 고용 및 창업에 관한 장관급 실무그룹
 - 노동부 장관(의장), 경제부 장관(부의장), 유럽 및 소유권 운영부 장관, 농업 및 임업부 장관, 사회 보장부 장관, 환경 및 기후부 장관, 재무부 장관, 대외무역 및 개발부 장관 참여
 - 노동시장 카운슬러가 사무총장, 고용경제부 협상담당관이 부총장
 - 청정에너지, 환경 및 공급 보안에 관한 장관급 실무그룹
 - 환경기후부 장관(의장), 농업 및 임업부 장관(부의장), 유럽 및 소유권운영부 장관, 교통 및 통신부 장관, 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참여
 - 환경기후부 협상담당자가 사무총장
 - 이 외에도 내부 안보 및 사법 장관 실무그룹,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장관 실무그룹, 신체적 생활방식 및 기능적 역량에 관한 장관급 실무그룹, 사회쇄신에 관한 장관급 실무그룹이 있음.
- 총리실을 운영하는 책임은 총리보다는 국무 장관에 있다. 1990년부터 총리 임기 동안 국무 장관 (secretary of state)이 총리실에 임명되어서 유럽 및 소유권 관련된 업무와 정부 부처 간의 조율, 모니터링, 정부 프로그램 시행 등 총리실 업무를 지휘하고, 협력을 위한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차관은 입법 준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준비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맡는다.
 - 총리실은 12개 부처 중 하나로, 약 600명이 근무한다. 총리실은 입법검토위원회, 경제위원회, 연구 및 혁신위원회,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모델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³⁷⁾ 그중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략기획실로, 장기적인 사회 정책을 계획하고,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이행을 조정하고, 정책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 전략회의와 내각 비서관 회의를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전략기획실은 사회정책기획부와 정부정책부의 두 부서로 구성된다.
 - 지속가능성 평가·운영 모델 개발: 기존의 환경, 사회, 경제라는 관점 대신,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인간과 문화적 지속가능성, 사회 및 건강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안보·법치·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³⁸⁾
 - 지속가능성 평가·운영 모델 활용: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 및 정책 우선순위 지정, 각종 조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활용. 이 작업에는 각 부처, 연구기관, 기타 분야의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
 -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17일에 발간된 지속가능성 토론 이니셔티브(운영모델 아이디어, 방법론)³⁹⁾에서 제안된 첫 보고서가 2025년에 발간됨.

37) 자료: <https://valtioneuvosto.fi/kestavyysarvioinnin-toimintamalli>.

38) 자료: <http://urn.fi/URN:ISBN:978-952-383-380-7> <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보고서> p.12.

39) *Ibid*, 지속가능성 평가는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 간의 연관성을 명확

-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기반은 2016년 환경부 산하의 조직에서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확대되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우리와 달리 핀란드에서는 별도의 ‘지속가능발전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기후법」을 수립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 국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기후변화법」(장기 배출량 목표 및 탄소 중립성에 대한 목표 설정) 외에도 「환경보호법」, 「재생에너지 촉진법」, 「공공조달법」(지속가능한 소비 원칙)과 핀란드 「통계법」(SDG 지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모니터링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라 볼 수 있다.
- 직접적인 법률은 없지만, 2030 글로벌 목표달성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Valtioneuvoston periaatepäätös)⁴⁰⁾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핵심 기반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이행에 관한 정부보고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이행에 관한 보고서”⁴¹⁾는 정부가 비전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약속”(2013)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30 의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행하며 임기마다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 2030 의제이행의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목표달성은 사회 전체의 기여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핀란드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핀란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30년 의제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자연의 수용한계를 보호하면서 번영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핀란드”라는 비전⁴²⁾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6개 도전 분야⁴³⁾를 중심으로 전략과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 (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웰빙을 증진하는 경제 및 일자리
 - (교육) 교육, 역량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 (복지/포용) 웰빙, 건강 및 사회적 포용 -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
 - (건강/식품) 웰빙을 촉진하는 식량 체계
 - (환경) 생물 다양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진전시키는 산림, 수자원 및 토지 이용
 -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히 알아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 주요 영향, 기회 포인트를 식별하기 위함임.

40) 핀란드는 정부 본회의의 결정은 의회에 대한 정부의 제안부터 주요 보고, 서한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임. 예를 들어 재정이나 기타 이유로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부협의회의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보고하게 됨. 국정보고의 형식.

41)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2022-2030) (Prime Minister's Office, Helsinki 2022 편찬).

42) 2016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따르면서 비전 “205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핀란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선포하였고, 여전히 이러한 비전은 유효함.

43)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전략 (2022.4.25.일자 발표). <https://valtioneuvosto.fi/en/-//10616/finland-publishes-new-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

- 핀란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으로 작성한 문건 <The Finland We Want by 2050>(2016)은 약 5년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원칙으로 반영되었고, 그 이후 여러 검토를 거쳐 작성된 2030 의제 로드맵(2021)은 국가 국가위에서 채택된 후, 핵심 전략 하나와 제목을 수정하여 2022년 ‘지속가능발전 전략(2022~2030)’으로 공표되었다. 앞서 제시한 변화를 요하는 여섯 분야에 더해 2030 의제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원(파트너십)이 최종안에 포함되었다. 현재 이 국가전략은 정부의 ‘중장기 목표체계’이자 다른 종류의 행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 부처에 걸쳐 정책 정합성을 만들어 가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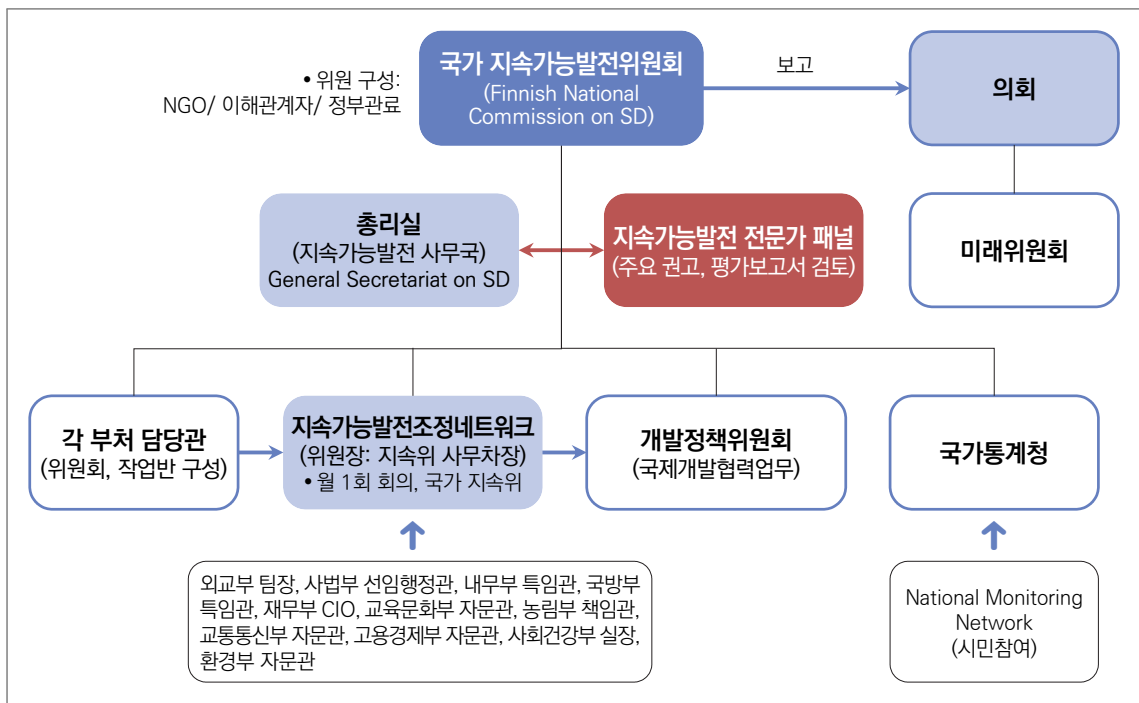
2) 지속가능발전 조직

-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최고 의결기구는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핀란드 국가위원회)’이고,⁴⁴⁾ 총리가 위원장으로서 1년에 2~4회 공식회의를 주관한다. 공식회의 외에도 세미나, 연석회의, 개발정책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총리실이 위원회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상근하는 체계로 전략기획실 소속이다. 앞서 6개 분야 전략과 이행계획을 소개한 것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으로서 사회과학, 환경 정책 등에 관해 박사급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근무한다.
- 두 번째 위원회는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패널’이다. 이름은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문위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와 학계를 연결한다. 전문가 패널은 수당 정도만 받는 전문가들(15인)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패널을 지원하는 전임간사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구 수행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 조정 책임은 총리실이 맡고, 기존 과학사무국을 맡았던 HELSUS,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및 핀란드 환경연구소가 조정 업무를 지원한다. 이 패널은 유럽 지속가능발전 자문기구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와 정책자문, 평가체계 등을 제안하고, SDGs 관련 국정과제 평가 포럼의 역할, 국가 지속위 업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문제점을 부각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자문의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사무국의 자원이 부족하고, 전문가 패널에 대한 수요에 비해 연구 자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거나, 전략연구 위원회가 있어서 SDGs 정책 정합성 촉진에 집중한 시나리오 분석, 미래예측 연구, 학제 간 참여형 지속가능성 연구 등을 요청한 바 있다.
- 세 번째 기구는 총리실이고, 앞서 정부조직과 법제에 관한 설명에서 상당 부분 설명이 되었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지속가능발전 사무 및 관련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며, ‘핀란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위원회’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조율을 위한 네트워크(SD Coordination Network)

44) <https://kestavakehitys.fi/en/frontpage>.

를 운영한다. 지속가능발전조정네트워크의 의장은 총리실 산하 국가위원회 사무차장이 맡는다. 조정네트워크는 거의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외교부, 법무부,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 교육문화부, 농림부, 교통통신부, 고용경제부, 사회복지건강부, 환경부에 소속된 구성원(담당자)들은 소속 행정 부서의 의견을 국가 이행계획 및 기타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조정하고 조율한다. 여기에 개발정책위원회, 핀란드 통계청 및 재무부 관계자들이 상임 전문가로서 참여한다.

- 네 번째 핵심 기구는 개발정책위원회이다. 이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두 개의 위원회(국가 지속위와 함께) 중 하나이다. 2024년 핀란드 국무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핀란드는 총리실 운영에 국무부가 관여하고 있어서, 2024년 지속가능발전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새로 작성하여 2025년 3월 가이드북을 출판하였다. 핀란드의 평가체계와 개도국에서의 평가체계를 사례로 소개하면서 SDG 평가 설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⁴⁵⁾



[그림 7]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 핀란드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로는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업, 지역사회, 지방정부, 정당, 교육기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S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특히 청년 그룹인 Agenda2030 Youth Group은 국가계획

45) Country-led evaluation to achieve the 2030 Agenda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evaluation commissioners, managers and evaluators (by The Fin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과 이행에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⁴⁶)로, 국가 지속위와 각종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핀란드 청년협력연맹(Finnish Youth Cooperation Allianssi)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청년 그룹을 모집하고, 각자의 지역, 조직, 학교, 직장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에 노력한다.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에 따르면, 정책 정합성을 위해 부처 간(cross-cutting)에 적용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정의, 평등 대우 및 양성평등 보장; ② 사회 전반의 포용성 증진; ③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아무도 소외되지 않기-개도국 적용); ④ 세이프가드 보존과 정책 정합성; ⑤ 국제적 책임성.
- 이러한 원칙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한다. 정책 목표가 완전히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는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활동이라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예산편성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부처와 소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
- 탄소배출과 같은 지구적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전 부처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제도적 접근(예, 탄소감축인증제도 등)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변화되도록 정책을 수정해 나간다. 일반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에도 교육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 혁신이나 동료 활동, 지역 행동계획 참여 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율은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으나,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조정 네트워크가 활용된다.
- 끝으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속가능발전 정부보고서는 매년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 미래위원회가 검토한다. 핀란드의 상임위에는 각 부처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헌법위원회와 미래위원회가 부처에 속하지 않는 위원회이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연구, 지속가능발전, 사회 변화 능력, 기술개발 및 사회적 영향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 미래위원회가 정부 보고서를 다루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제출되면, 미래위원회는 외교, 행정, 교통통신, 농림, 교육, 사회보전, 경제, 고용 평등, 환경위원회

46) <https://kestavakehitys.fi/en/agenda2030-youth-group>, 20명의 15~28세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핀란드 청년협력연대(Finnish Youth Cooperation Allianssi)에서 참여자를 발굴하여 연결시킴.

에 회람하고 의견을 구한다. 또한, 광범위한 전문가들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는다.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치는데, 그 예로 2021년 미래위원회는 협의 이후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 정책 적합성과 2030 행동 의제 목표 간 시너지 및 경합
 - 지속가능한 전환의 국제적 맥락과 모니터링 방안
 - 지속가능한 전환에 있어서 지역과 인구 역할
 -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제, 기술, 기업 성장
 -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대한 참여
 -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래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해 명확성과 포괄성에 대해 환영한 반면, SDG 목표 간의 갈등과 시너지, 조치의 적절성, 실행 가능성, 장기적 위험과 경제성장, 지속가능성과의 충돌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해 장관급 정기회의, 지속가능발전조정네트워크,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미래 정부에 대한 지식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정부에서 반영되긴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미래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중 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입법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검토를 받는다. 2021년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구조적 적자”와 “생태부채”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⁴⁷⁾ 핀란드가 SDGs 순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개인의 탄소발자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공공부채의 증가, 인구 고령화와 자녀 수 감소 등 부양 비율의 악화, 도시 인구집중, 지역 간 격차 등이 장래에 자금기반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모두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다. 이 외에도 의회 내 환경위원회는 기존의 GDP 방법이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지표이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미래위원회는 광범위한 타 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에 대해 공정한 전환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육의 기회, 순환경제 로드맵과 운영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미래위원회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성명서(보고서 수준)를 본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이를 승인하여, 입장 문서로 공개한다. 그리고 성명서와 연계하여 총리실 전문가와 협의를 함으로써 행정에서 환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7) 미래위원회 성명서(보고서) 자료: https://www.eduskunta.fi/FI/vaski/Mietinto/Sivut/TuVM_1+2021.aspx.

다. 독일

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독일은 연방제이자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우리나라와는 체제 자체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핀란드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 제20조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적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연방 체제에서 위원회 설치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근거를 둔다.⁴⁸⁾ 「지속가능발전전략(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은 법률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전략문서로서 사실상의 정책 지침 역할을 하고,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며, 총리실(연방)이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 명령, 전략문서는 총리실 산하 고위급위원회가 감독 관리한다. 2002년 처음 채택된 이후 2004, 2008, 2012, 2016, 2021년까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전 부처와 각 주(Länder)와 지역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관련된 법으로는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자원절약법」, 「재생에너지법」 등이 개별 법률로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개별 법률로 실행을 돕는다. 각 부처는 SDGs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서는 연방정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기반이 된다.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이후 꾸준히 쌓아온 지속가능발전 진행보고서에 기반한다. 2008년 '지속가능성 관리'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핵심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 SDGs 채택 이후 2016~2017년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재수립되었다.
- 연방정부의 전략이지만 지역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2015년 베를린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에 지역 공청회를 마련하였고, 주정부 장관, 차관보, 연방정부 차관과 정치인, 기업, 과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지역 공청회와 별개로 연방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메르켈 총리는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2017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 조직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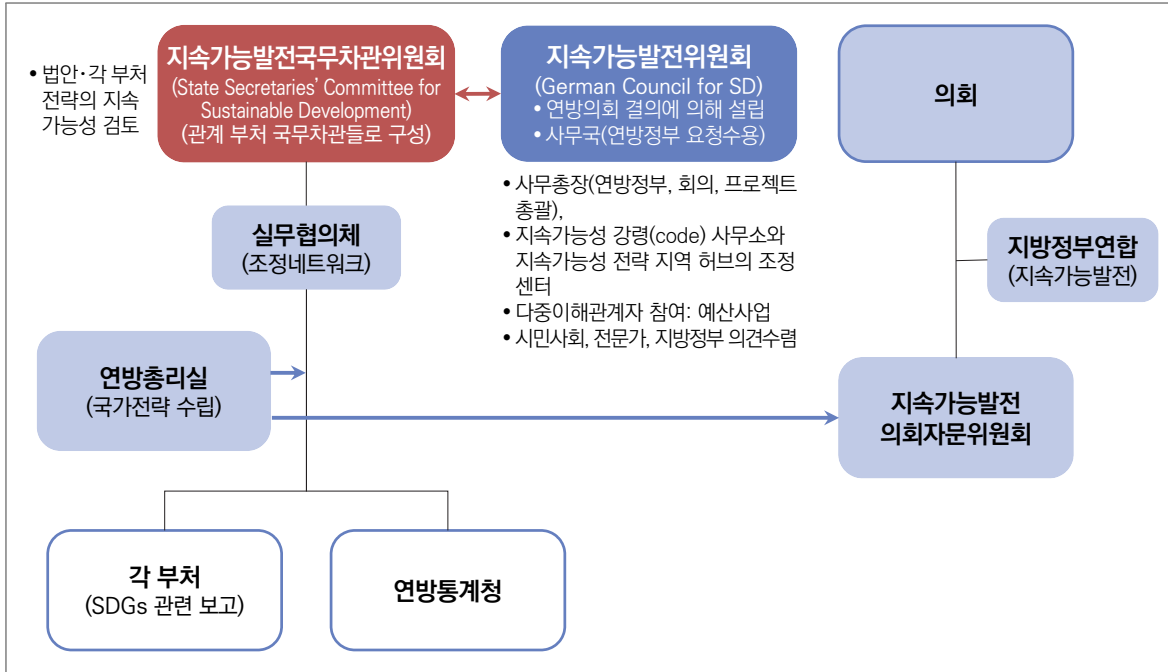
- 독일 연방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RNE: 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는 2001년 슈뢰더 정부 당시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로 존재한다.

48) 김종익(2024) 지속가능발전법 이행 실태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4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der-bundesregierung/nachhaltigkeitspolitik>.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설립 목적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폭넓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적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 15명의 민간 전문가(학계, 기업, 시민사회, 경제계, 청년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여하고, 정책 권고안 제출 및 공공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연 4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 특별 세션, 포럼(공공포럼: Nachhaltigkeitsforum) 등 비정기 회의도 병행한다.
 - 현 위원장 Reiner Hoffmann, 전 독일노동조합연맹의장-유럽경제사회이사회위원
 - 부위원장 Gunda Rostel, 새정치운동-90/녹색당 통해 의회진출, 기업 활동으로 전환 전력
 - 학계, 지방정부 대표(본 시장), 환경단체 대표 3~4명, 경제연합 사무총장, 농민대표, 전직 장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 (회의비, 교통비, 경비 등 지급)
- 주요 의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 자문, 지속가능발전 전략 실행에 대한 점검, 지표 제안, 실현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 제안, 권고안 채택, 다자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State and Society for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s (2024))>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독일 외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유럽지속가능발전위원회 네트워크, UN SDGs 평가 네트워크에도 참여한다.
- 사무국이 별도로 있으며 1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팀장은 박사급 전문가들이 맡는다.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며, 연간 약 1.9백만 유로(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다. 사무국에서 편찬한 보고서로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매뉴얼(BNK)>이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와 함께 매년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2025년 11월 10일 베를린에서 제 24회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
-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Der Staatssekretärsausschuss für nachhaltige Entwicklung)**는 관계 부처 국무차관들로 구성된다.⁵⁰⁾ 지속가능발전 전략 실행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정 기구이다. 정부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기관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가 발굴
 - 지표 정기 검토
 - 연방정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조언
 -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협회를 대표하는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회의의 연락 담당

5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staatssekretarsausschuss-426412>.



[그림 8] 독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여 내각에 위원회 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총리실에서 보좌한다. 본 회의에서 다루는 핵심의제는 다음과 같다.
 - 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전략 초안 검토, 개정안 승인 (현재 2025 지속가능발전전략 논의 중)
 - SDGs 이행 점검: 현황 점검 및 목표조정, 이행지표 달성도 검토, 국가 통계청 보고서 반영
 - 법안/정책 평가: 법안과 부처 전략이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정합성 검토⁵¹⁾ (예,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 조정안)
 - 국제보고 준비: VNR 초안 검토 및 승인
 - 외부 자문 의견 반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RNE)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
 - 예산에 지속가능성 지표 반영 여부 논의 (예, 기후예산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정합성 검토)
 - 주요 부처의 정책 충돌 조정 (기후정책 vs. 산업정책 합의 도출)
 - 청년,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연계 강화 방안 논의
-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는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나누는 조정 기능이 있다. 같은 의제를 여러 부처가 다룰 경우 주관부서와 협력부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 작성이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에서도 부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합의 과정을 진행한다.

51)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행정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는데, 독일의 경우 장관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안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검토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1) 탄소중립 교통전략을 수립할 때 교통부와 환경부 간에 수송부문 감축 로드맵 조율.
 - 예2) 2030 농업정책에서 농업부, 개발협력청, 환경부 간 SDG 2, SDG 15 정책 정합성 확보.
 - 예3) EU 지속가능금융규정 이행에서 재무부, 환경부, 경제부 간 지속가능 투자기준 조정.
- 독일 연방의회 산하 지속가능발전 의회자문위원회(PBnE)가 자문 및 입법에 관한 지속가능성 기준 평가를 실시한다.⁵²⁾ 의회자문위원회는 2004년부터 운영되었고, 위원회의 정책 지침 원칙은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희생하지 말라”이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자문위원회이지만 의회 소속으로 감시 기능이 있다. 입법(안)이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청문회와 입장 문서를 통해 의견을 게재하고 토론을 한다.
 - 지속가능발전 의회자문위원회는 유럽 자문위원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고,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다양한 기관과 시민 사회와도 소통한다. 의회 기간에 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제안을 모아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고, 다음 회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였다.
 -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의회 지원, 특히 지표와 목표의 발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킹 지원.
 - EU 그린딜, 유엔 고위급포럼(HLPF)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의회 지원.
 -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의 이름을 ‘지속가능발전과 미래 이슈에 관한 자문위원회’로 제안.⁵³⁾
 - 선정된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요성 평가 도입, 예산 배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지출 부분에 대한 검토.
 - SDG에 대한 목표 보고를 통해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추가 직원 채용을 통한 과학적 지원 강화.
 - 핀란드 미래위원회와 유사한 점은 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연방 총리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기관들(예,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의회 지원을 담당한다.
 - 정책 정합성을 위한 조율에는 각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담당관들이 정해져 있어서 실무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실무협의체)가 작동한다. 다음은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각 부처 담당

5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der-bundesregierung/der-parlamentarische-beirat-fuer-nachhaltige-entwicklung-427724>.

53) 2024.1월 제출된 내용(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uture Issues) 참조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der-bundesregierung/der-parlamentarische-beirat-fuer-nachhaltige-entwicklung-427724>).

관이다. 부처별 어느 수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부처 및 담당자 직급을 표기하였다.

- BMWK - 경제정책실장
- 재무부 - 경제기후복지부 부장
- 내무부 - 중앙 서비스 II 부서책임자
- 외무부 - 유엔 및 테러대응 최고 책임자
- 법무부 - 사무차장
- 노동사회부 - 사무차장
- 국방부 - IUD II 차장, 지속가능발전 위원 및 부서 코디네이터
- 식품농업부 -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인구변화 노인복지부서장
- 보건부 - 6대 공중보건책임관
- 디지털 교통부 - 정책실장(지속가능발전담당관)
- 환경·자연보호·원자력 안전·소비자 보호부 - 정책 및 소통 담당관
- 교육연구부 - 미래지원부장 (기초 및 지속가능발전 연구)
- 경제협력개발부 -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당관
- 주택·도시개발·건설부 - 도시개발부장
- 문화미디어위원회 - 문화정책 기본문제에 관한 그룹책임자(기념물과 문화재 보호 담당)
- 언론정보국 - 정치정보 부서장(환경 및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농업 담당)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연방 총리는 SDGs와 연계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NSDS)을 감독한다. 총리는 각 부처가 실행 계획과 보고를 통해 SDG 목표에 기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부문 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정기적인 동료 검토(peer review)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여 제안하는 것도 총리의 몫이다.
- 연방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면서 부처 간 일관성, 즉 정책 정합성을 보장하고 국내 정책과 국제 SDG 공약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동료 검토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성을 도입하여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의회는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국무차관위원회**가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전략 수립과 이행 전반은 연방 행정부를 관할하는 총리실의 조정체

제로 운영되며, 관련 위원회와의 조율도 총리실에서 담당한다.

- 독일연방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쌍벽을 이루는 위원회는 ‘미래위원회’인데, 과거 ‘사회통합 연방위원회’였다가 이름을 변경하면서, 코로나 이후 사회 회복력(resilience)과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하였다. 그렇기에 사회통합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교육, 고용, 디지털 전환 등 회복력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R&D, 기업투자도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육연구부 장관,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만큼 관련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로 민간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이며, 미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있다.
- 미래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자문기구로서 정책 제안을 하고, 총리실은 이를 정책 전략이나 부처 로드맵에 통합시키거나 지속가능발전전략 개정 시 반영시킨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미래위원회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미래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이 참고자료, 부속보고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래위원회도 SDGs를 참조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두 위원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간 조정과 협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미래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해 SDGs 이행에 관여한다.
- 또 다른 관련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기구는 ‘기후내각(Klimakabinett)’이고, 2019년 메르켈 총리 주도로 출범하였다. 기후내각은 「기후보호법」에 근거하나 정식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지는 않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실행을 조율하는 회의체이자 TF위원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위원회’ 성격이 일부 있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교통디지털부 장관, 건설주택부 장관, 농업부 장관,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참여한다. 각 부처의 탄소중립 목표와 감축 책임을 배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 관련 국제보고서를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행점검에서 나온 데이터는 연방 환경청을 통해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에게 보내져서 데이터 평가 및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2개월 내에 평가서를 제출한다.
- 전체 세계에서, 법적 기반은 없어도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이 가장 포괄적이고 기초가 되는 국가전략이며, 그 틀 안에서 사회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위원회의 자문보고서이고, 기후내각 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13번 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막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보다 포괄적이고, 부처 간 조율 결과를 담아야 하는 이유이다.

라. 일본

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1990년대 중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의 시기를 보냈다. 2000년에 이미 예측되긴 했었지만, 일본의 총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고, 일본 내에서는 2050년에는 1억 명 이하의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인구감소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로 인한 GDP 성장률 둔화와 연금문제, 자원 부족에도 안정적으로 사회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더해 2013년 동일본지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아베 내각은 재난 속에서 지방의 경제 활기를 찾기 위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4를 발표하고 2050년 이후 1억 명 정도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에서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5개년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명 마쓰다 보고서⁵⁴⁾로 불리는 지방소멸에 관한 위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인구감소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소멸을 유발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로 인해 일본 사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지역 불균형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출생률이 농촌보다 더 낮고, 육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구감소가 더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인구 유지를 위한 거시 전략으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되 모든 지역소멸을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중핵 도시'에 대한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였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전략본부'와 '지역전략협의회' 체제에 대한 제안이 제출되었다.
- 인구감소시대의 패러다임은 결국 대도시의 서비스와 시설의 쇠퇴라는 악순환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에 내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지속가능발전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지방 창생에 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능하다. 일본은 SDGs 이념을 일본이 지속가능발전과 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분명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제시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개념이자 "새로운 자본주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DGs는 지방 창생 달성을 위해 필수적 개념이며, 기업 활동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 일본은 2015년 유엔 결의에 따라 2016년 5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 장관과 외무대신(장

54) 増田寛也+日本創生会議・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2014), (『緊急特集 消滅する市町村 523—壊死する地方都市』) 「提言 トップ」『人口急減社会』国民の「希望出生率」の実現、地方中核都市圏の創成」 및 増田寛也編著,(2014),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관)을 부분부장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SDGs 실시지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인간안전보장’과 연계된 3개의 기둥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① Society 5.0 추진, ② SDGs 기반의 지방창생, ③ SDGs 이행 주역으로서 미래 세대와 여성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까지 행동헌장을 만들고, 과학기술혁신이 SDGs 연계되어 Society 5.0이 적용되도록 한다. SDGs 미래도시 사업 지침에 따르면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소비자, 과학자, 노동조합, 지방정부가 연계되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근거가 되었으며 ‘SDGs 추진 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SDGs 추진 원탁회의는 연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적인 논의주제에 따른 의견수렴 회의로 진행한다. 2024년에는 ‘미래를 위한 협정(Pact for the Future)’ 정상회담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 SDGs 추진본부는 별도의 법률 근거는 없으며,⁵⁶⁾ 내각의 결정⁵⁷⁾에 근거한 강력한 정치기구로 볼 수 있다. 전 각료가 참여하다 보니 행정기관 상호연계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SDGs 추진본부 내부에 관계부처회의(SDGs關係府省會議)를 구성하였다. 관계 부처의 차관 혹은 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이며, 외무성, 내각관방, 총무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 참여하며, 필요할 때 수시 개최로 비정기적이다. 내각관방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외무성 국제협력국과 협력하고, 주로 본부 및 관계 부처 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전담팀은 새로운 조직은 아니지만, 총리실을 보좌하는 내각관방에서, 추진본부 회의 준비와 보고자료 작성, VNR 작성을 지원한다.
- SDGs 이행체계로서 일본 정부는 5P에 맞춰 8개 분야 우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실시지침(2019)을 만들었다. 선진국의 특징으로서 1번 목표(빈곤퇴치)보다는 10번 목표(불평등 완화)와 3번 목표(모두를 위한 건강)를 사람(People)에 해당하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지구(Planet)와 관련된 목표로는 7번(청정에너지), 14~15번(해양과 육상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 목표를, 번영(Prosperity) 목표로는 8번(일자리), 9번(미래 혁신)의 내용을 확대하여 작성하였다. 평화(Peace)는 16번 목표(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 끝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은 17번 목표(SDGs 이행 추진체계와 수단 강화)를 우선과제로 지목하였다.

55) 이창언(2020) 일본 정부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도전과제, NGO연구 15(3):245-278.

56) *Ibid.*, p.253 이창언은 일본의 SDGs가 복잡하고 비구조적이고,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음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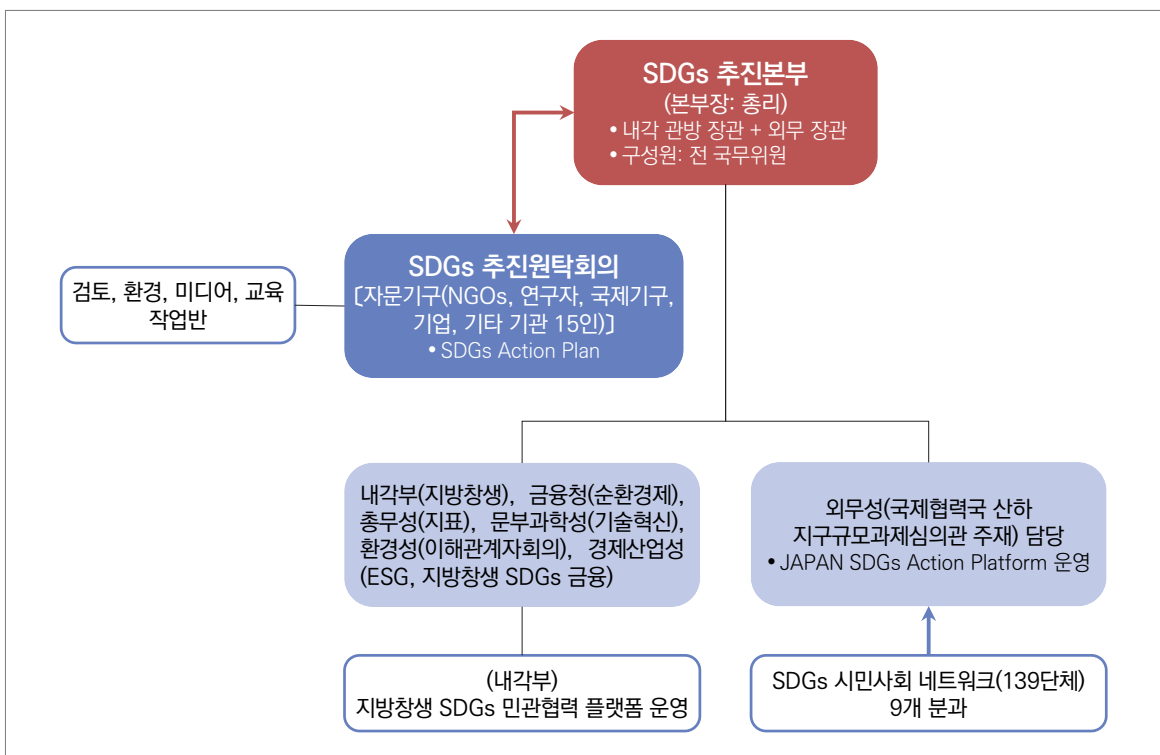
57) 持続可能な開発目標 (SDGs) 推進本部の設置に関する閣議決定, 참고 사이트: (<https://www.kantei.go.jp/jp/singi/sdgs/index.html>).

2) 지속가능발전 조직

- 앞서 SDGs 추진본부의 탄생 배경과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총리가 본부장, 내각 관방대신(장관)과 외무대신(장관)이 부분부장으로 있으며, 전 내각이 참여하고, 내각이 직접 설치한 최고위 행정기구로 국가전략회의 수준에 있는 강력한 조정력과 상징성이 있는 조직이며, 일본 정치체계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DGs 추진 원탁회의'⁵⁸⁾를 결성하고, 민간,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SDGs 추진본부는 국가 SDGs 전략(실시지침과 액션플랜)을 수립하는데, 2016년 처음 수립한 이후, 2019,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일본 SDGs 배경에 지방소멸이 있듯이 지방정부의 SDGs 참여가 매우 인상적인데, 지방창생 정책의 하나로 '미래도시'를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마다 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창생 정책과 SDGs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추진본부)가 재정 및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 일본 정부는 SDGs 추진을 위해 추진본부 내에 간사회(관계부처회의)를 두어서 SDGs 실시지침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국제 논의에 대한 일본의 공헌 노력, 국내에서의 SDGs 홍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체계 정비 등을 논의한다.
-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각부: 지방창생 SDGs 민관협력 플랫폼과 지역창생 SDGs 국제포럼 운영
 - 금융청: 지역경제 생태계 대응을 위한 팀 운영, 금융 디지털화 전략 수립, SDGs 금융경제교육, 지방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및 본업 지원
 - 총무성: SDGs 지표 정리 및 공표
 - 문부과학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STI for SDGs(과학기술혁신) 추진 방침, 패키지 책정
 - 환경성: SDGs 이해관계자 모임 주최, G7 협력 이행과 실천을 위한 워크숍 개최, SDGs 활용 가이드북 작성
 - 외무성: 국제 정보 공유하는 Japan SDGs Action Platform 운영, 국제 정보 발신
 - 경제산업성: ESG 투자 연구회 설립, SDGs 경영 가이드라인 작성 등
- 각 부처뿐 아니라 민간, 지방의 참여도 중요한데, 특히 지방창생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에서는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을 운영하여 '환경 미래도시' 구상을 발전시켜서 모델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SDGs 추진본부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 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SDGs 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SDGs Action Plan 2019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58) 원탁회의에는 환경분과, 교육분과, 홍보분과, 진행관리 및 모니터링 분과로 구성.

- 일본의 추진본부 모델은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와 수단을 빠르게 도입하였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로 여겨지며,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만 SDGs 이행조직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서 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지난 50여 년간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오랜 기간을 장기 집권하고 있으므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한 후 후임 총리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인 기반이 불안정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뜻으로 창설되는 조직이 지속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모델보다는 법 제도와 다중이해관계자들, 시민참여에 의한 지속가능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9] 일본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일본 SDGs 추진본부는 의회에 직접적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보고와 협의, 정책 설명 등의 형식으로 간접적인 보고체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의회 내에 상임 위원회인 외무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있어서 이곳에 보고하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응답하는 예가 있다. 다만 SDGs 관련 예산안은 국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별 예산으로 SDGs 사업들(외무성, 환경성의 국제협력,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고 승인하게 된다.
- 회계감사 및 국가 감사원은 SDG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SDGs 정책성과에 대

해 평가한다.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각 부처 소속의 위원회로는 경제산업성 소속의 녹색성장 전략회의가 있으며, 산업전환을 다룬다. 환경성 소속의 지구환경부회 중앙환경협의회가 있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심의한다.
- 성평등 관련해서 총리실이 성평등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리더십 확대가 주요한 의제이다. 그러나 SDG 5번 목표(양성평등)로 수립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아동정책심의위원회, 고령사회대책회의 등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환경성의 중앙환경협의회에 '지속가능한 사회형성분과'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순환경제모델을 자문한다. 각각의 SDGs 관련 위원회는 대체로 부처 소속이며, SDGs 이행에 있어서 입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부처별 전문기구가 협조 기관으로 운영되며, 간사회에서 조율과 실행을 담당한다.

마. 영국

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영국(United Kingdom)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하기로 했고, SDGs 이행은 국제개발부(DFID)가 담당하다가 현재 국제개발부가 '외교, 영연방 및 개발부(FCDO)'로 통합되어서, 국제협력 사업에만 SDGs 이행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없다. 오히려 의회의 '환경감사위원회'가 국내 SDGs 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국제개발위원회'가 개발협력사업의 SDGs 이행 정도를 검토한다. 2019년 VNR을 제출할 때에도 국제개발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였다.
- SDGs와 관련된 위원회로는 '기후변화위원회(CCC: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가 있다. 「기후변화법(2008)」에 기반한 정책을 점검하고 자문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5~8인의 자문위원회와 5인의 적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을 자문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한다.⁵⁹⁾ 예를 들면, 영국 정부(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주관)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약속했었으나, 2019년 6월 오히려 10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법을 개정한 바 있다.⁶⁰⁾ 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후변화위원회이고,

59)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mmittee-on-climate-change/about>, 이경희 (2024)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pp. 104~117.

60) 영국은 탄소중립을 입법화한 국가임. 영국법제처 기후변화법2008 - 2050 목표수정 법령: Amendment of the target for 2050 2.-(1) Section 1 of the Climate Change Act 2008 is amended as follows. (2) In subsection (1), for "80%" substitute "100%" (<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19/9780111187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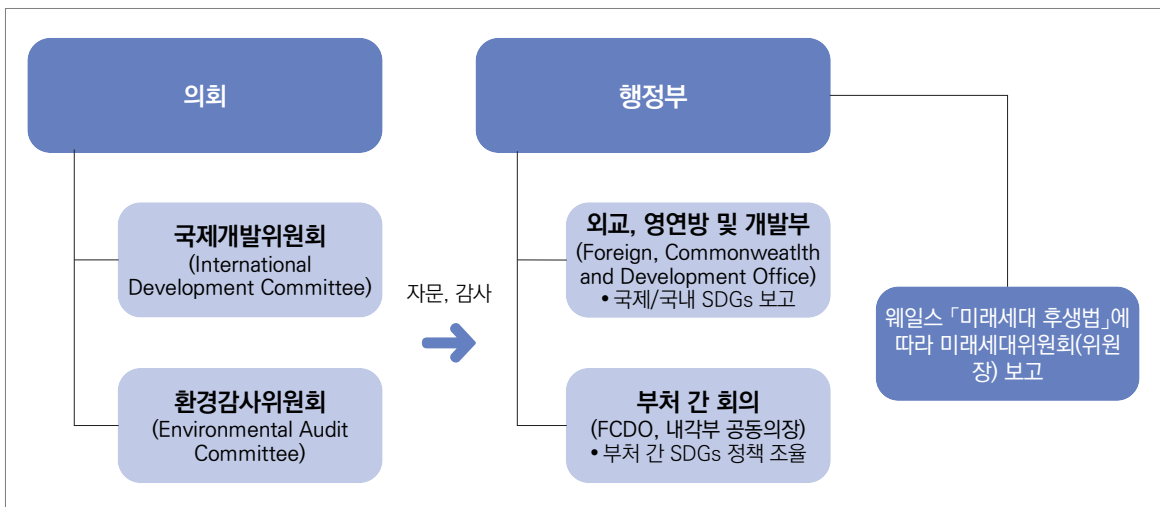
5년 단위의 탄소예산 설정과 단계별 감축 경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넷제로 전략'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변화위원회는 '2011~2014 기업(탄소중립) 계획'을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 우선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을 계기로 에너지기후변화부, 환경식량농촌부, 지방분권행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와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영국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위원회 중 하나는 연료빈곤위원회(Committee on Fuel Poverty)인데, 에너지 및 넷제로로 인한 연료 빈곤 문제를 줄이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조언하고, 연료 빈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는 기업에너지 산업정책부 에너지안보와 넷제로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불평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환경법(2021)」이 있고, 「웨일스정부법(2006)」이 있어서 웨일스의 지속가능발전을 법으로 포함하였다. 「미래세대 복지후생법(2015)」이 제정되어 7개의 웰빙(후생)에 해당하는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법은 독립적인 웨일스 미래세대 위원회와 웨일스 감사원의 역할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검토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 웨일스 의회는 웨일스 정부 및 기타 기관이 웨일스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VNR 검토에 웨일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웨일스와 목표' 워킹 그룹이 설립되어 웨일스의 보완 보고서 작성에도 기여한 바 있다.
- 4개의 국가가 모여서 영국을 만든 만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각각 자치 권한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하는데, 웨일스 외에 스코틀랜드는 「기후변화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잉글랜드는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는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2005년 지속가능발전전략계획(Securing the Future: Delivering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작성하였다. 도시계획을 통해 5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정책을 구체화하되,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⁶¹⁾
 - 환경 영향 고려
 - 건강하고 강인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
 - 건전한 과학기술의 사용

61) 조현지, 이수진, 홍의석, 김재호, 최성진. (2016). 영국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외. 국토., 98-109.

2) 지속가능발전 조직

-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4개의 구성국가의 자치권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도록 한다. 영국이 2019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 이후 17개 목표에 관한 국내 활동에 관한 보고 부분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된 행정부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작성하였다고 말한다.
- 2030 의제와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리더십과 정책 감독을 맡은 기관은 영국 정부의 외교, 영연방 및 개발부(FCDO)이고, 내각부, 위임된 행정부, 영국 국가 통계청인 통계청(ONS) 등과 협력한다. FCDO와 내각부의 책임자가 SDGs 부처 간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SDGs 거버넌스의 틀을 갖췄다.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통계청 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 글로벌 지표에 대한 영국 데이터는 국가 통계청(ONS)에서 유엔(UN)에 보고하는데, 데이터는 ONS의 국가 보고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지표, 출처, 가능한 경우 세분화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0] 영국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의회의 국제개발위원회와 환경감사위원회가 SDGs 이행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예산검토를 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행정부는 보고서 및 자료를 SDGs 이행 권한/자치권이 있는 구성국가에게 제공하고,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인 웨일스 미래세대 위원회가 이러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SDGs 이행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한다.
- 영국은 하나의 부처별 계획들(Single departmental plans)을 발간하였는데, 정부의 정책 통합성

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각 부서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담고 있다. 영국이 총리실과 같은 조정부서의 적극적인 활동 없이 외교 및 국제개발 부처의 주도로 국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부처의 이행계획을 총리실(cabinet office)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종합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효율화와 책임성, 투명성에 관해서 '부처 간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정례회의를 갖고 있으며, 범부처 이슈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 관련 위원회로는 합동자연보전위원회(JNCC: Joint Nature Conservation Committee)가 있어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생태계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⁶²⁾ 특히 SDGs 이행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SDGs 달성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이점을 고려하는 것(자연기반해법)은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서, 합동위원회의 자문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은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해외 영토(연영방)를 관할해 왔는데, 개발협력 분야에서 SDGs 이행을 위해 합동자연보전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자문을 제공한다. 합동자연보전위원회는 연간 4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해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식량농촌부(DEFRA)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의 회정부, 북아일랜드의 농업환경농촌부의 승인을 얻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소통과 조율은 특정 시기(종합계획 수립 혹은 보고서 제출)에만 발생하며, 각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통합된 계획 수립은 부처 간 상임위를 통해 논의된다.

바. 캐나다

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목표는 「연방지속가능발전법(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⁶³⁾에 근거한다.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기후변화부이고, 3년마다 지속가능성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캐나다의 관계기관 간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 전체(whole-of-society) 접근을 목표로 하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기반한다. 정부, 선주민,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등 모든 계층이 의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62) <https://jncc.gov.uk/advice/sustainable-development-overseas/>.

63) 캐나다 연방지속가능발전법(2008년 제정, 2019년 개정)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방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개발·이행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 전체를 통하여 조정된 조치들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캐나다의 국내적 및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여 캐나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 주요 사업으로는 2030 의제 국가전략, 자발적 국가검토, 연방 이행계획 등이 있다. 이행계획에서는 정부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였는데,⁶⁴⁾ 예를 들면 고용사회개발부(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가 SDG 이행 부서로서 2030 의제 국가전략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참여, 대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명시하였다.⁶⁵⁾ 이행계획에는 이 외에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표, 검토, 자문, 기금, 파트너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가 제안되어 있다.
 - 지표체계(CIF: Canadian Indicator Framework)에 관한 협의: 선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립, SDGs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검토: 자발적 검토(VNR)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에 진행되며, SDGs 목표 달성에 관한 전 분야의 참여를 강조
 - 자문: 외부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제공함
 - 기금: SDGs 기금 프로그램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 공공참여: 인식제고 캠페인, 협의, 이해관계자 행사 등 지속적인 공공참여 기회 제공
 - 선주민 파트너십: 캐나다 선주민(인디언)의 전통지식과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주민들과 협력하여 SDGs 달성하도록 노력

2) 지속가능발전 조직⁶⁶⁾

- 「지속가능발전법」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전략(FSDS)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감독을 **캐나다 추밀원**(A Committee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에 위임한다. 군주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추밀원은 왕의 자문기관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캐나다는 내각제 국가이며, 여왕을 대리하는 기관으로서 추밀원이 연방총독에게 국정 및 헌법에 관해 조언할 수 있다. 특히 총리가 내각 구성에 대한 인선을 마치면 추밀원이 이를 검토하고 총독에게 권고안을 올리고, 왕실이 승인한다. 연방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추밀원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주로 전현직 총독, 전임 총리, 대법원장, 각주 총리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모두 종신 명예직이고, 정기적인 회의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는 추밀원장과 사무처에서 하는데, 추밀원장은 내각제 국가이다보니 현재 연방하원의원이 맡고 있으며, 추밀원의 사무처는 총리 직할 전문 공무원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추밀원의 사무처장은 부총리 역할과 내각 사무처장 역할을 수행한다. 캐나다에서 총리실(PMO: Prime Minister Office)은 총리비서실에 가깝고,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기능은 추밀원 사무처가 한다고 볼

64)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agenda-2030/federal-implementation-plan.html>.

65)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reports/sustainable-development.html>.

66)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federal-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strategies-reports/management-framework-2022-2026.html>.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이다. 2025년 1월 현재 총 2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중이해관계자 위원회로서 각 지방정부(Province) 10개 대표 10명과 준주 대표 1인씩 총3인, 선주민 대표 6인, 그리고 환경단체, 기업, 노조에서 각각 3명씩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이 맡고, 회의비가 집행된다.
-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은 환경기후변화부 지속가능발전사무국이 담당한다. 사무국에서는 환경기후변화부와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 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조율하고, 목표, 지표 등 정책 전반을 관할하면서 이행을 점검한다.
-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FSDS)의 개발 및 보고, 정책을 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내에 지속가능발전사무국(SDO) 설립[법률 제7조(1)].
 -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SDAC) 설립[법률 제8조(1)].
 - 3년마다 최소 한 번 국가전략(FSDS) 개발[법률 제9조(1)].
 - 전략 초안에 대하여 의회, 관련 의회 위원회 및 대중과 협의[법률 9(3)].
 - 전략 초안을 검토 및 의견을 위하여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감사관(CESD)⁶⁷에게 제출[법률 9(4)].
 - 공식 전략에 대한 추밀원 위원⁶⁸(GIC)의 승인요청[법률 10(1)].
 - 전략[법률 10(2)]과 연방정부의 전략 실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법률 7(4)].
 - 「지속가능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지정기관(designated entities : 관계 부처, 기관 및 국영기업의 장)들과 같이 FSDS[법률 11(1), 11(2), 11(3)]를 개발·제출·보고.
- **지속가능발전사무국**
 - 환경기후변화부 소속으로 FSDS 개발 및 보고·조정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목표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책임.
 -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 발굴, 새로운 동향에 대한 지식과 증거 수집.
 -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협의, 참여.
 - 연방기관 간의 협력과 상생 촉진.
 - 캐나다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보고서 작성(지표가 다른 연방 지속가능성 체계 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67) https://www.oag-bvg.gc.ca/internet/English/au_fs_e_370.html#AG_Canada.

68) <https://www.canada.ca/en/privy-council/programs/appointments/governor-council-appointments/general-information/appointment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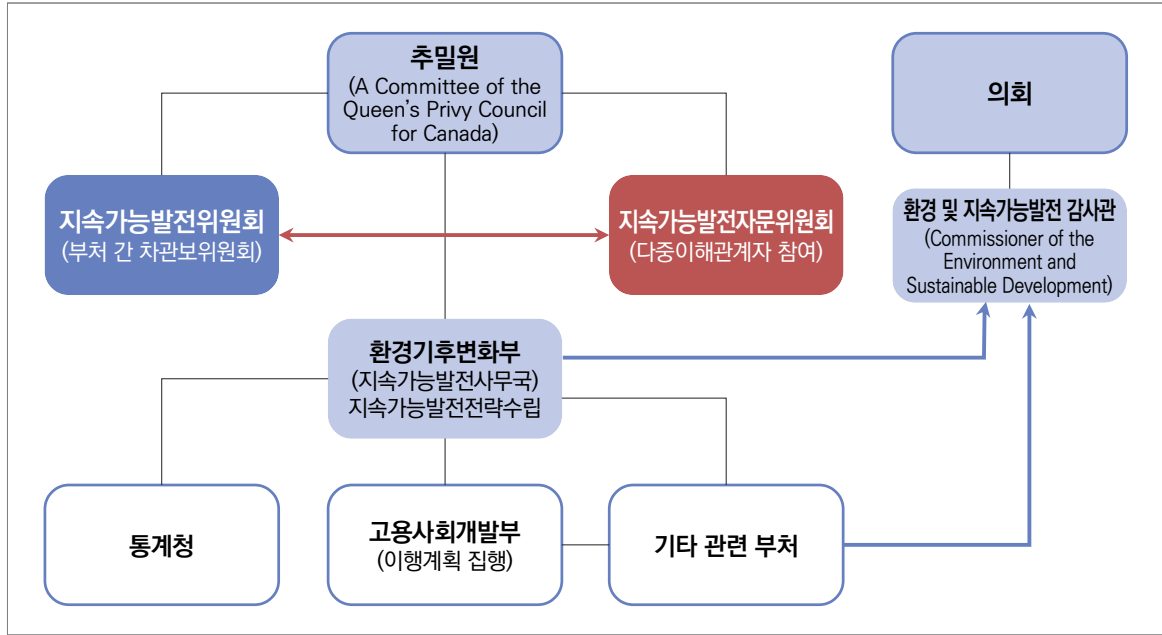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 및 홍보.
 - 의원 및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의견과 의회의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감사관이 제출한 의견 및 감사를 검토하거나 회신
- 관계 행정기관들은 다음의 책무를 수행한다.
 - FSDS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부처별 지속가능발전전략⁶⁹⁾(Depart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DSDS)을 의회에 제출.⁷⁰⁾
 - ① 해당 기관의 목표와 계획 수립
 - ② FSDS를 준수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
 - ③ 기관의 권한을 고려
 - ④ 정부의 녹색화에 대한 관련 재무위원회 정책 고려
 - ⑤ 공개 검토기간 동안 및 의회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감사관이 FSDS 초안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 고려
 - ⑥ DSDS 제출 후 첫 2년 동안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포함하여 DSDS 이행 진행 상황 보고
 - ⑦ 관계 기관들은 온라인 전략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업데이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및 승인을 SDO에 제공
 -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하였는데,⁷¹⁾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연방 기관들의 참여도 권장한다. 이 기관들도 FSDS에 목표, 지표, 단기 이정표 또는 실행 전략을 제출할 수 있다. 부서별 보고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관은 본 전략의 4년 주기 동안 기존 조직 보고 절차를 통해 매년 정보와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⁷²⁾
 - 끝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조정 역할은 ‘부처 간 차관보위원회(The Interdepartmental Assistant Deputy Minister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처 간 차관보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회와의 연계 및 정책 조율에 실질적인 단위이며,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은 연 2~4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국장단의 지원을 받으며, 「녹색정부전략», 「2030의제 국가전략을 위한 연방이행계획», 「유엔 선주민권리선언」 등 정부 전반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69)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corporate/transparency/priorities-management/departmental-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2023-2027.html>.

70)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federal-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strategies-reports/management-framework-2022-2026.html#toc18>.

71) <https://www.statcan.gc.ca/en/transparency-accountability/corporate-management-reporting/departmental-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2023-2024>.

72) <https://www.oic-ci.gc.ca/en/resources/reports-publications/2023-2024-departmental-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report>.



[그림 11]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체계

3) 지속가능발전 보고체계와 조율

- 캐나다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3년마다 보고·평가하고 갱신한다. 각 부처는 전략에서 각 부처에 해당하는 이행과제를 평가하고, 성과를 환경기후변화부에 제출하고, 환경기후변화부는 3년마다 전략이행보고서를 편찬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 정기적인 평가보고서 외에도 캐나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SDG Data Hub 및 환경지표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률, 보호지역 비율, 공공조달 친환경구매 비율 등이다.
- 앞서 조직에서 소개한 것처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은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추밀원 사무처에서는 주요 이슈를 조율하고, 부처 간 차관보위원회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처 간 협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 국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함으로써 전략을 갱신할 때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때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에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가 전략 자문을 하게 된다.

사.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교분석

- 앞서 소개한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법제도의 기반이 주류화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법」이 없더라도 선진국일수록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개별 법의 이행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모도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안에 SDGs 관련 개별 법을 잘 포진시켜서 수평적 정책 정합성을 촉진하고,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참여와 예산 투입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결속시키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특징 비교

국가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명칭	생태전환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Gs 추진본부	국제개발위원회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
제도기반	생태전환위원회 규정(환경법 하)	법제도 없음. 2030의제 이행계획	법제도 없음. 지속가능발전 전략	법제도 없음. 내각결정, SDGs 실시 지침	법제도 없음. 지속가능발전전략, 웨일스정부법 2006	연방지속가능발전법
성격	다중이해관계자 (Council)	다중이해관계자 (Commission)	다중이해관계자 (Council)	전략 실행기구	의회 상임위	다중이해관계자 (Council)
위원구성	당연직위원(경제 사회환경위원장), 지방공무원, 전문가, 기업, 환경단체, 시민사회, 의회, 청년 등 58명	환경단체 등 NGO, 이해관계자, 정부관료 다수 참여(다수 참여로 규모가 큼)	15명의 민간전문가 (청년 포함)	국무위원	국회의원	각 지방과 준주대표 1인, 선주민 6인, 환경단체, 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 등 총 28명
위원장	생태전환부 장관	총리	민간위원	총리	위원 중 호선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 총국	총리실, 전문가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사무국(전문가)	SDGs 추진본부 전담부서	외교, 영연방 및 개발부(FCDO)	환경기후변화부 (지속가능발전 사무국)
전문가위원회 유무	없음. 단 부처 내 전문가 그룹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패널	없음. 단 각 부처 실무코디네이터 (전문가급)	자문기구(SDGs 추진원탁회의 15인)	자문단 (국제개발분야 전문가)	없음. 부처 내 전문가 그룹 활용
국제협력	유럽 및 외교부 국가개발 및 국제연대위원회	개발정책위원회	연방경제협력 개발부(BMZ)	외무성 (국제협력국)	외교, 영연방 및 개발부(FCDO)	국제부캐나다 (GAC)
국내 정책조율기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CGDD)	지속가능발전 조정네트워크	연방총리실, 지속가능발전 국무차관위원회	추진본부 내	부처 간 회의 (내각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부처 간 차관보위원회)

3. 한국 사례

가. 제도적 기반과 시기 구분

1) 한국의 정부위원회

- 정부위원회는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다. 정부위원회의 역할은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행정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자문을 주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다.
-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에는 심의를 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법률 등으로 정해진 의무 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흠결의 요인이 된다. 의결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심의 결과를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에도 검토와 자문 위주로 진행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 4~5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재수립될 때, 혹은 연간 이행계획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부분 원안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 정부위원회의 기준은 소속기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로 구분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소속과 부처(환경부) 소속의 설립 근거를 가졌다.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된 후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속법으로 격하되면서 환경부 소속 위원회가 되었다. 그 후 기본법 재제정까지 환경부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관련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등이 있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해체되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중앙 17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위촉직(전문가) 17명과 2명의 공동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기후환경회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했던 초기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정책자문,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대통령 정책자문을 진행하였다. 제1기~제4기에 해당하고 기간으로는 2000년 9월~2008년 2월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운영되었다.
- 두 번째 시기는 2007년 8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서 제5기를 말한다.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면서 2008년 5월~2009년 4월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 세 번째 시기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환경부 소관 위원회가 되면서 상당히 후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2~4기)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5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11기)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부처(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7-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8-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10기)

[그림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기별 특징

나. 이행체계별 운영성과

1) 대통령 소속

- 초기 국가 지속위는 국정과제 위원회로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을 진행하였고, 그 자문 의견이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세계환경정상회의 대책, 조세제도 개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국토이용체계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전달하였다.
- 조직 구성은 초기 위원장 1인 포함, 3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작해서 5기에는 위촉위원 80인 이내 위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8년 기본법 제정될 당시, 당연직 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 지방위원회 위원장 참여하면서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 간사위원의 유무가 조직의 활성화에 중요하다. 1~2기: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 3~4

기: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비서관, 5기: 대통령실 환경담당 비서관 1명, 전문위원회 간사 1명을 별도로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였다. 이러한 간사와 함께 위원회 임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 주요한 성과로는 1~2기 동안 국가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지속위가 국가 중장기 계획(예,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를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시범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서의 회신 및 의견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대통령 보고 등의 압박 외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2기 지속위는 분과위원회에 종합 조정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협의회가 생겨서, 각 분과위원장, 부처 실무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을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고,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53개 지표를 통해 국가 간 비교까지 진행하였으며, UN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제3기 지속위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사회·환경·건강/ 대외협력·교육/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지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달성도 등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각 부처의 이행 수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14개 분야 169개 지표를 1차로 선정하였다.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한탄강댐 관련 갈등조정에 기여하였다.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도 구축 및 확산 단계로 진입하여 국가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이행평가 시스템,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사무국이 총 26명으로, 고위 공무원 2인(대통령 비서관, 환경부 비서관), 4급 이상의 공무원 5인(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파견), 5~6급 환경부 공무원 2인, 계약직 공무원 6인, 기능직 5인 외에도 민간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근무하였다. 사무국에서는 주무부처와 기관들이 주제별 팀을 이루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지원하였고, 정책 반영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 3기의 전문위원회에 이어 제4기에는 본격적으로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두었다. 특히 지역대표 31명이 참여하여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국가적으로는 군산과 서천 지역의 장항산단 개발을 위해 갯벌 매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현재 서천군 생태산단과 국립생태원 이전 등의 정책 조율에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관리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양성 등 사회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1~4기 동안 정책 연구(36건)를 진행하였고, 기본법을 제정하였던 제5기는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확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07) 대비 자문활동, 새천년개발목표(MDGs) 대한민국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2) 환경부 소속

- 제6기~제10기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어 대통령비서실 담당관의 참여가 없어지면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직급도 한 단계 낮아졌다. 6기~10기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체계로 이어졌고, 주로 환경, 산업, 사회건강, 기후와 국제협력분과 4개의 분과로 지속되었다. 사무국이 별도로 없었고, 환경부의 정책총괄과 혹은 녹색전환정책과 등 총괄부서를 통해 위원회 지원업무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는 계속되었는데, 주로 국토, 해양, 환경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지속위의 사전 심의·의결 후 녹색성장위원회의(대통령 소속) 심의·의결을 거쳐서 수립되었다. 제3차, 제4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역시 2015년과 2020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K-SDGs 수립에 전 부처에 걸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출신이었기에 환경부에 지속가능전략 담당관을 두어 이를 추진하였다. 당시 약 1년간 전문가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K-SDGs는 이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 주요 성과로는 9기, 10기 지속위에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심의·발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개선의견 등을 통해 수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고, 2020년, 2022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9기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10기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제6~8기에 이르는 기간,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조직체계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선택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성보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이 많아졌고, 경제와 산업계에 친환경 산업, 기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따라 녹색성장 분야가 강화되었다. 다만, 지방정부 의제21 관련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일되면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화되었다.
- 국제적으로는 2016년 외교부에서 UN에 자발적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한 바 있고,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지표 논의 동향이나 UN SDGs 이행현황 점검결과, 통계청에서 SDGs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보고 받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3) 다시 대통령 소속

- 2022년 기본법, 2023년 시행령 제정으로, 2024년 제11기 지속위가 구성되었고,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이 사무국으로서 위원회와 전국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를 연계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다만 여전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국가전략을 다루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역할 분담과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기능을 가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실질적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 방향으로 제시된다면 녹색성장이 아닌 포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정합성

1)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 참여(수직적 통합성)

- 초기 대통령 소속 지속위 시기에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는 작업이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는 5기에 이르러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처럼 이미 2000년대 초반 지방정부에도 지속위 혹은 지속위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다만 녹색의제라는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의제21이 지방에서도 다뤄지면서 지방의제21이 확산되었고, 1997년에는 광역지자체에 지방의제21이 수립되었다. 다만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녹색의제 중심의 활동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국가적으로 SDGs를 도입하던 시기에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였다.
- 2017년에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지지협)가 발족하였고, 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의제21 거버넌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일되면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속으로 있었을 때는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총괄 부서가 아닌 환경정책과 소속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 경제 분야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중심의 활동을 하는 예가 많았다.
- 환경부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숙의공론장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되어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총괄 부서로 이관되어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역시 폭넓은 전략으로서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혁신, 복지와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역시 계획이 아닌 전략으로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며, 시민참여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좌우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총괄기획 부서가 전략을 수립하지만, 관련 예산편성과 사업부서의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이행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재배치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 부처 간 협력(수평적 정합성)

- 초기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 협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가 국가 비전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정부가 교체되면서 국가 전략의 변경에 따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위치가 변동되면서 수평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 녹색성장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중심에 놓고 있다. 녹색산업이라 일컫는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화석연료와 핵 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영국은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한 이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제3활주로를 건설하려 했을 때, 항소 재판에서 활주로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아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적인 정책 일관성의 사례이다. 물론 이후 영국 대법원이 일종의 계획허가인 개발동의명령을 구하고 건설이 가능하도록 판결을 뒤집기는 했지만, 당시에 정책 일관성 면에서 큰 시사점을 남겼다.
- 각 국가에서 정책 정합성을 이유로 지속가능성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한국은 국가위원회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법 제·개정과 행정계획의 검토를 통해 조용한 의견전달이 중심이다. 따라서 정부위원회 중 하나로서 그러한 문제제기보다는 앞서 정책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조율의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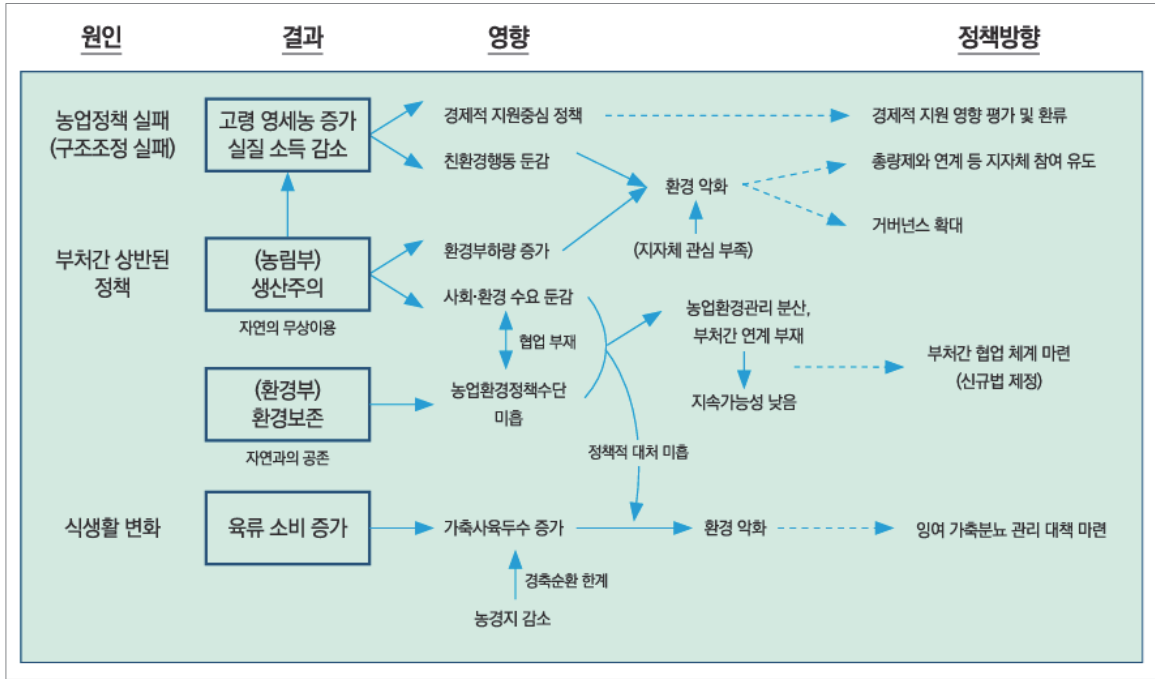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K-SDGs를 수립하는 등 각 부처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다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정책 정합성을 위해 영향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원조사업을 담당하는 KOICA에는 ODA교육원에서 SDGs 교육과 지표수립 등이 진행되어 원조사업에서 리우마커(기후환경) 사업과 SDGs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등 타 부처에서도 SDGs 활용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
- 2019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⁷³⁾에 따르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한 사례가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정합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환류 및 지자체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연계될 수 있게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2021)⁷⁴⁾을 발표하고, 국가 단위의 ESG 법안 및 기업의 ESG 내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영향력보다는 국제적인 동향에 따른 정책 전환이지만,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산업계에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 이 외에도 교육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와 논의하였고(2021),⁷⁵⁾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반된 정책 지향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부처 간 공동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공동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⁷⁶⁾ 아래의 그림처럼 부처 간 상반된 정책을 펼친 데서 기인한 정책 충돌과 정합성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조율할 수 있다면 환경부의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축식품부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SDGs 관련 핵심 위원회 중 하나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있고, 농축식품부 산하 중앙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문제 해결을 동시에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3) 2019.12.1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보도참고자료. p.3에 따르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주안점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과 내용적으로 미래 전망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면이 강조됨.

74) 관계부처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75)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2021.12.8. 보도자료.

76) 한국환경연구원(2024)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환경포럼 제28권제2호:2~32.



[그림 13]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방향

* 자료: 한국환경연구원(2024).

4. 종합 분석

가. 지속가능발전 조직 간 역학관계 분석

1) 행정-입법-시민의 관점

- 지속가능발전 조직은 행정기관, 입법기관, 시민사회로 나누어서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기관은 데이터 및 정보 면에서 타 기관보다 월등히 앞서나가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정책 적합성에 기여할 수 있다. 통계청이 매년 SDGs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관련 위원회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입법기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은 중요한 의제이다. 해외 사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혹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패널 등이 작성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의회(미래위원회 등 상임위)에 보고하고, 검토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전 부처에 영향을 주고, 정책의 일관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으로 입법부가 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였다.⁷⁷⁾ 특히 퓨처 브리프(2호)⁷⁸⁾를 통해 한국의 VNR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이지만,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의 상위 가치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그 하위로 환경과 경제, 보호, 사회 등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분절적인 현황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① SDGs에 다수의 세부목표를 연관시키고, ②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의제21에서 시작하여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1992년 리우회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면서 환경과 개발, 환경정의 등의 주제가 확대되었고, 의제21이 만들어졌다. 그 후, 2002년 리우+10, 2012년 리우+20에 시민사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과 같은 집중력을 갖지는 못해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수직적 정책 통합성 측면에서 지방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교육, 시정 및 도시계획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이 통합적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가위에 광역지

77)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2018.1.12.) 보도자료.

78) 조해인(2021.8.16) “한국의 미래 SDGs 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국회미래연구원 Future Brief 2호:1~19. 다만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VNR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보고서 작성 자체가 편향되었을 수 있음.

자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기반으로 정책 통합성을 만들어 갈 여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자체장의 정책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부터 각종 개발사업을 지지하는 정책자문단이 지속위 위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협의회 혹은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앙정부위원회의 관점

- 지속가능발전은 목표 수립, 전략과 계획 수립, 이행과 평가, 보고와 환류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례조사 대상 선진국들은 모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정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진국의 중앙정부위원회들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되 실행보다는 자문과 정책의사결정에 비중이 커 시행에 필요한 별도 조직이 요구되었다.
- 사례조사 대상 국가에는 총리실에 지속가능발전사무국(핀란드, 독일)을 별도로 두거나 총리실에 전담팀(일본)을 두어 위원회를 보좌한다. 그러나 그 역량과 규모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다. 사무총장의 역할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정책 조율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가 하면, 지원하는 역할에만 무게를 두기도 한다. 지원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경우,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조율에 개입하는 경우는 위원회 정책 활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즉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에 대한 보고, 소통이 중요한 반면, 고위급 공무원이 중심인 지속가능발전 국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책 정합성 및 조율, 이슈 해결이 주요한 미션으로 다뤄지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연구과제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집중한다.
- 중장기 계획의 검토 내용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정부 출연기관 중심)의 연구자들이 지속가능성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과 정책연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는 전문가 개인의 검토가 아닌 연구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다수의 기관 연구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연구책임자가 수렴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계획 수립 부처에서 작성한 초안을 검토함으로써 동료검토보고서(peer-review) 작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타 부처의 계획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어려운 행정부의 구조 속에서 생산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검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 부처 간, 위원회 간 협업을 위한 메커니즘

- 다양한 정책 영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노하우, 역량을 배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부서/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지만(Klijn and Koppenjan, 2016, Shawoo 외, 2022)⁷⁹⁾, SDGs는 부문별 정책 목표, 수단 및 이행 과정 간의 시너지 창출과 절충안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 부처 간의 칸막이(silo)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책 프로세스를 통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 행위자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 공간이 필요하다(Bennich *et al.*, 2020). 해외사례 분석이 시사하는 4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모형: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 간 조율

- 부문별 부서와 달리 정부 중앙 기관은 규범을 수립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공하여 부문 간 불일치를 해결하고 모든 관련 정책 영역의 행위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OECD, 2023).⁸⁰⁾ 국가 정부체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행정부 중심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총리실이자 국무조정실은 각 부문의 부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정부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기관이다(Breuer *et al.*, 2023).
- 선진국 사례에서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발전협의회(council)와 별도로 국무위원 혹은 고위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mmittee)가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각 부처의 주요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를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해외사례에서 국무조정실은 공공 행위자들을 소집하고 SDGs 달성 방법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원회 안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중앙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협력 사례 또는 농업정책과 환경보전의 정책 정합성 등을 생각해 보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부처의 교차쟁점을 정책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9) Klijn, E.H and Koppenjan, J.(2016) Governance Networks in the Public Sector, Routledge; Shawoo, Z., Maltais, A., Dzebo, A., & Pickering, J. (2022). Political drivers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tical framework.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33(4) 339-350.

80) OECD (2023). Driv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celerating Progress on the SDGs. Paris: OECD Publishing.

2) 제2모형: 실무반 운영을 통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

- OECD 보고서(2018)⁸¹⁾는 다양한 분야의 부서가 상호작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 주체에게 정책 설계 및 실행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Ansell & Gash, 2007).⁸²⁾ 특히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은 정부위원회 간에는 불확실한 결과를 가진 행위자 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다.
- SDGs 관련 위원회의 담당자들이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하는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영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된 모든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목표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hawoo *et al.*, 2022). 부서 간 위원회 실무그룹의 정례적 회의는 SDGs 간의 교차 문제와 상호 의존성을 식별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의제 2030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차원 간의 상호 의존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K-SDGs를 수립할 때 활용했던 작업반은 각 부처에서 관련 전문가(국책 연구기관) 및 담당 부서 실무자들을 모아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정부 실무자들이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은 자료를 축적하면서 시민사회에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서 투명성과 광범위한 의견수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도 요청할 수 있어서, 수직적 통합성도 기대할 수 있다.

3) 제3모형: 정책 주류화 모색

- 다양한 정책 영역의 통합은 성평등, 기후 행동, 환경보전 등 여러 부처 업무에서 특정 교차쟁점을 주류화함으로써도 가능하다(Candel and Biesbroek, 2016⁸³⁾; Shawoo *et al.*, 2022).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서로 다른 차원 간의 균형을 맞추고 하나의 SDG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다른 목표의 진전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OECD, 2018; OECD, 2023).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성평등 정책이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이 주류화된 사례가 있다. 탄소중립, 기후예산 역시 그러한 형태로 접근한다.
- 각 부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부문의 맥락에서 교차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통합된 개발 경로를 촉진하기 위한 교차적 쟁점의 통합은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

81) OECD. (2018).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8: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Paris.

82) Ansell, C., & Gash, A. (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83) Candel, J. J. L., & Biesbroek, R. (2016). Toward a processual understanding of policy integration. *Policy Sciences*, 49(3), 211-231.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서도 인지도가 낮을 수 있는 교차적 쟁점에 관한 관심을 끌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개발 정책 및 계획에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한(cross-cutting) 쟁점들은 부서의 전체 또는 일부 특정 목표나 수단에 걸쳐 부서의 중요한 정책 프레임에 통합하거나, 부서의 여러 부서 내에서 독립적인 목표로 인식하여 통합할 수 있다(Candel & Biesbroek, 2016).⁸⁴⁾ 이 경우 전담 부서와 실행 지침을 만들고, 교차적 쟁점 전문가를 늘리는 것은 부서 전체의 정책 설계와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권한, 자원, 인센티브 및 책임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만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배정, 자원 배분에서 이러한 교차 쟁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정책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4) 제4모형: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의 핵심 국정가치와 과제가 되면, 개발계획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럴 때, 규제 영향평가는 정책의 예상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파악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내재된 상쇄(tradeoff) 안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Mbanda and Fourie, 2020; OECD, 2018; OECD, 2023). 사회적 문제를 가장 잘 규제할 방법에 대한 정보 기반을 개선하고, 절충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제안된 규제의 예상 이익이 예상 비용을 초과하는지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Nilsson and Weitz, 2019; OECD, 2012a; OECD, 2020).
- 미국의 경우 환경의 질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각종 개발 및 규제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제 영향평가는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찾고 정책을 SDGs와 같은 전략적 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로 활용된다(OECD, 2021).⁸⁵⁾

84) *Ibid.*, p. 217.

85)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Paris.

1. K-SDGs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

가.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 조사

-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SDGs를 조사하여 분석 틀로 사용했다.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담고 있으며, 비전,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장기 행정계획을 기반으로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연관성을 분석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정해놓았고, 그 수는 198개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575개(2024.12. 기준, 헌법기관 포함) 중,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는 103개로 나타났다.

[표 4]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성 높은 정부위원회

구분	위원회	소속	K-SDGs 연관 빈도수 (세부목표 및 지표)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30
2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17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16
4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14
5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12
6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12
7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11
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9

구분	위원회	소속	K-SDGs 연관 빈도수 (세부목표 및 지표)
9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9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	8
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7
1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7
1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대통령	6
14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6
15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6
16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6
17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6
18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5
19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5
2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5
21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5
22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5
2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림청	5
2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5
25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4
2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4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8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교육부	4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환경부	4
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3
31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3
32	국토정책위원회	국무총리	3
3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3
3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3
3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3
3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3
37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3
38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3
39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3
40	환경교육위원회	환경부	3
4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	환경부	3
42	산림정책협의회	산림청	3
43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2
44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국무총리	2

구분	위원회	소속	K-SDGs 연관 빈도수 (세부목표 및 지표)
45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2
4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2
47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무총리	2
48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	2
49	중앙수산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2
50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2
51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환경부	2
52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2
53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2
54	공원위원회	환경부	2
5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2
56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57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법무부	2
5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2
59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2
60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2
6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
62	감염병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2
63	무형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2
64	문화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2
65	자연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2
66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부	2
67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1
68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1
6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1
70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1
71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총리	1
72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국무총리	1
73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1
74	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총리	1
75	수소경제위원회	국무총리	1
76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무총리	1
77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국무총리	1
78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국무총리	1
79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부	1
80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육부	1

구분	위원회	소속	K-SDGs 연관 빈도수 (세부목표 및 지표)
81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교육부	1
8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1
83	국가통계위원회	기획재정부	1
84	국가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85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86	공공외교위원회	외교부	1
87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
88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1
89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1
90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행정안전부	1
9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교육부	1
9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교육부	1
93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교육부	1
9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
95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1
96	지방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
97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해양수산부	1
98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1
99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1
1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1
10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부	1
102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산림청	1
103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우주항공청	1

나. K-SDGs와 연관 빈도가 더 높은 정부위원회 분류

- 103개의 정부위원회 중, K-SDGs 지표에 대한 연관 빈도가 높은 상위 11개 정부위원회를 분류했다.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정부위원회는 30개가 연관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였고, 이어 양성평등위원회(17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6개), 사회보장위원회(14개), 국가물관리위원회(12개) 등이 뒤를 이음.
 - 정부위원회 중, K-SDGs 지표와 5개 이상의 연관 빈도를 갖는 정부위원회는 24개이며, 상위 11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표 5]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빈도(지표)가 가장 높은 11대 위원회

구분	정부위원회	소속	K-SDGs 연관빈도(지표)		관련 위원회(소관)
			연관 수(개)	비중(%)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30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 전력정책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위원회의(국무총리)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2	양성평등위원회	국무 총리	17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기획재정부)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여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성가족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청소년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16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4	사회보장위원회	국무 총리	14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5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12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6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12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구분	정부위원회	소속	K-SDGs 연관빈도(지표)		관련 위원회(소관)
			연관 수(개)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공원위원회(환경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7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11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 국가습지심의위원회(환경부)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9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 •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9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9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	8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보건복지부) •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합계			145	61.4 (145/236)	

- 연관성이 높은 11개 정부위원회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K-SDGs가 수립되던 당시의 시대 과제(탄소중립, 성평등, 저출산, 고령사회 등)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빈도수가 높게 나온 '사회보장, 물관리, 환경 정책, 생물 다양성, 농어업·농어촌, 교육, 국제 개발 등의 정부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 격차 해소,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지역소멸 및 고령화, 식량안보, 교육 불평등 해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등' 중요한 사회 의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상위에 속해 있는 정부위원회는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해당하는 주제(교육, 기후위기대응, 인권, 불평등 해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등)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특정 분야와 목표를 초월해서 다수의 영역에 영향을 주며 상호 연결된 주제
- K-SDGs 지표(236개)에 대한 상위 11개 위원회의 연관 비중(정도)은 61.4%를 차지했다.
 - 위원회별 관련 정부위원회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간 중첩 및 협력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음.

다. K-SDGs 17개 목표와 103개 정부위원회 연관성

- K-SDGs 17개 목표를 통해 103개 정부위원회의 분포를 살펴보면, 103개의 정부위원회가 모든 목표에 다양하게 연관된 걸 볼 수 있다.
 - 1번 목표(4개 세부목표와 9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6개
 - 2번 목표(5개 세부목표와 10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6개
 - 3번 목표(9개 세부목표와 20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8개
 - 4번 목표(10개 세부목표와 28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8개
 - 5번 목표(7개 세부목표와 14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7개
 - 6번 목표(6개 세부목표와 16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0개
 - 7번 목표(4개 세부목표와 7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4개
 - 8번 목표(6개 세부목표와 10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8개
 - 9번 목표(5개 세부목표와 11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4개
 - 10번 목표(5개 세부목표와 11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8개
 - 11번 목표(7개 세부목표와 17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8개
 - 12번 목표(11개 세부목표와 21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6개
 - 13번 목표(4개 세부목표와 7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5개
 - 14번 목표(9개 세부목표와 13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0개
 - 15번 목표(7개 세부목표와 15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6개
 - 16번 목표(13개 세부목표와 18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11개
 - 17번 목표(7개 세부목표와 10개 지표)와 연관된 정부위원회: 4개
- K-SDGs 17개 목표와 103개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위원회 연관성

목표	세부목표 수(개)	지표 수 (개)	관련 정부위원회	
			수(개)	명칭(대통령-국무총리-부처 순)
G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4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목표	세부목표 수(개)	지표 수 (개)	관련 정부위원회	
			수(개)	명칭(대통령-국무총리-부처 순)
G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5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G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9	2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 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 감염병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환경부)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 국가교통위원회(국도교통부)
G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0	2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 아동빈곤예방위원회(국무총리) • 유아교육보육위원회(국무총리)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교육부)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교육부)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 중앙교육정책심의회(교육부) • 교육시설정책위원회(교육부)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교육부) •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교육부) • 국가재정운용위원회(기획재정부) • 국가통계위원회(기획재정부)

목표	세부목표 수(개)	지표 수 (개)	관련 정부위원회	
			수(개)	명칭(대통령-국무총리-부처 순)
G5 (성평등 보장)	7	1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G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국가습지심의위원회(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G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4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G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6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고용정책심의회의(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G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5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국가우주위원회(대통령)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수소경제위원회의(국무총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국무총리) 국가산학협력위원회(국무총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우주항공청)

목표	세부목표 수(개)	지표 수 (개)	관련 정부위원회	
			수(개)	명칭(대통령-국무총리-부처 순)
G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5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국무총리) •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7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행정안전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환경부) • 공원위원회(환경부)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주거정책심의회위원회(국토교통부) •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 지방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 문화유산위원회의(국가유산청) •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청) • 무형유산위원회의(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국가유산청)
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1	2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 국가관광전략회의(국무총리)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 화학물질관리위원회(환경부) •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G13 (기후변화와 대응)	4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부) •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목표	세부목표 수(개)	지표 수 (개)	관련 정부위원회	
			수(개)	명칭(대통령-국무총리-부처 순)
G14 (해양생태계 보전)	9	1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양수산부) • 중앙수산조정위원회(해양수산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산부) • 국가습지심의위원회(환경부) • 국가연구개발특구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G15 (육상생태계 보전)	7	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 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 산림정책협의회(산림청)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산림청)
G16 (평화·정의·포용)	13	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 • 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 •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국무총리)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 정보공개위원회(행정안전부) •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법무부)
G17 (지구촌 협력 강화)	7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 공공외교위원회(외교부)

- 목표별 연관된 정부위원회 수는 대체로 K-SDGs 세부목표와 지표 수의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로 3번 목표는 지표가 20개이고 연관 정부위원회도 18개였음. 4번 목표는 지표 28개 연관 정부위원회 18개, 11번 목표는 지표 17개 연관 정부위원회 18개였음.

2. 11개 정부위원회 심층 분석

가. 분석 대상 11개 정부위원회 선정

-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연관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낮은 정부위원회 중에서도 K-SDGs의 4대 전략(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과 정부위원회별 소속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정부위원회 11개를 다시 목록화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포함하여 12개를 심층 분석하였다.

[표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위원회

구분	K-SDGs 4대 전략			
	사람(6개 목표)	번영(4개 목표)	환경(5개 목표)	평화·협력(2개 목표)
대통령 소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양성평등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앙부처 소속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11개 정부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다.
 - 11개 정부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정부위원회를 심층 분석함.
 - 연관성의 등급기준은 빈도수 20개 이상(1등급), 15~19개(2등급), 10~14개(3등급), 5개~9개(4등급), 4개 미만(5등급)으로 정의.
 - 연관성이 있는 총 103개 위원회 기준 1등급(1개), 2등급(2개), 3등급(4개), 4등급(17개), 5등급(79개)으로 나타남.

[표 8]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위원회의 등급 분포

위원회명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K-SDGs 4대 전략	소속
	빈도수(개)	연관성(등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0	1	환경	대통령
양성평등위원회	17	2	사람	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6	2	사람	대통령

위원회명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K-SDGs 4대 전략	소속
	빈도수(개)	연관성(등급)		
사회보장위원회	14	3	사람	국무총리
국가물관리위원회	12	3	환경	대통령
중앙환경정책위원회	12	3	환경	환경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9	4	번영	대통령
평생교육진흥위원회	9	4	사람	교육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	4	평화/협력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7	4	사람	국무총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	5	번영	대통령

나. 12개 정부위원회 심층분석 주요사항

1) 국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11개) 비교표

[표 9] 12개 정부위원회 요약 비교표

주요항목	국가 지속위	탄핵위	양성 평등위	저출산·고령위	사회 보장위	국가물관리위	중앙환경 정책위	농어업·농어촌위	평생교육 진흥위	국제개발 협력위	아동정책 조정위	경제사회 노동위	
소속 (주관)	대통령 (국무조정실)	대통령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대통령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대통령 (농축산부)	교육부 (교육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대통령 (고용노동부)	
성격	자문,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심의	심의, 의결	심의	자문	
위원구성 (공무원/민간)	55명 (12명/43명)	52명 (22명/30명)	25명 (15명/10명)	24명 (9명/15명)	구성 중 (15명/00)	38명 (10명/28명)	150명 (1명/149명)	30명 (5명/24명)	20명 (10명/10명)	29명 (15명/14명)	25명 (10명/15명)	17명 (2명/14명)	
분과	5개 지속가능발전 전략전문, 포용적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대응, 이해관계자협력	5개 총괄기획,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 적응, 녹색성장·국제 협력	3개 실무,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 참여	4개 운영, 일생돌봄, 백세사회, 미래전략	7개 실무, 전문(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 데이터, 제도통합)	3개 계획, 물분쟁조정, 정책	7개 환경정책,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 보건화학/생활환경	7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특위)미래산림, 미래수산, 농업세계개선, 바이오경제	1개 평생교육실무 조정	3개 국제개발협력, 실무, 평가	1개 아동정책실무	8개 운영, 의제개발조정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	
K-SDGs 세부목표 지표 연관	빈도 (개)	-	30	17	16	14	12	12	9	9	8	7	3
	연관 정도 (등급)	-	(1)	(2)	(3)	(3)	(4)	(4)	(5)				

▪ 연관 정도 등급기준 : 빈도수 20개 이상(1등급), 15~19개(2등급), 10~14개(3등급), 5개~9개(4등급), 4개 미만(5등급)
 ▪ 연관성이 있는 총 103개 위원회 기준 : 1등급(1개), 2등급(2개), 3등급(4개), 4등급(17개), 5등급(79개)

주요항목	국가 지속위	탄녹위	양성 평등위	저출산· 고령위	사회 보장위	국가물 관리위	중앙환경 정책위	농어업· 농어촌위	평생교육 진흥위	국제개발 협력위	아동정책 조정위	경제사회 노동위
위원회 운영인력*	추진단 (10명) 3개팀	사무처 (58명) 4개국, 2개관, 8개과, 6개팀	사무국 (없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사무국 (59명) 3개국, 11개과	사무국 (38명) 3개과	지원단 (58명) 4개팀	사무국 (없음)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녹색환경정책과	사무국 (29명) 6개팀	사무국 (없음) 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 정책관 평생직업교육 기획과	국제개발 협력본부 (35명) 2개국, 6개과	사무국 (없음)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사무처 (40명) 1개국, 3개실, 2개과
2024년 예산편성 (천원)	729,000	5,165,000	0	10,497,000	3,265,000	4,511,000	2,002	3,388,000	4,500	2,972,000	0	3,530,000
2025년 예산편성 (천원)	628,000	5,049,000	0	- (미공개)	- (미공개)	4,253,000	0	3,447,000	4,500	5,396,000	0	3,905,000
2024년 회의실적 (소위원회 운영 포함)	6	32 (2024.9. 기준)	4	12	42	7 (2024.6. 기준)	64	38	1	9 (2024.9. 기준)	2	119

* 파견인력 포함.

2) 설립 및 소속

- 12개 정부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국정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위원회임.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등은 정책목표 실행과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위원회임.
 - 국가물관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담보하는 위원회임.
- 소속(대통령, 국무총리, 부처) 소속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
 -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정철학, 패러다임의 전환을 동반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강한 추동력이 필요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다부처와 연계하는 성격이 있음.
 -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는 대체로 다부처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함.
 - 부처에 소속된 위원회는 대체로 해당 부처 소관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법적 절차로서 역할을 함.
-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이다.
 -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함.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음.
 -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있음.

3) 성격

- 12개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 부속기관으로서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 자문 위원회 중에도 의결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위원회는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와 유사한 자문·심의위원회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음.

4) 구성

- 정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설립 취지와 소속에 따라 달랐다. 대통령 소속은 결정 권한의 크기에 비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됐고, 부처 소속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의 자문만 하도록 구성됐다.
- 국가위원회의 위원구성 규모는 55명(공무원 12명, 민간위원 43명)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150명) 다음으로 많으며,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52명), 국가물관리위원회(38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30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29명), 양성평등위원회(25명), 아동정책조정위원회(25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4명), 평생교육진흥위원회(20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17명) 순이다.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민간위원의 비중을 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임.
- 정부위원회별 구성된 분과의 분야를 살펴볼 때,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 간 중첩을 볼 수 있다.
 -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 전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는 11개 정부위원회 전부와 분야가 중첩할 수 있음.
 - 경제, 환경 분야에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중첩할 수 있음.
 - 경제, 사회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첩할 수 있음.
 -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중첩할 수 있음.

5) 예산·회의실적·운영인력

- 12개 정부위원회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양성평등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위원회의 예산은 12개 정부위원회 중 8번째임.
- 12개 정부위원회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실적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위원회의 회의실적은 정부위원회 중 9번째임.
 - 정부위원회별 회의안건을 살펴보면, 주제가 연관된 정부위원회 간 상호 협력이나 협업의 현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 다만 이는 업무 소관의 책임 있는 주체가 정부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으로 보임.
- 사무국을 운영하는 위원회는 8개로 국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주관부처 내 담당자가 있는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으로 사무국(1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국을 운영하는 정부위원회 중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59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58명), 국가물관리위원회(58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40명), 사회보장위원회(38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35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9명)에 이어 가장 작은 규모임
- 위원회 사무국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정부위원회의 최근 예산과 운영인력, 회의 횟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무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저출산·고령사회위, 경제사회노동위 등)는 회의실적도 많았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9회 회의를 개최함). 그러나 별도 사무국과 예산이 없는 경우(양성평등위, 아동정책조정위, 평생교육진흥위)는 회의 개최 횟수가 1~4회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6) 정부위원회와 K-SDGs 간 연관성

- 11개 정부위원회는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연관이 높은 정부위원회로서 선정 과정에서 K-SDGs와 관련성을 확인했다. 해당 분석에 기반하여 K-SDGs 17개 목표 및 4대 전략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와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G2, G7, G9, G11, G12, G13에 연관되며 번영, 환경을 주로 다뤘음.
 - 양성평등위원회는 G4, G5, G8, G16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 평화/협력 분야를 주로 다뤘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G1, G3, G4, G5에 연관되며 사람을 주로 다뤘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G1, G2, G10에 연관되며 사람을 주로 다뤘음.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G6에 연관되며 환경을 주로 다뤘음.
 -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G3, G9, G11, G12, G15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 환경을 주로 다뤘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G2, G6, G14에 연관되며 번영, 환경을 주로 다뤘음.
 -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G4에 연관되며 사람 분야를 주로 다뤘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G14, G16, G17에 연관되며 환경, 평화/협력을 주로 다뤘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G3, G4, G16에 연관되며 사람, 평화/협력을 주로 다뤘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G8, G10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을 주로 다뤘음.

[표 10] 정부위원회와 K-SDGs 간 연관성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회 수
G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2
G2(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3
G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G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4
G5(성평등 보장)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
G6(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
G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G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G9(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2
G10(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사회보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2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회 수
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2
G13(기후변화와 대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G14(해양생태계 보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
G15(육상생태계 보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1
G16(평화·정의·포용)	양성평등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G17(지구촌 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 11개 정부위원회별 '운영 목적, 주요 심의·자문 사항,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시, 11개 정부위원회는 국가위원회 및 타 위원회와 중첩의 발생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표 11] 예상되는 정부위원회의 중첩

정부위원회	위원회 핵심 내용	연관 정부위원회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정책 심의 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2, G7, G9, G11, G12, G1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가환경종합계획(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품종 개발 등)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4, G5, G8, G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생애 전반성·재생산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정책(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 G3, G4, G5)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빈곤과 취약계층 실질적 보장, 회복력 강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계획(성·재생산 건강 증진 도모)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주요 시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 G2, G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빈곤층과 취약계층 실질적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약자보호(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위원회	위원회 핵심 내용	연관 정부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중요사항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농어촌지역 안전한 식수 보급)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물·상하수도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주요 환경관련 정책·계획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3, G9, G11, G12, G15)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본계획(자원순환 부문 등)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하천유역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2, G6, G1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기후위기에 응 품종개발 등)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정책 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계획·전략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조정 및 심사·의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16, G1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 정책 수립 및 법 부처 차원의 주요 아동 정책 심의·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3, G4, G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 사회적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등 협의,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도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기본전략(G8, G10)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계획(성별임금격차 개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강화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

3. 네트워크 분석

가.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1) 배경

-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대상(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수단이다. 복잡한 관계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관계의 설명을 위해 노드 사이의 방향성의 유무와 가중치를 통해 상호성, 더 나아가 관계망 전체의 특성을 파악해 낸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를 사람이나 조직으로 놓고, 이들 간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인한다.
-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학, 언론학, 정치학, 교육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문헌정보학에서는 저자 및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저 네트워크, 지식지도 등의 다양한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분석하였으며, 경영학에서는 업무성과나 혁신,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창의성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컨설팅 분야에서는 조직의 진단과 처방의 도구로 발전하였다.
- 2024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사회 정책 분야 68개 정부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⁸⁶⁾ 중장기 계획 간의 위계관계,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을 측정하고, 커뮤니티 탐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결중심성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이며, 매개중심성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탐지 결과 30개 커뮤니티로 분류되며, 고용, 보건, 사회보장, 인구, 주거 커뮤니티가 주요집단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불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계획 간 중복 및 유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중장기 계획 간 조정을 위해 통합하고 조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역할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 본 연구는 17개 SDGs 목표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복 및 유사성 문제를 협력체계와 역할 정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복성, 유사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86) 이채정(2024)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분석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13호.

2) 메커니즘

-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와 링크가 기본 요소인데, 노드는 개체를 의미하고, 사람, 조직 등 다양한 개체를 대입할 수 있다. 각 노드의 속성을 데이터로 입력하게 된다. 링크는 노드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연관 관계를 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입력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갖게 혹은 방향성을 갖지 않은 채로 대입한다.
-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대개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1-mode로 분석하지만,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i, j라는 책을 구매했고, B라는 사람은 i를 구매하지 않고, j를 구매했을 때, A와 B 사이에는 A, B, i, j에 대해 (1,1)(0,1)이라는 행렬 값을 통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수준의 노드가 섞여 있는 경우를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2-mode 자료가 되며, 책 사이의 관계는 준네트워크(quasi network)라 부른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하나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

	i	j
A	1	1
B	0	1

- 최근에는 행위자를 개인과 조직,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 구성단위로 놓고 분석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양자적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예를 들어, A라는 축구팀의 승률은 행위자의 속성에 속하겠지만, B라는 축구팀과의 승률은 둘의 관계 속에서 팀 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관계 데이터가 된다. A팀이 60%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B팀은 55%의 승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A팀이 B팀에게는 40%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A팀과 B팀의 역학관계에서는 B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관계적 특성을 통해, 노드 간의 관계에서 유사성을 분석하거나, 사회관계 유형을 분석하거나, 상호작용의 연결 관계,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관계망의 맵핑을 통해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위원회의 중첩성을 파악하는 데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주요 분석 방법

-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으로서 중심성(centrality analysis) 분석을 측정하는데,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이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는지를 몇 개의 측정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 **연결중심성:** 한 노드가 여러 개의 링크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의 개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임.

- **인접(근접)중심성:**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경로 거리의 합을 가지고도 중심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라고 함. 인접 중심성이 높으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와의 빠른 상호작용이 가능함.
 - **매개중심성:** 여러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기 위해 특정한 노드를 많이 거쳐 간다면 그 특정 노드는 매개로서 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런 경우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라고 하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개체는 정보의 흐름에 관여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일관성에 영향.
- 연결중심성은 연결되는 선 자체가 많은 것으로, 시각화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국지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접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시각화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 간의 중첩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결 관계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룹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약하게 연결되는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나 창의적 활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약한 연결의 역설적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특정한 그룹의 연결 관계가 배제적으로 강하게 맺어져 있을수록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SDGs 목표 간의 연결은 17개 목표와 그 세부목표 간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7개 목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각 위원회를 조직 노드로 표시하고, 목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는 위원회 중에 다양한 목표와 연결되는, 즉 연결정도(degree) 중심으로 핵심 위원회를 측정하여 판별할 수 있다.
 - 관계망 전체 연결정도 중심성은 0~1 사이의 값으로 계산하고, 0의 값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연결정도를 가졌다는 것이고, 1에 근접할수록 불균등한 분포를 보인다는 의미다. 즉 특정한 노드에 연결정도가 높고, 다른 노드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 네트워크 분석에도 활용되는 군집 분석은 맵핑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두 노드의 이웃이 얼마나 겹치는지 평가해서 유사도를 나타낸다. 이때 군집계수를 계산해서 평가하게 된다. 특정 노드의 군집계수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이웃 중 서로 이웃(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계수 값이 커지고,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군집 분석 방법에서 모듈성을 높은 집단을 커뮤니티라고 하고, 모듈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탐지하는 루뱅(Louvain)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 Louvain 알고리즘은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는데, 1단계는 하나의 노드를 원래의 커뮤니티에서 빼내서 다른 인접한 커뮤니티에 재배치했을 때 모듈성이 커지게 되면 해당 노드를 새로 옮겨 놓은 커뮤니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각 노드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소속을 변경한다. 2단계는 각 커뮤니티를 단일 노드로 간주한 축소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최적화를 반복하여 그 내부에서 위치를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 파이톤과 같이 이미 Louvain 알고리즘을 시행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앱(Kumu)에 반영한 경우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앱을 활용하였다.

4) 데이터

-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 노드에 대한 속성 데이터는 문헌 자료와 인터뷰,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 각 데이터를 개별 위원회의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관계 데이터는 SDGs 세부목표와의 관계를 통해 관계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앞서 각 위원회에 대한 분석은 지표까지 고려하였으나, 본 분석은 지표는 제외하고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 속성 데이터는 위원회 수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과 권한(심의/자문)이 대표적인 데이터이고, 위원회 구성원 수, 회의빈도, 예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SDGs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심의 권한은 있지만, 관련 행정계획 심의가 2~3년에 한 번 발생하는 등 속성이 직접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본 분석의 목표는 중첩성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관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SDGs와 관련된 위원회는 103개이고, 이들이 관련된 세부목표들을 연결 지음으로써 각 목표와 위원회의 관계망을 도식화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위원회 중심성 분석

- 위원회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세부목표와 연결된 숫자만큼 표시되어, 앞서 제시된 위원회별 세부목표 연결성과 일치한다. 연결망의 정보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세부목표를 통한 매개중심성이 참고가 될 수 있어서 다음 표에 실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정도, 즉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접중심성은 타 위원회, 혹은 주요 목표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상호작용이 빠른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각 위원회의 연결중심성을 5 이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SDGs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원회로 보인다. 이 위원회 중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만 부처(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성이 높지만, 하위단위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가환경정책 중장기 전략

등 핵심 정책들을 심의하는 조직이며, 다수의 위원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므로 협력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앞서 나열한 핵심 위원회에 이어 위원회 규모, 성격, 활동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위원회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도를 추가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수준의 위원회로서 규모와 성격, 활동 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고려함이 합당하다.

[표 12] 위원회 중심성 분석 결과

위원회명	인접성	연계 정도	위원회 수준	가중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0.0902256	21	3	5
중앙환경정책위원회	0.0726817	15	1	3
사회보장위원회	0.0463659	12	3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0463659	10	2	4
양성평등위원회	0.0463659	9	2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0.0388471	7	3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0363409	10	3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0.0357143	7	2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0.0281955	5	1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0275689	4	2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	0.0244361	4	3	1
국가교통위원회	0.0225564	4	1	1
해양수산발전위원회	0.0219298	5	1	1
국가물관리위원회	0.0219298	5	3	3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0.0213033	5	2	2
고용정책심의회	0.0213033	4	1	1
에너지위원회	0.0213033	4	1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0.0206767	4	2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0.0206767	3	2	1

* 중심성을 기준으로 나열함. 위원회 수준 1, 2, 3: 부처 소속,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위원회.
비중의 기준은 위원회 규모와 활동성(회의 개최 수), 예산에 따른 구분임.

2) 목표 중심성 분석

- K-SDGs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은 세부목표와 연결되는 K-SDGs는 16번 목표이다. 그러나 앞서 K-SDGs 분석에서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3번, 4번, 11번 목표가 18

개 위원회와 연결되고, 9번 목표가 14개 위원회, 16번 목표는 11개 위원회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지표가 많고 다양한 위원회와 연결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부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반면, 소수의 위원회로 연결된다면, 그 목표는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에 국한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즉 세부목표가 많은 위원회와 연결되면 범분야 이슈를 다룰 확률이 높다. 특히 사회분야로서 건강과 복지, 교육은 범위 자체가 넓고, 양질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주체가 있다. 경제분야 역시 그런 차원에서 기술발전에도 다양한 영역의 연결이 필요하다. 반면 환경분야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집단이 참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9번 목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인프라와 기술력 등과 관련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범분야.
 - 16번 목표는 민주주의, 투명성, 정보화, 안전,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범죄자 피해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분야.
 - 6번 목표와 7번 목표는 환경분야로 분류되기도 함. 물과 에너지라는 특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정책 중심의 목표이며, 참여대상이 다소 한정됨. 위원회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굵직한 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
- 목표는 위원회를 연결시키는 매개가 된다. 그런 의미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우선순위로 살펴보고,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함께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다. 핵심적인 세부목표 10개를 중심으로 이슈와 접근방법, 협력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세부목표 9-3, 기술역량 구축 및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 목표가 매개적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 목표로만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탄소중립(수소 포함) 기술, 과학기술 정책, 데이터 정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등 관련 위원회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목표이다. 이 외에도 9-2 목표 역시 중요한 매개적 목표인데, 소기업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과학기술 분야와 데이터, 소재부품장비경쟁력 등 관련 위원회의 협력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 분야에서 각각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보인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력보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소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루는 위원회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위원회가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자문의견을 넘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AI와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핵심이슈: AI와 기후위기
- 접근방법: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담론 및 선제적 이슈 정의
- 협력대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중심

● 세부목표 6-5는 통합적 수질관리 이행으로 국가 물관리 측면에서 여러 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한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산하 환경부처 소속의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탓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환경과 농업의 정책 조율만 이루어진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 목표이다. 다만 앞서 사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농업 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의 지향이 달라 갈등 요인이 큰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위원회의 참여보다는 갈등해소의 접근법이 필요한 목표이다.

- 핵심이슈: 4대강 생태유량, 보의 개방 여부, 녹조
- 접근방법: 갈등조정 (농업, 산업, 생태적 이용)
- 협력대상: 국가물관리위원회

● 세부목표 4-2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 보장인데, 아동빈곤, 유아교육 및 보육, 아동정책, 성평등, 국가재정운용 관련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교육부 산하 위원회 및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차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위원회가 있지만 정책조정이 수월한 목표로 보인다.

- 핵심이슈: 아동빈곤, 저출산 관련 보육(지원)정책
- 접근방법: 협력이 필요한 목표라기보다는 청책, 즉 정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접근이 타당해 보임.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공청회를 통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반영
- 협력대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 세부목표 3-1과 3-7은 만성질환 위험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공해피해 감소로서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이고, 규제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기반, 그리고 건강 및 질병에 관한 데이터 공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거나 여성가족부 소속으로서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협조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이슈: 환경오염과 건강한 삶 (자연기반해법 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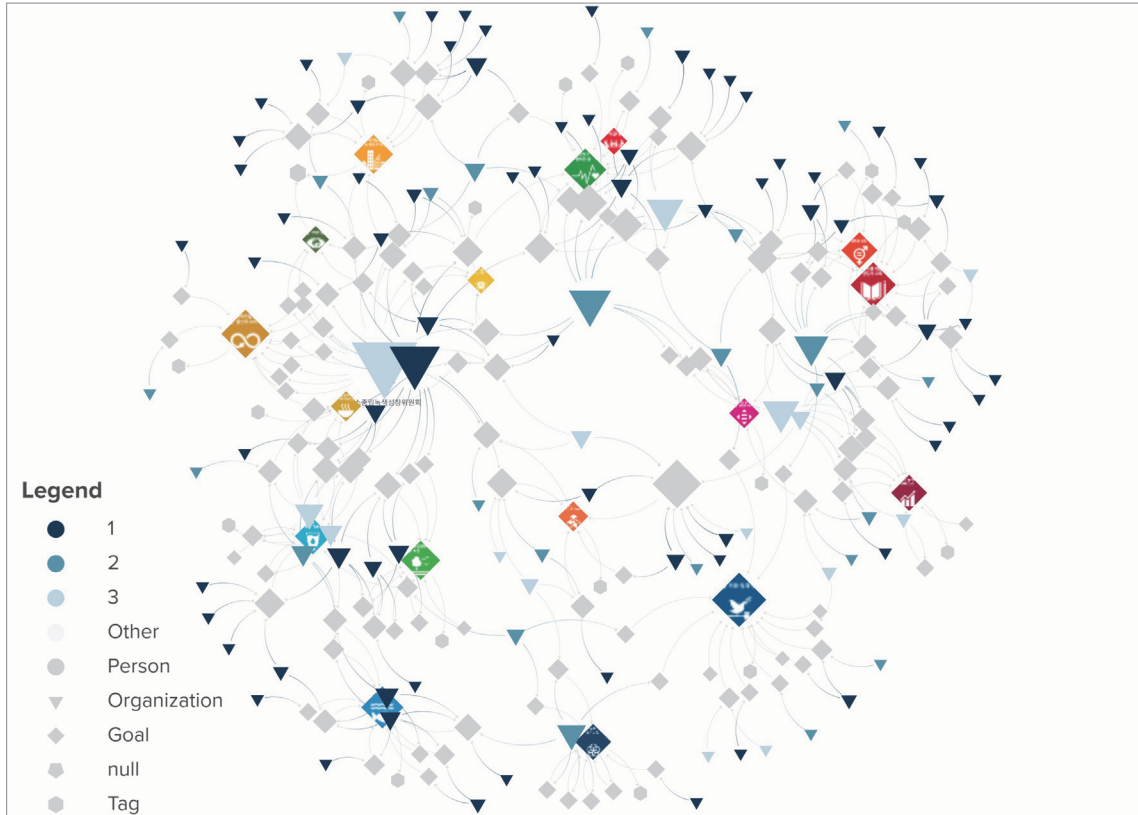
- 접근방법: 만성질환과 공해 피해를 호소하지만, 보건복지분야에서 환경개선 정책에 영향을 주기 어려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들이 보건복지와 환경 분야 양쪽에 참여함으로써 가교역할
 - 협력대상: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 세부목표 11-6은 도시환경영향감소 목표인데, 미세먼지와 폐기물에 연관된 목표로 환경부 및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협력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의 정확한 이행에 기달 수밖에 없다.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 핵심이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 접근방법: 전문가 의견수렴
 - 협력대상: 미세먼지특별위원회
- 세부목표 1-2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최소화로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장을 달성하는 목표인데, 사회보장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고용보험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복지예산과 기준에 따라 목표 달성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핵심이슈: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건강보험, 연금)
 - 접근방법: 세대 간의 대화, 국민적 소통 기회, 공론장을 통한 인식 제고
 - 협력대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끝으로, 저출생극복과 고령화 대비 목표인 세부목표 3-8이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 면에서 중요한 목표로 보인다.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다루는 목표인 만큼 관련된 위원회도 다양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 복잡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행복경제, 육아와 보육, 평생교육과 의료지원 정책 등이 조화롭게 상호 협력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및 일자리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위원회 분석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위원회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핵심이슈: 고령화, 인구감소
 - 접근방법: 균형발전,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범분야 통합적 계획 수립에 하나의 주체로서 국가위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함. 평생교육, 커뮤니티, 지방균형발전 분야별 접근
 - 협력대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표 13] 세부목표 중심성 분석 결과

세부목표명	매개중심성	인접중심성	연계중심성
9-3. 기술역량 구축 및 고도화된 기술상용화	0.0001107	0.0056391	12
6-5. 통합적 수질관리 이행	0.0000810	0.0056391	6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장	0.0000729	0.0056391	6
3-1. 만성질환위험관리, 건강보장 확대	0.0000688	0.0056391	6
3-7. 공해 피해 감소	0.0000594	0.0056391	6
11-6. 도시 환경영향 감소	0.0000567	0.0075188	5
11-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0.0000567	0.0075188	5
9-2. 소규모 산업체 금융서비스 접근성	0.0000567	0.0056391	6
10-3. 차별대우 철폐 및 공평한 기회	0.0000526	0.0056391	5
1-2. 사회보장사각지대 최소화, 취약계층실질적 보장 달성	0.0000505	0.0056391	8
10-5. 안정적인 이주정책 이행	0.0000486	0.0056391	4
11-3. 도시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0.0000459	0.0075188	5
11-5. 재난피해 감소 및 위기관리	0.0000459	0.0075188	5
3-8. 저출생 극복과 고령화 대비	0.0000459	0.0056391	6
7-2.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	0.0000410	0.0056391	5
8-5. 청년고용	0.0000405	0.0056391	5
4-3. 고등교육 기회 보장	0.0000405	0.0056391	4
4-8. 교육시설 및 포용적 학습환경	0.0000405	0.0056391	4
4-7. 지속가능발전교육	0.0000397	0.0056391	5
11-2. 저렴한 교통시스템구축 및 대중교통확대	0.0000378	0.0075188	4
9-5. 친환경 산업활동과 기술혁신	0.0000378	0.0056391	5
13-1.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적응능력 강화	0.0000364	0.0056391	4
12-4. 화학물질 친환경관리	0.0000364	0.0056391	4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접근성	0.0000351	0.0056391	4
5-5. 출생관련 건강 및 권리접근 보편성 보장	0.0000351	0.0056391	4
2-4. 유전적 다양성 유지	0.0000337	0.0056391	5
1-1. 빈곤율 감소	0.0000326	0.0056391	7
11-1. 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보장	0.0000324	0.0075188	4
11-7. 안전한 공공녹지공간 접근성	0.0000324	0.0075188	4

3) 도식화

- 네트워크 분석은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도 17개 목표 및 119개 세부목표, 103개 관련 위원회를 앞서 제시한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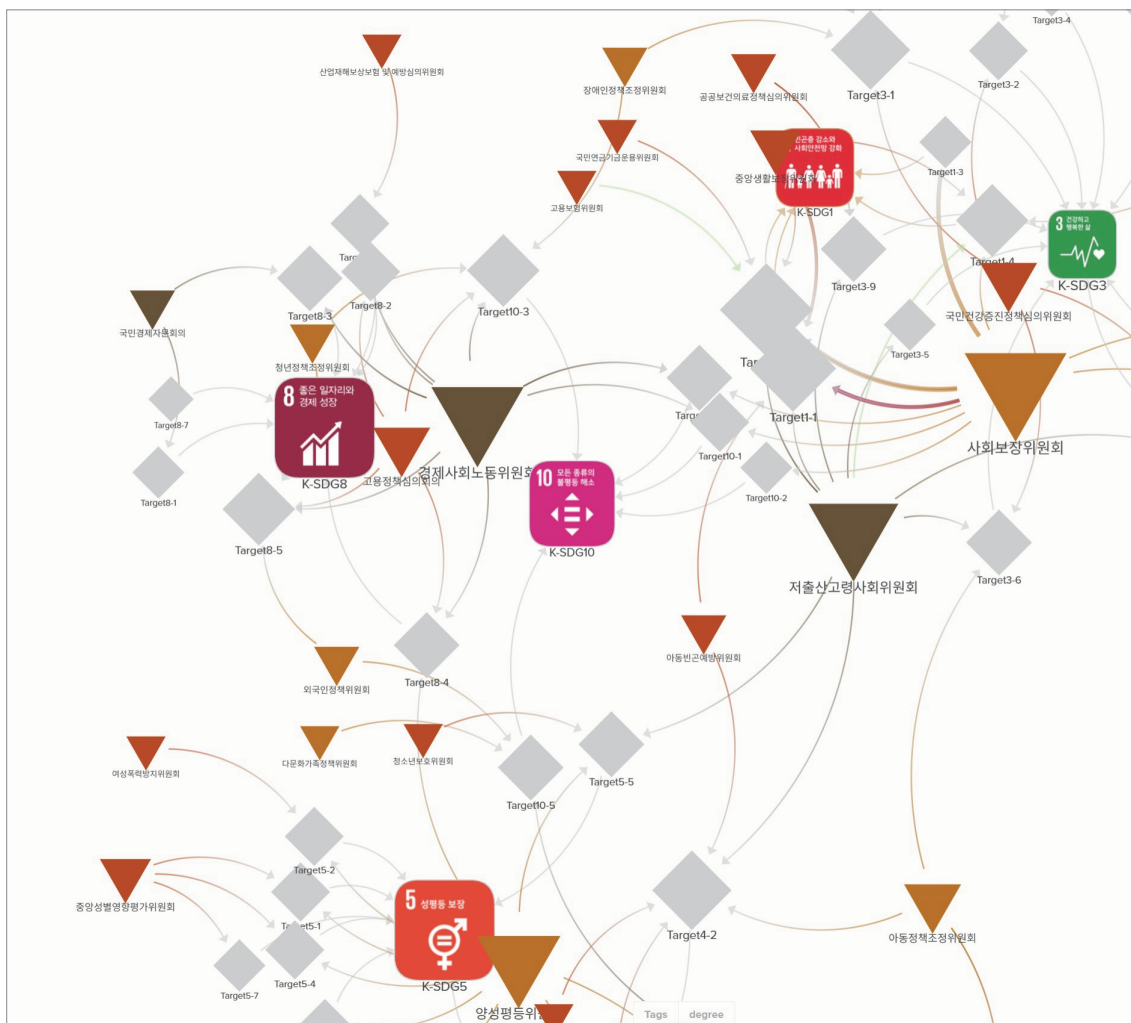


[그림 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위원회 도식화

- 17개 목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하였고, 세부목표는 마름모꼴, 위원회는 역삼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범례에 있듯이 위원회 중에서 짙은 파랑색(범례1)은 부처 소속 위원회이고, 가장 옅은 파랑색(범례3)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표현하였다. 그 사이 파랑색(범례2)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 네트워크 분석에서 국가위와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는데, 도식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SDG 12, 7, 13, 2, 6번 목표와 관련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15]. 나열된 목표와 연관된 위원회로는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주요 협의 대상이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책 가운데 지속가능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에너지 전환 부문과 산업,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적응 분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위원회 등 제시된 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해 각 부처 담당부서의 고위급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위원회 간 관심사를 나누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청한다.

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 국토정책위원회는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에 영향을 주는 데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에 관한 계획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토정책위원회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국정과제 비서관 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서 소통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 기타 위원회들도 기후변화 및 도시 공동체와 연관된 위원회들이지만, 실질적인 담당부처(국토부, 행안부, 환경부)가 달라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목표라는 점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 부처 소속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등이 관련되는데, 이 위원회들에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사전에 진행하여야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처 소속 위원회와의 협력과 교류보다는 홍보와 안내,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경제사회분야 위원회와 목표

- [그림 17]은 경제사회분야로서 일자리와 재분배와 관련된 목표와 위원회를 강조하고자 가져온 그림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행계획인데,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소득 기반이 중요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권리,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핵심 위원회이고, 본 연구에서도 이 두 위원회를 주목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 앞서 목표중심성 분석에서 9번 목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8번 목표와 9번 목표는 같은 경제분야 목표이지만 그 지향점이 매우 다르다. 9번이 글로벌 위험에 대처하는 미래먹거리 발굴이라면, 8번 목표는 공평한 성장을 위한 먹거리 나누기 목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의 주제를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9번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중요하고, 데이터정책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를 재분배하는 정책은 데이터 기반 이윤의 재분배를 다루는 위원회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고민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등에서 8번과 10번 목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국가위원회가 범분야 이슈를 발굴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혁신의 방향은 정치적 소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적인 의견이 중요하다. 경제성장과 미래 혁신, 재분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인 전망과 심리적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KDI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과의 미래연구가 중요해 보인다. 다중이해관계자보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전문가 위원회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제언

-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목표나 특정 위원회의 중심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간 중첩 혹은 근접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즉 제언으로서 중첩되는 요소를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하거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해법을 제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 위원회를 파악함으로써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소통의 채널을 통해 정례화된(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중장기 계획의 검토에서 자문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소속이지만,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장(경제), 환경 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위원 구성부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위원회이다. 정부의 핵발전에 대한 찬반 기조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질 정도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위원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위원회의 의견에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시장, 에너지 수급과 계통 등 에너지 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은 점도 있겠지만, 정부 간 혹은 위원회 간 충돌을 피하려는 위원회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정책 조율과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태생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성장과 분배라는 대립적 정책 구조에서 태어났고, 과거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과 같은 역할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평등과 재분배의 기후 정의라는 관점에서 불평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취지와 목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분석은 위원회 간 중첩과 목표별 세분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환경 분야의 중첩성과 대비되게 사회경제 분야는 세부목표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가 말하듯 현재와 미래 세대의 균형 차원에서 발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과거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슈와 업무가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분야는 90년대부터 이미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발달해 왔지만, 에너지분야는 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인 목표였다가 기후생태 위기로 인해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목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세부목표들이 새로 도입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건강을 생각하되, 그것이 개인의 위생이 아닌 마을과 도시의 대기질, 감염병 대응 등 지금의 글로벌 위기와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SDGs가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던 에너지위원회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 협력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향후 많은 위원회가 이러한 상호작용과 역할 재정립으로 변화해 나가겠지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정책 정합성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환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앞서 목표중심성 분석에서 제시한 핵심이슈와 접근방법, 협력대상(위원회)을 고려하여 담당자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 분야별 위원회의 중장기 계획, 지속가능성 자문에 더해 전문가들의 동료검토(peer review)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종합 분석

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이 국가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중 K-SDGs와 연관성이 있는 정부위원회는 103개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목표 및 지표와 5개 이상의 연관성을 갖는 정부위원회는 24개, 8개 이상인 정부위원회는 10개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연관성이 정부위원회 간 중첩이나 협업에 관한 사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회 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를 살펴보면, 현재 시대적 상황이 K-SDGs에 반영된 걸 볼 수 있다.
 - 연관 빈도가 높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이란 시대 과제를 위해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련 소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어지는 양성평등위원회 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음.
 - 이외 사회보장, 물관리, 환경정책, 생물다양성, 농어업·농어촌, 교육, 국제개발 등의 정부위원회는 '복지사각 지대, 격차 해소,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지역소멸 및 고령화, 식량안보, 교육 불평등 해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등' 중요한 사회 의제와 연관되어 있음.
 -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들이 다양한 사회 의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정부위원회 간 상호 원활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시대적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들은 교육, 기후위기 대응, 인권, 불평등 해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등과 같은 교차 쟁점(cross-cutting issues)에 해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진 불가분성(SDGs 17개 목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이를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을 정부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확인하는 지점임.
 - 국가위원회가 정부위원회 간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2022) 이전에는 K-SDGs에 직접 관여해 온 정부위원회가 국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뿐이었다. 이는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당시는 명칭이 '기본전략'이 아님)에 대한 최종심의 권한이 녹색성장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 현재는 절차적으로 국가위원회만 K-SDGs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심의를 하고 있어, K-SDGs 관

런 다른 정부위원회의 역할은 크지 않음.

-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와 관련 정부위원회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위원회 간 중첩으로 인한 협업·협력 수요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중첩은 국가위원회의 포괄범위 성격상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를 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특성을 볼 때,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중첩(업무 및 소관)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가짐.
 -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11개 정부위원회가 K-SDGs와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선정됐다는 점을 비롯해 각 정부위원회 주요 설립 취지, 운영 목적, 심의·자문 사항, 분과별 목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중첩 지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위원회 간 중첩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여러 정부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부위원회 간 상호 협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각지대도 없앨 수 있다.
 - 하지만 여러 정부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보장 등 각 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 간에 적극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요구될 수 있음.

다. 정부위원회 간 상생효과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국정 비전과 철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적 과제를 다부처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위원회 설립 취지와 소속(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에 맞게 정부위원회와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 국가위원회 외 11개 주요 정부위원회 간에도 정책 분야와 방향성 등에서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주제가 그만큼 시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위원회 간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중복으로만 보기보다는 시너지를 내기 위한 상호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
- 앞서 언급한 정부위원회 간 중첩 지점 관련, 상호소통 및 조정 역할을 국가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현재 국가위원회가 가진 권한은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슷한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치므로, 점차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라. 국가위원회의 지원기능 확충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발생하는 중첩 지점에 대해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를 하는 경우, 해당 정부위원회와 협의하여 초기단계에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검토기준)에 대한 소통과 협의 추진.
 - 또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서면 협의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위원회의 위원 등이 참여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할 필요도 있음.
 - 국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철학과 방향성을 토대로 검토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원활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포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부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K-SDGs 합동포럼을 운영해 관련 정부위원회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K-SDGs 17개 목표별 정책, 지표와 통계, 이해관계자 협력과 사회갈등 조정 등 다양한 영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17개 목표(K-SDGs)별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위원들이 국가위원회에도 참여하는 이중 멤버십을 형성하여 메타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및 부처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원활하게 총괄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사무처를 별도 운영하는 정부위원회에 비해 국가위원회의 사무국 및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현재 위상을 고려할 때, 운영 여건을 대폭 확대해야 함.

1. 개요

가. 목적·대상·방법

1)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이하 국가위원회)와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의 중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첩 해소 또는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 K-SDGs 이행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향후 타 위원회에 대한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 주요 과업인 '전문가 속의 공론장(연속 포럼)' 주요 방향 및 세부 기획안을 도출한다.

2) 대상 및 기간

- 국가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K-SDGs 및 분야별 관련 정책연구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중 최종 20명을 선별해 진행했다(아래 [표 14]).
 - 조사 대상은 본 연구보고서 III 장 1절 'K-SDGs와 정부위원회 간 연관성'에 제시된 12개 정부위원회에 직·간접적 참여 경험이 있거나, 위원회별 주요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30명을 1차 선별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기간은 2월 3주부터 3월 3주까지 진행했으며, 단계별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사전자문] 2월 18일 ~ 2월 20일(3일간)
 - [1차 조사] 2월 24일 ~ 3월 3일(8일간)
 - [2차 조사] 3월 7일 ~ 3월 14일(8일간)
 - [결과 분석] 3월 14일 ~ 3월 21일(8일간)

3) 방법

- 사전자문을 통해 연구진이 설계한 델파이 조사지 초안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후 1·2차 조사를 각각 8일간 실시했으며, 3월 중순 종합 분석을 진행했다.
 -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주요 의견 재확인 및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조사지 설계.
- 1·2차 본 조사는 대상자와 전화 협의 후 E-mail을 통한 서면조사로 진행했다.

[표 14] 델파이 조사 대상자

구분	성명	소속	주요 참여 위원회
1	강미나	국토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	고재경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3	권 울	대외경제연구원 촉탁 선임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4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5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6	김원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7	김종환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8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9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원장)	국가위원회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10	김홍철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11	노태호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국가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연구 자문위원
12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3	안인숙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14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15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16	이선경	청주교대 교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7	이성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
18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보건사회정책 전문가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19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국가물관리위원회(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20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 조사 경과 및 결과

가. 1차 조사

1) 개요

- 목적
 - 국가위원회와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중첩 확인
 -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중첩 확인
 - 위원회 간 중첩에 대응한 해소 또는 협력 방안 도출
 -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및 타 위원회에 대한 위상 제고 방안 도출
-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정부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K-SDGs 분야별 관련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
 - 기간 : 2025년 2월 24일 ~ 3월 3일(8일간)
- 방법
 - 사전 전화 협의 후 E-Mail 통한 서면조사 실시

2) 문항 구성

- 주요 내용에 따라 총 12개 문항을 Section 1.~3.(응답자 관점 분석/위원회 중첩 및 해소 방안/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으로 구성했다. 동의 여부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개방형 응답과 함께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세부 문항은 [부록] 참고
 - **Section 1. 응답자(전문가) 관점 분석 (4개 문항)**
 - 우리나라 K-SDGs 달성 수준
 -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K-SDGs 상위 3개와 선별 이유
 - 연구진 제시 12개 정부위원회 목록·순위 동의
 - 국가위원회 협력 필요한 정부위원회 선별 시 핵심 기준
 - **Section 2. 위원회 중첩 및 해소 방안 (5개 문항)**
 - 국가위원회-정부위원회 간 중첩 여부
 - 국가위원회-정부위원회 간 중첩 시 둘 중 역할 강화 주체
 - 중첩 사례로서 '법령·행정계획 사전지속가능성 검토/회신'에 대한 동의 여부
 - 정부위원회 간 '중첩' 동의 여부

- 위원회 간 '중첩' 정의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 (3개 문항)**

- 현재 국가위원회 업무 추진 여건(성격/직제/인력/예산) 적절성
- 향후 국가위원회 최우선 역할 및 이유
- 추가 의견 및 제안 사항

3)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전반적 추진 및 달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2.5 점(5점 만점)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핵심 이유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성이 낮고, 현재 K-SDGs 목표별 지표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K-SDGs'로 G13(기후변화와 대응)을 가장 많이 꼽았고, G1(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G10(불평등 해소), G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G9(산업성장과 혁신·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뒤를 이었다.
- 전문가들은 앞서 우선순위로 언급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업할 정부 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꼽았다. 위원회 선별 기준으로 (국가위원회-해당 정부위원회 간) '의제 연관성', '관련 목표 중복', '공통 접근방법'을 제시했으며, 이외 "정책상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의 관련 위원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연구진이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연관성 등을 분석해 제시한 'K-SDGs 관련 12개 주요 정부위원회' 목록(아래)에 대해 평균 3.7점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12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표 15]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1. 응답자(전문가) 관점 분석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Q1.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달성 수준	2.5	0.7	27.3	●
* 응답 평균 2.5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인식 부족 및 소극적인 정책 추진"을 꼽음 * "부처별 K-SDGs 달성을 위한 사업과 목표별 연계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 추진할 컨트롤 타워(ex. 국가위원회) 부재" 지적 * 목표 관련 "K-SDGs 달성도 차이(ex. 경제, 환경, 불평등 분야 미흡) 존재", "목표별 과제 적절성(기존 부처사업 탑재) 의문", "목표와 지표 간 낮은 연계성" 등 언급				

Q2. K-SDGs 17개 목표 중 정부가 우선 순위에서 두어야 할 목표 상위 3개	[목표별 빈도(회)]			
	G1: 7 G2: 1 G3: 3 G4: 2 G5: 3 G6: 0	G7: 5 G8: 4 G9: 5 G10: 6 G11: 1 G12: 4	G13: 14 G14: 0 G15: 1 G16: 3 G17: 0	●
* G13-G1-G10-G7-G9 순 * 선택 이유 : “사회적 인식 및 추진 동력 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한 목표”, “다른 목표 포괄하는 목표”, “중장기 관점하에 추진이 필요하거나, 기존 개발 중심 정책 추진 관성을 넘어야 하는 ‘도전적 목표’” 등 언급				

Q2-1. 국가위원회와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는 정부위원회 상위 3개	[위원회별 빈도(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3	지방시대위원회 : 1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9 사회보장위원회 :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5 양성평등위원회 :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 국가물관리위원회 :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1	국가재정운용위원회 : 1 국가인권위원회 : 1 국민경제자문회의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	
* 순위를 보면, Q2. 문항 응답 결과(K-SDGs 우선순위)와 맥락 유사 (빈도순 G 13_1_10_7_9)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량 보유, 사회/산업/환경 등 다양한 K-SDGs 및 유관 위원회와 연계성 높아 포괄적 협력 가능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 지속가능성의 근간인 인구문제를 다룸 3) 사회보장위원회: 사회정책 정책 전반을 조정 및 평가하며, 정부의 사회보장계획수립에 기여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생산-소비 핵심 5)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합해 내는 것이 필요 6)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자원순환-생활환경 연계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 산업 방향 결정 및 이를 토대로 국가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				

Q3. 12개 정부위원회 '목록' 동의 여부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3.7	0.8	21.7
* 응답 평균 3.7점("동의한다" 수준) * K-SDGs 세부 목표 및 지표 연관성을 기반으로 도출한 12개 위원회 목록에 대체로 동의하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역할이 충분히 담긴 것으로 평가 * 대체로 소속이 '국무총리' 이상으로 선별해 영향력, 실행력 높음. 다만 중앙환경정책위는 환경부 소속이라 범부처 역할 가능할지 의문 * 기타 의견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대신 대상이 넓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대체 : '경제산업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은 위원회 포함 필요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의 경우, 지속가능농정 정책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및 관련 정책 발굴 도모 필요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Q3-1. 12개 정부위원회 '순위' 동의 여부	3.2	0.8	25.1	●
	*응답 평균 3.2점("보통" 수준) *순위 동의 수준이 "보통"이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현 대비 "상향" 의견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K-SDGs 및 지표 연관성(빈도)에 따른 '양적'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해, 실제 정책의 시급성/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했다 보기 힘들. 따라서 '질적' 분석을 통해 위원회별 역할의 타당성과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순위 조정 필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균형 있는 K-SDGs 달성 가능 *기타 의견 : '아동정책위원회'는 실질적 활동이 거의 없는 조직으로 순위 포함 의문 : 위원회를 영역별로 설정한 뒤, 각 영역 대표 위원회(2~3개)를 선정해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Q4. 국가위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 선별 시 핵심 기준	*경제-사회-환경 균형과 조화를 고려할 때, 활동 시 상호 시너지 낼 수 있는 위원회 고려(ex. 의제 연관성, 관련 목표 중복, 공동 접근방법 등) *특정 분야를 고려할 경우, "주요 이슈"와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 "진전이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관 위원회 우선 선별 필요 *협력 실효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권한 보유 정도"(ex. 심의 의결 여부), "실행력"(ex. 의제 설정, 협의조정 역량, 예산)을 고려해 우선 선별 필요			●

-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업무 측면의 중첩 여부 동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3점으로 "보통"으로 답했다. 중첩 양상에 대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복지점'과 상호 시너지를 내는 '협력 지점' 두 측면을 함께 언급했다. 대표 사례로 K-SDGs와 관련 부처 주요 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모니터링' 과정 등을 제시했다. 응답 시 염두에 둔 정부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이었다.
- 특히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대표적 중첩 사례로 거론한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지속 가능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회신(feedback)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7점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위원회가 주관 부처에 사전검토 결과를 빠르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이 아니라 양자 간 실질적 논의를 위한 대면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검토 결과를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위원회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덧붙였다.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중첩 해소 및 K-SDGs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국가위원회 권한 및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실제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권고·조언)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평균 4.1점의 높은 응답이 나왔고, '정부위원회의 유관 K-SDGs 추진 역할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경우 평균 3.8점이 나왔다.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국가위원회 내 실무협의체 운영 시 각 정부위원

회 간사 참여’, ‘국가위원회 성격 격상(심의·의결)’, ‘국가위원회 사무국(지속가능발전추진단) 확대’ 등을 거론했다. 다만 “국가위원회가 정부위원회의 상위 조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한 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으로 거론됐다.

- ‘K-SDGs 특정 목표 또는 관련 사회문제를 두고 유관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업무 측면의 중첩 여부 동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평균 3.5점으로 “보통”으로 답했다. 중첩 양상에 대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복지점’과 상호 시너지 내는 ‘협력 지점’ 두 측면을 함께 염두에 두었으며, 응답자들은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의 문제”라는 데 평균 3.9점으로 “동의”했다(“관련 부처 간 조정 문제”라는 데 평균 4.0점으로 “동의”한 응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위원회 사이 중첩은 해당 이슈를 다루는 각 위원회 소관 부처끼리 대응할 문제이면서도, 부처 간 장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 각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 간 중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해선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중첩’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따라 ‘중복지점’과 ‘협력 지점’으로 구별해 각각 규정했다. 다만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복지점으로 응답했다라도 “위원회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을 함께 덧붙였다. 이를 종합할 때, 중첩은 “유사한 이슈(주제)에 대응해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소관 부처 또는 정부위원회 간 기능·역할의 중복이자 상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양면성을 가진 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6]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2. 위원회 중첩 및 해소 방안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3.3	1.0	28.9	
Q5. 국가위원회-정부위원회 간 중첩 동의 여부	*응답 평균 3.3점(“보통이다” 수준) *조사에서 ‘중첩’을 ‘상충’ 또는 ‘협력 지점’ 두 가지를 아우르는 의미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기능,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충’”으로 간주함 *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라 ‘중첩’에 대한 응답이 엇갈림. 중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4점 이상), 대체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염두에 둬 *동의 수준이 낮은 경우(2점 이하),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가 각각 고유 기능과 업무가 있다는 원칙론을 이유로 제시함. 이를 토대로 각자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Q5-1. 응답 시, 염두에 둔 위원회	[위원회별 응답 빈도(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7	사회보장위원회	: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3	사회적경제위원회	: 1
	국가물관리위원회	: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1

Q5-2. 국가위원회-정부 위원회 중첩 형태('기능' 측면)	* 중첩을 '기능' 측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 요청했으나, 대부분 '기능 측면의 중복이 있다'는 여부만 포괄적으로 응답함			●
Q5-3. 국가위원회-정부 위원회 중첩 형태('업무' 측면)	* 중첩을 '업무' 측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 요청했으나, 대부분 '업무 측면의 중복이 있다'는 여부만 포괄적으로 응답함 * 다만 앞서 Q5. 문항에서 중첩 수준을 높게 본 응답자들은 "K-SDGs와 분야별 주요 계획 간 연동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업무의 중복이 존재한다"고 확인함. 또 업무 중첩의 이유로 '유관 업무에 대한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우선순위 불 명확'을 제시하며, "상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리함			●
Q5-4. 국가위원회-정부 위원회 중첩 형태(기타)	* 기타 중첩 측면으로 '영역'을 제시함. 문맥상 같은 목표를 향하면서도 일종의 각기 다른 '분야' 간 협력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RE100+,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필요한 물과 에너지 조달을 위해 관련 위원회 간 업무분장 및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 거론됨. 물론 '영역'의 중첩은 '기능' 및 '업무' 측면 중첩과 겹치는 면이 있음			●
Q6. 중첩 발생 시, K-SDGs 효율적 이행 및 시너지 위 한 방안	* 국가위원회가 SDGs별 관련 정부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총괄하면서,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내는 주도적 역할 필요. 대표적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례협의회' 운영이 제시됨.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수적 * 기타 의견 : 국가위원회 내 실무협의체(실무위원회)에 개별 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인사 참여, 국가위원회의 성격 격상(심의 의결 등), 국가위원회 사무국 확대 등			●
Q6-1. 국가위원회 총괄 역할(권고/조언) 동의 여부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
	4.1	0.8	18.7	
* 응답 평균 4.1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대부분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권고/조언)에 동의함 * 일부 동의 수준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현재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낮게 평가함				
Q6-2. 정부위원회 역할 (유관 목표 추진_각론) 동 의 여부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
	3.8	1.0	25.8	
* 응답 평균 3.8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대부분 각 정부위원회 역할을 유관 K-SDGs 추진으로 인식함. 다만 동의 수준이 낮은 일부 위원은 정부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업무, 설립 목적이 K-SDGs와 연계성을 엄밀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리가 먼 업무도 있다고 언급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Q6-3. 국가위원회 총괄 역할(권고/조언) 강화 동 의 여부	4.2	0.7	17.5	●
	*응답 평균 4.2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함. 정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고, 위원회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합적 관점에 공감.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다만 국가위원회는 모든 위원회의 상위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총괄 기능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함께 제시 *동의 수준이 낮은 일부는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수직적 관계 우려", "국가위 원회의 집행력, 통제력 부재" 등 의견. 다만 이들 모두 Q.6-1. 문항에서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에 동의하고 있음			
Q7. 중첩 사례로서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통 보 및 회신(feedback)'에 대한 동의 여부	3.7	1.0	27.2	●
	*응답 평균 3.7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담당 부처를 넘어서 국가위원회의 사전 검토 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첩이 발생한다"는 데 동의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통보 및 회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빠른 회신', '실질적 논의 위한 협의회 개최(서면 아닌)', '상호 이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제안			
Q7-1. 사전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통보 방안 동의 여부: 현재처럼 '부처에만'	2.5	0.7	30.2	
	*응답 평균 2.5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당 부처 한 곳만 통보 시, 검토 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지고 K-SDGs 달성을 위한 주체 간 협업이 어렵다는 점"을 들음 *다만 '부동의' 응답자는 "관련 부처 공유", "타 위원회 공유",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 두 공유"의 세 갈래로 나뉨			
Q7-2. 사전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통보 방안 동의 여부 : 현재처럼 '부처 및 해당 정부위원회'	4.1	0.7	18.3	●
	*응답 평균 4.1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동의 이유로 "K-SDGs 달성 위한 유관 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확보" 를 언급. 다만 일부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통보에 대한 정부위원회의 수용성을 높이 면서도 정부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의, 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단 서를 담 *부동의 응답 위원 중 일부는 관련 정부위원회 또는 부처 둘 중 한 곳만 통보해야 한다 는 의견. 이는 '위원회에도 경우에 따라선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포함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Q7-3. 사전지속가능성 검토 과정 및 결과 공개 (ex. 홈페이지) 동의 여부	3.9	0.9	23.4	●
	* 응답 평균 3.9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대부분 동의 이유로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동의와 참여에 따른 이행력 확보" 등을 언급함 * '부동의', '보통' 응답자들은 "중복 의견 수렴 및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우려", "사안 따라 공개 여부와 수준 판단 필요", "필요시 관련자 공개" 등 신중 입장			
Q8. 개별 정부위원회 간 중첩(상충or협력) 동의 여부	3.5	1.0	27.8	●
	* 응답 평균 3.5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대부분 정부위원회 간 '상충' 또는 '협업' 지점 모두를 뜻하는 의미로 중첩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함 * 일부 '부동의', '보통' 응답자는 중첩을 '중복', '상충'으로만 인식해 낮은 점수를 부여함			
Q8-1. '관련 부처 간 조정 문제' 진단 동의	4.0	0.5	12.6	
Q8-2. '관련 위원회 간 조 정 문제' 진단 동의	3.3	0.9	27.3	
Q8-3. '관련 부처 및 위원 회 모두 문제' 진단 동의	3.9	0.9	23.6	
Q8-4. 정부위원회 간 중 첩 시, 국가위원회 역할	* 응답자 대부분 "정부위원회 간 중첩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총괄 기능 수행"이라는 데 공감.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와 파트너십(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 '지원', 우수분야 '격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Q9. 위원회 간 '중첩'의 정의	* 중첩에 대해 "유사한 이슈(주제)에 대응해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정부 부처 혹은 정부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자 상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봄 * 사회의 복잡성, 급격한 변화로 불가피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 다만 '부정적 의미'의 중첩(ex. 중복/상충)을 줄이기 위해, 국가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위원회 간 기능과 업무 조정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됨			●

- 'K-SDGs 달성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권고·조언)을 고려할 때, 현재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성격/직제/인력/예산 규모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은 평균 2.2점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문별 동의 수준을 보면 '국가위원회 기능(심의·자문) 적절성'에 대해 2.6점, '국가위원회의 예산 규모 적절성'에 대해 2.2점, '국가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국무총리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선 2.0점을 각각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K-SDG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중·장기 역할'로 '국내외 실정을 고려해 K-SDGs 재설정', '정부위원회와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구축', '부처별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기능 복원', '지역위원회 지원체계 마련', '국가위원회 역할 및 위상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우선(시급) 추진 과제'로 국가위원회의 총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위상(추진체계) 강화', '인력 확충(전문성)',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이밖에 '정부위원회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분야'이면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슈)로 전문가들은 '국가 미래 전망 및 과제 도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문별 산업 재편 전략 마련', '혐오·차별 반대 및 다양성 존중', '지방 소멸 대응' 등을 거론했다.

[표 17]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방안

Q10. 현재 국가위원회 업무 추진 여건 전반 적절성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차 문항 연계
	2.2	1.0	43.0	●
Q10-1. 현재 국가위원회 기능(심의/자문) 적절성	2.6	1.0	37.4	
	*Q10. 응답 평균 2.2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Q10-1. 응답 평균 2.6점("보통이다" 수준) *업무 추진 여건 '전반'을 묻은 Q10.을 포함한 다른 문항들(Q10-2, Q10-3)에 비해 Q10-1. 응답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절반이 '심의/자문' 기능이 적절하다고 봄. '심의/자문'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 나머지 절반은 "현 기능으로는 총괄조정 및 관리 역할에 한계(위원회 상설 운영)", "심의 전문성 확보 및 심의위원회 개최", "의결 기능 필요", "구속력 향상" 등의 의견을 제시			
Q10-2. 현재 국가위원회 예산 규모 적절성	2.2	0.8	37.6	●
	*응답 평균 2.2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현재 국가위원회 예산 규모가 기능과 업무 대비 부족해 실질적 작동이 어렵고, 앞으로 정부위원회 간 기능과 업무의 조정/통합, 관련 연구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			
Q10-3. 현재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 적절성	2.0	0.8	40.8	●
	*응답 평균 2.0점("동의하지 않는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현재 추진단 규모가 '위원회 개최' 및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방대한 정부 조직 및 위원회 간 총괄조정 역할 수행에 무리"라고 평가 *앞서 Q10-2. 예산 증액과 연동해 전문 인력 대폭 확충 및 별도 독립된 사무처 마련 주문			

Q10-4. 국무조정실 지속 가능발전 추진단 우선(시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총괄조정' 기능은 물론 앞선 문항에서 제시된 역할 확대를 위해, 조직 및 위상(추진체계), 인력(전문성), 예산 등 확대 필요 의견 * 기타 의견으로 "탄독위와 업무 조정", "지방위원회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원",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연계 작업",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 등 언급 	
Q11. 향후 국가위원회 최우선 역할 및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실정을 고려해 K-SDGs 재설정(기후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 격차 등 여건 변화 반영) * 관련 정부위원회와 원활한 협력 및 총괄조정 역할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구축 * 부처별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기능 복원 * 지역위원회 지원체계 마련 * 국가위원회 역할과 위상 재조정 	●
Q11-1. 정부위원회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분야 및 이슈 및 국가위원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정 우선순위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국가 미래 전망과 전략, 미래 과제 도출 및 대비(ex. 남북통일) * 정부위원회 간 협업 시스템 마련(ex. 여러 위원회 참여하는 TF팀 구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문별 산업 재편 전략'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 (ex.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관련 에너지·물 공급, 노동조건 마련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협력) * 혐오·차별(특히 성소수자, 성 인권) 배제 및 다양성 존중 * 격차 해소(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 → 지방 소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정책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확립 * 정부위원회-광역 및 시군위원회 간 협력 활성화(교육실행 단계 상호 교류) *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원칙과 방법 제공 	
Q12. 추가 의견 및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전환 이슈 관련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 업무분장 및 협조',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공간으로서 농어촌 지역 문제와 연계한 국가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업무 협조',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물 공급 및 노동조건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의와 협조'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슈에 대한 협력 *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통해 국민인식 확산 * 국가의 미래 비전 제시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관련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교류(파트너십).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2차 조사

1) 개요

● 목적

- 1차 조사 결과 도출된 전문가 주요 의견 재확인 및 추가 의견 수렴
 - 국가위원회와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중첩 확인
 -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중첩 확인
 - 위원회 간 중첩에 대응한 해소 또는 협력 방안 도출
 -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및 타 위원회에 대한 위상 제고 방안 도출

- '전문가 숙의공론장(연속 포럼)' 주요 의제 및 기획안 마련

-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정부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K-SDGs 분야별 관련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
 - * 1차 조사 대상자와 동일
- 기간 : 2025년 3월 7일 ~ 3월 14일(8일간)

- 방법

- 사전 전화 협의 후 E-Mail 통한 서면조사 실시

2) 문항 구성

- 총 7개 문항을 Section 1.~3.(K-SDGs와 국가위원회/위원회 간 중첩 양상/국가위원회 역할 정립)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1차 조사로 나타난 전문가 의견을 종합 후 선별해 평서문으로 작성했으며, 응답자 동의 여부에 따라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Section 별 개방형 응답지를 마련했다.

* 세부 문항은 [부록] 참고

- **Section 1. K-SDGs와 국가위원회 (2개 문항)**

-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상위 K-SDGs
- 국가위원회의 협력 정부위원회 선별 시 우선 고려 요소

- **Section 2. 위원회 간 중첩 양상 (4개 문항)**

-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중첩 여부 및 양상
- K-SDGs 이행에서 정부위원회 주요 역할
-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 중첩 여부
- 개별 정부위원회 간 중첩 여부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1개 문항)**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업무 추진 여건 평가

3) 조사 결과

- [문항 1.]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상위 K-SDGs는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 (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10(불평등 해소),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9(산업 성장과 혁신·사회기반시설 구축) 순이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9점(5점 만점)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추가 의견으로 "상위 목표와 관련된 연계 목표 명시", "디

지털, AI 기술 확산,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목표 추가”, “단기-장기 등 시기별 우선순위 목표 구분” 등을 거론했다.

- [문항 2.] ‘국가위원회가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선별할 때, 고려 요소는 △상호 시너지, △의제 연관성, △협력 실효성 등이 있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4점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응답을 내놨다. 이와 함께 추가 고려 사항으로 ‘추진 시급성’, ‘목표 달성 취약 정도’ 등을 언급했다.

[표 18]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1. K-SDGs와 국가위원회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1.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상위 K-SDGs는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10(불평등해소) △목표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9(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순이다	3.9	1.2	29.9
	* 응답 평균 3.9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순위 밖 목표’ 중 놓쳐선 안 되는 부분(목표/분야)과 일부 순위에 대한 조정 의견을 함께 제시함 “K-SDGs 달성 기반 요소로서 G4, G8 중요”, “선정 목표 외 연계 목표를 함께 명시해 통합적 관점, 목표관리 효과성 증대 필요”, “디지털, AI 신기술 확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G8, G9 순위 상향 필요” * 동의 수준 낮은 응답자 경우도 주목해야 할 목표 제시 “목표 우선순위는 단기-장기 구분해서 봐야”, “식량안보(G2), 자원순환(G12), 육상생태계(G15)”,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G9) 및 빈곤 대응(G1) 중요”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2. 국가위원회가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선별할 때, 고려 요소는 △상호 시너지 △의제 연관성 △협력 실효성 등이 있다	4.4	0.7	16.7
	* 응답 평균 4.4점(“동의한다” 수준) * 응답자 대부분 “동의”하는 가운데, 일부 위원은 협력 수준 향상 방안 제시 “강제 규정 마련해 위원회 협력 의지 높여야”, “국가위원회 권한과 예산 확대”, “목표 달성 취약’ 및 ‘추진 시급성’도 선별 시 고려 요소”		

- [문항 3.]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사이에서 중첩은 보통 정도이며, 어느 정도 중첩은 필요하다. 또한 중첩은 중복(상충) 또는 협력 지점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3점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응답을 했다. 특히 “디지털·녹색·인구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다각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간 역할 중복은 불가피하며 이를 비효율이 아닌 상호 협력할 지점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문항 4.] ‘K-SDGs 이행에서 정부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유관 목표(K-SDGs)의 세부 추진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정부위원회를 K-SDGs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무리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6점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로 나온 의견(‘정부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업무, 설립 목적이 K-SDGs와 연계성을 엄밀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K-SDGs 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맥락 역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항 5.]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이 중첩 사례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부처 또는 위원회와 협의·조정’, ‘빠른 회신’ 등 절차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2점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응답을 했다.
- [문항 6.] ‘개별 정부위원회 간 중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런 현상은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대응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체로 자문 수준인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3점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응답을 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 분석(‘위원회 사이 중첩은 해당 이슈를 다루는 각 위원회 소관 부처 간 대응한 문제이면서도 부처 장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과 그에 따른 ‘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가 의견으로 ‘위원회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보상과 페널티 등 동기 부여’,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위원회 주도 관련 부처 간 공동정책 마련’ 등도 제시됐다.

[표 19]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2. 위원회 간 중첩 양상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3.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사이에서 중첩은 보통 정도이며, 어느 정도 중첩은 필요하다. 또한 중첩은 ‘중복(충돌)’ 또는 ‘협력지점’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4.3	0.9	22.2
	*응답 평균 4.3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며, “협력시대 발굴, 상호 시너지 도모 필요하다는 점” 등 제시 “디지털/녹색/인구 대전환 시기 맞아 중첩은 불가피. 관련 담론 개발 통해 상호 협력 필요성 부각”, “에너지전환, 탄소 저감과 산업 재편 전략 수립 등 영역별 역할 조정 통해 상호 시너지 제고 가능” *동의 수준 낮은 응답자의 경우, “K-SDGs 이행을 위해 SDG 주류화 및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4. K-SDGs 이행에서 정부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유관 목표(K-SDGs)의 세부 추진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정부위원회를 K-SDGs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무리다	3.6	1.2	34.5
	*응답 평균 3.6점(“동의한다” 수준)		
5.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이 중첩 사례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부처 또는 위원회와 협의·조정’, ‘빠른 회신’ 등 절차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4.2	0.6	13.8
	*응답 평균 4.2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며, 추가 의견으로 “정부위원회와 국가위원회 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어느 결정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합의 필요” 등이 거론됨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6. 개별 정부위원회 간 중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런 현상은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대응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체로 '자문' 수준인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3	0.8	19.5
	*응답 평균 4.3점("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동의"함. 관련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 하도록 중첩 분야(기능/역할) 정비", "위원회 기능 강화와 더불어 '보상'과 '페널티' 통한 동기 부여", "거시적 환경 변화 고려해 관련 부처 공동 대응, 또는 정부위원회 리드 아래 공동 정책대안 마련" 등이 제시됨		

- [문항 7.]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 중 사무국(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와 예산은 업무 대비 상당히 열악하며, 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 역시 충분하지 않다'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6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동의 수준("매우 동의한다")을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추진 여건 보강 필요성과 함께 향후 역할로서 '위원회 기능 및 업무 영역 명확화', '공무원 교육 및 정책 조정 연구', '지방위원회와 연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협력이 가능한 정부위원회와 공동 사무국 운영' 등 의견을 내놨다.

[표 2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분석 : Section 3.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평균 (5점 척도)	표준편차	표준편차/평균 (%)
7.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 중, 사무국(지속가능발전추진단) 규모와 예산은 업무 대비 상당히 열악하며, 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 역시 충분하지 않다	4.6	0.7	14.4
	*응답 평균 4.6점("매우 동의한다" 수준) *응답자 대부분 '매우 동의'하며, "현재 국가위원회와 추진단 모두 예산, 조직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데 공감함. 이와 함께 향후 필요한 역할과 기능에 관해 다양한 의견 제시 : '공무원 교육이나 정책 간 조정을 위한 연구', "(중복 해소 및 협력 위해)정부 안팎 설득 필요하며, 환경부와 국가위원회의 구체적 전략 및 실행 필요", "(개별 위원회 차원 한계 넘기 위해) 유사 또는 협력할 위원회 간 공동 사무국 운영 고려. 대표적으로 국가위원회와 탄녹위 간 업무 조정 및 사무국 협력 운용 방안 강구", "전반적으로 전체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노력 필요", "지방위원회와의 연계 역할 필요"		

3. 종합 분석: 시사점

1) K-SDGs 달성 평가 및 협업 파트너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으며, 정부는 K-SDGs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SDGs 우선순위(안)]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10(불평등 해소),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9(산업 성장과 혁신·사회기반시설 구축).
- 정부는 K-SDGs 달성을 위해 장·단기 우선 이행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달성이 미흡한 목표 또는 우선 목표와 연관된 목표를 함께 고려해 K-SDGs 정책 전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국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이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위원회별 역할의 타당성,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목록은 조정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가 협력해야 할 정부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호 시너지 △의제 연관성 △협력 실효성 △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12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협력지점과 절차개선 사항

- 국가위원회와 K-SDGs 관련 정부위원회 간 기능과 업무상 '중첩'은 일정 부분 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 '중복' 또는 '협력 지점'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중복'은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의 실제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협력 지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요 중첩 대상 정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 K-SDGs 이행 관련 정부위원회 간 '중첩'은 일정 부분 발생하며, 주관 부처와 해당 위원회 간 대응

(협의·조정)할 문제이다. 위원회 사이 중첩은 해당 이슈를 다루는 각 위원회 소관 부처끼리 대응할 문제이면서도, 부처 간 장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 각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필요성이 기인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 '자문' 수준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들과 위원회들의 적극적 동참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위원회의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는 정부위원회와의 대표적 중첩 사례로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이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부처 또는 정부위원회와 협의/조정', '국가위원회의 빠른 회신'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주관 부처와 해당 정부위원회 모두에 통보해야 하며,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홈페이지 등)할 필요가 있다.
- **정부위원회들은** 주관 부처 주요 업무와 K-SDGs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국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 국가위원회 발전방향

- 국가위원회는 K-SDGs 이행 및 정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는 총괄 역할(권고/조언/지원)을 해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질적 운영체계 구축 및 영향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회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 위상 및 역할 정립(안)] △국가위원회 성격 격상(심의·의결), △정부위원회와 거버넌스 구축(ex. 실무협의체 운영 시 정부위원회 간사 참여), △국가위원회(지속가능발전추진단(대안: 사무처) 확대 등.
- 국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여건(성격, 직제, 인력, 예산 규모 등)은 현재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향후 K-SDGs 이행 과정에서 위원회 간 협력을 포함한 총괄 역할(권고/조언)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사무국)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국가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을 강화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는 향후 △K-SDGs 재설정(기후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 격차 등 국내의 변화 반영), △정부위원회들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구축, △지방위원회 지원체계 마련, △국가위원회 역할·위상 재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현재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ex.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전환 등)를 감안해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협력 지점'을 적극 발굴해 정책 추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1. 개요

가. 목적 및 조직

1)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관련 정부위원회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원회 간 협력 필요성과 구체적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 K-SDGs 이행 컨트롤 타워로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운영 개선, 정책 연계 방안(기능 및 역할 중심) 등을 도출한다.

2) 조직

- 일정 : 4월 중 그룹별 지정 일시(그룹별 1회·총 7차)
-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방식 : 그룹별 전문가 숙의 공론 (핵심 질문 기반 모더레이터 진행)
 - 그룹(분야) : 환경1, 환경2, 사회1, 사회2, 경제·과학, 거버넌스, 전현직공직자
- 참석자 : 주요 정부위원회 참여 위원, 국책 연구기관 등 회당 7~8명 *명단은 2장 참조
- 회차별 운영

소요 시간(분)	내 용	진행
20'	사전 준비 및 참석자 확인	공동 연구진
5'	참석자 소개, 인사말, 연구 배경 설명	추진단 공동연구진
10'	[자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DGs 관련 위원회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주요 논의 의제 	공동 연구진
45'	[문제점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DGs 이행 위한 정부위원회 역할 및 협력 • 정부위원회 간 협력과 중첩 현황 및 해소 방안 	모더레이터 (숙의 공론)

소요 시간(분)	내 용	진행
45'	[협력 모델 구체화 및 개선 방안] • 정부위원회 간 협력 방안 •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연계 방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모더레이터 (숙의 공론)
15'	종합 정리 및 마무리	공동 연구진

나. 운영 경과

1) 회차별 경과

구분	일시	그룹	참석자
1차	4월 14일(월) 오전 10:00~12:00	1그룹 (환경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재경(탄녹위) 김홍철(중앙환경위) 백명수(중앙환경위) 홍현중(KBC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만기(경사노위) 이은희(탄녹위)
2차	4월 14일(월) 오후 14:00~16:00	2그룹 (환경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희영(중앙환경위) 심창섭(KEI) 염형철(물관리위) 오대균(중앙환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의찬(탄녹위) 최동진(물관리위) 허재영(물관리위)
3차	4월 15일(화) 오전 10:00~12:00	3그룹 (사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미나(저출산·고령위) 권율(국제개발협력위) 김선(국네이버스 본부장) 김원득(사회보장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철희(국가교육위)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김하나(탄녹위) 이선경(탄녹위)
4차	4월 15일(화) 오후 14:00~16:00	4그룹 (사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승연(사회보장위) 배규식(경사노위)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이성훈(국가인권위) 조경애(저출산·고령위) 정해식(보건사회연구원)
5차	4월 23일(수) 오전 10:00~12:00	5그룹 (경제·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홍상(농어업위)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송상석(탄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제용(국가과학자문위) 추소연(탄녹위) 변숙영(직업능력연구원) 송미영(중앙환경위)
6차	4월 23일(수) 오후 14:00~16:00	6그룹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광호(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병완(중앙환경위) 노태호(중앙환경위) 문태훈(국가지속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길(중앙환경위) 이동준(지속협 사무총장) 이정수(국가물관리위)
7차	4월 25일(금) 오후 14:00~16:00	7그룹 (전현직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경(저출산·고령위) 백승근(국가지속위, 대도시권역교통위원장) 이경희(저출산·고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연만(국가지속위) 제종길(국가지속위 위원장) 한기준(국가지속위)

- 1~4차는 분야별 핵심 질문 기반 중첩 현황 확인 및 국가위원회 역할을 도출했다.
 - 핵심 질문
 - Q1. 정부위원회 간 협업 현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2. 정부위원회 간 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3. K-SDGs 이행 관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유관 정부위원회 간 기능 또는 업무의 '중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 Q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유관 정부위원회 간 '중첩' 발생 시,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5. K-SDGs의 원활한 이행과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 사무국 운영 등)

- 5~6차는 국가위원회 위상 및 역할 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 핵심 질문
 - Q1. K-SDGs 이행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2. K-SDGs 이행과정에서 정부위원회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3. 국가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차는 국가위원회 위상 및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포럼 전체를 총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논의했다.



[그림 18] 전문가 포럼 현장 모습 (1~4차)



[그림 19] 전문가 포럼 현장 모습 (5~7차)

2. 운영 결과

가. [1·2차] 환경 그룹

□ 정부위원회 협력 및 소통

- 정부위원회 내 소통은 물론, 타 정부위원회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

-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처와 소통이, 서로 이해가 달라서 힘들었다. 회의 1~2번 참여하고 끝나고 말았고, 위원회 미션이나 심의 기능이 있다지만,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었다. 드물게 심의를 하더라도 결과 공유가 되지 않았다. 더불어 위원 간 소통도 거의 불가능했다.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면, 예전부터 알던 분들 중심으로 알지, 새로운 소통이 되게 드물었다. 공적인 회의 외에 따로 만나는 게 어려웠다. 따라서 위원회 간 소통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려웠다.
- 정부위원회 간 협업 문제가 얼마나 가능할까 경험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위원회 자체 소통도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위원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면, 위원 대부분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특별한 방법, 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그러면 한번 와서 회의하고 가는 게 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인데, 여기서 타 위원회와 협업을 요구하기는 되게 어렵다. 위원회를 안정화시키고, 참여를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기 전, 타 위원회와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 특정 위원회의 미션이 광범위해 공백이 생기는 지점에서 정부위원회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당시,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고용/산업 부문과 연계되는데, 위원회가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채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경사노위가 협업하며 거버넌스를 고민했다. 위원회 고유 미션이지만, 워낙 광범위해서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게 힘들다면 미션을 재배분할 수 있는 것이다. 협업이 잘 되면 미션을 다른 위원회가 맡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정부위원회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목적, 대상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 협업이 필요하지만 위원회마다 운영 횟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협업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성격이 아닐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애매하다. 따라서 협력이 왜 필요한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보완하지 않으면 참여가 쉽지 않다.

- 정부위원회 구성 시, 타 위원회와 위원(or 부처 직원) 겹침을 통해 소통 및 논의를 일원화할 수 있다.

•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유관 부처의 전문위원이든 공무원이든, 해당 위원회 위원이든 관련성이 높은 사람이 함께해야 소통이 더 원활하고, 논의 결과 역시 풍부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지 못해 상호 중첩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유관 정부위원회들을 포괄하는 통합권과 하부 집행조직을 갖춘 이사회(보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보드 체계를 도입하면, 보드 아래 상임위원장은 상근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 별도 위원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전문위원회 성격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 병립 등 중첩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드 체계가 전부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애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최상위의 보드 체계를 갖고 중첩이나 상충을 해소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다. 최고 보드 아래에 막강한 집행 기구, 공적 공조직이 있는 거고, 그 밑에 협력 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실행을 주도하거나 협력하고 보드는 의사결정을 해버리니까, 중첩은 사라지는 것이다.

□ 국가위원회 역할

- K-SDGs 이행 관리 및 연례보고서 작성 등 종합적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조망하면서 관련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국가 지속위가 '이행률 점검' 및 '목표 관리' 역할 하는 위원회로서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지속위 분과 위원회가 단기-중기 과제를 잡는 만큼, K-SDGs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내야 한다. 어느 부분이 약진하고 부진한지를 진행 정도를 보고서로 내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보고 및 의결 체계, 실행 방안' 등을 담아낸다. 세세한 1~2가지 사안에 대한 것보다 전체 K-SDGs 달성 및 추진 방식이나 시행착오 사례를 점검해서 보고서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다.

• 국가 지속위는 사전에 조정 능력을 완결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서를 내 국회와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충을 비롯한 중첩이 여러모로 발생했고 이걸 조정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발생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전부 해내려고 하면 또 하나의 정부를 넘어서서 더 큰 정부가 되는 셈이다.

• 어디에서 중첩과 상충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뭐고, 어떤 지향성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및 국회가 보도록 보고서로 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률상의 문제인지, 또는 국가 계획상 문제인지 검토 후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K-SDGs 설정 및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위원회와 소통·협력해야 한다.

- 탄소중립 2050 한 것처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다 같이 모여 작성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또 각 위원회가 심의한 과제를 SDGs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
- 국가 지속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정부위원회가 해당 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직접 만드는 경우, 그 위원회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직접 만들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와 논의해 지표를 만들 수 있다. 이후 위원회별 이행계획을 요구해 추후 이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위원회 미션 중 지속가능성 측면의 공백을 포착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정부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빠진 이슈가 있다면 (국가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다. 과거 국가지속위가 물 수요관리, 갈등, 핵폐기물, 방폐장 문제 등도 다루며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다. 정부위원회 대부분 계획 수립, 심의, 보고가 형식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협업이 생기기 어렵다. 때문에 다른 위원회 내 공백이 생긴 이슈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정부위원회와 협력 위해 가볍고 유연한 소통·협력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정부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가지속위에 참여시켜 상시 논의하는 경우), 정부위원회도 부담이 있다. 따라서 그런 식의 절차와 체계를 만들어 놓되 필요할 때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고 이슈가 안 맞으면 다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간 상호 이해를 통해 절차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된다.
- 정부위원회 중 가장 중첩이 많은 곳을 1그룹으로 놓고 다음 2그룹, 3그룹으로 나눈 뒤,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겠다. 핵심 그룹 간 소통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상호 워크숍, 위원장이 참여하는 연례 회의 개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그룹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 위한 부처 간 이슈 및 협력사항 발굴·조정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위원회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달성이란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 주요 의제가 서로 다른데, 과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레벨이 정해지는 국가 계획 및 지역 단위 계획이 정해지는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정부위원회에 가볍게 ‘협력하자’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고민 아래 이슈 발굴 및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들의 참여 및 배석이 필요하다.

- 국가지속위에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들이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배석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국가지속위에 잘 전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를 공유함으로써 협력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 UN 지속가능목표 중 ‘굿 거버넌스’가 있다. 거버넌스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굿 거버넌스’ 의무를 갖고 정부위원회 간사(목표 1번의 경우 관련 위원회 6곳), 국가 지속위에 참석해, 서로 소통하거나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방식과 시기를 기존 사후 검토에서 ‘계획 수립 전 검토’로 변경해야 한다.

- 국가지속위가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면 피드백이 오는데, 어느 시기에 개입할 건지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계획이 완성된 후 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과정, 다시 말해 이전 계획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지속성에 대한 평가 검토 의견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립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부위원회 위원들의 인식 개선 위한 회의자료 개선 및 지속가능발전 성공 협력 사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가 SDGs를 현장에서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위원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이 SDGs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피드백하는 구조를 짜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 위원회 회의 자료 상단에 ‘이 회의는 SDGs 몇 번’이라고 넣어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는데 국가지속위 검토 통해 향상됐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각 부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 [3·4차] 사회 그룹

□ 정부위원회 협업 및 소통

- 정부위원회 내 소통은 물론, 타 정부위원회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

- 정부위원회와 다양한 측면의 중첩도 있지만, 비는 곳(공백)도 있다고 본다. 목표별 세부지표 담당 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호 협업 및 소통을 하려면 위원회 사무국에서 팔로업을 잘 해

줘야 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국회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의 속기록과 함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각 정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환경위원회가 SDGs 4번 목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교육위원회는 환경부 이슈 중 소소한 안건을 다루면서 실제 지속가능 관련 많은 논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 정부위원회 간 협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부처 간 협업으로, 위원회는 부처에서 결정한 것을 승인하거나 자문하는 정도다. 정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의 발령이 잦다 보니 전문성(분야 이해도 및 네트워크 등)을 쌓기 어려워 다른 위원회 협업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어 다른 위원회와 연계, 협력이 어렵다. 협력이라 함은 '특정 안건 심의 시, 추가 업무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안건 검토를 통해 아젠다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각 위원회 논의 프로세스와 소속 부처에 따라 위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사무국과 위원장, 전문위원들 역할이 크다. 결국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와,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구분해 국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정부위원회별 권한과 역할이 다르다. 단순 자문만 하거나 의결까지 하는 위원회 등 역할과 권한이 달라서 상호 연결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의결 권한을 가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논의 시 모든 부처가 다 들어오는데, 한 부처가 동의 안 하면, 결국 안 된다. 그래서 전 부처가 OK 하는 수준까지만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주제나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논의할 생각조차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위상이 다른 위원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실효성이 있다.

● 개별 정부위원회의 논의 중인 의제를 상호 교류해야 한다.

- 서로 안건이 꼭 연결되지 않거나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런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회의록)을 공유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 특정 위원회의 미션이 광범위해 공백이 생기는 지점에서 정부위원회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의로운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현재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다음 산업자원부에 이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가령 석탄발전이 문을 닫으면 근처에 가스발전은 넣는 식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을 옮기도록 조율하며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지속위가 다른 위원회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일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국가지속위는 물론 다른 위원회와 부처도 해당 역할을 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 역할

- K-SDGs 설정 및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위원회와 소통·협력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메인 스트림화’에 동의한다. 기본전략수립 단계에서 국가지속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행 단계에서 각각 회람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소재 분배가 중요한데, 각각 관할하는 위원회마다 범위나 아젠다 영역이 다르다(대통령, 국무총리 등 소속에 따라). 주류화의 방법으로서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등 처음부터 중간 과정까지 위원회별 업무 범위를 잘 나눠서, 단계별 비어 있는 곳을 보면서 어떤 위원회가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
- ‘정리로운 전환’ 이슈의 경우, 국제적 화두이고 중요한 문제이니 국가지속위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 듣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조정해야 한다. 기본전략 수립 초기 기획 단계에서 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차담회 수준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영역 다툼을 넘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것이다.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작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활동성이 높지만, 에너지, 기후변화 부분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활동이 충분하나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 국가지속위가 해야 할 일은 정부위원회의 중장기행정계획(종합계획)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야 한다.
- 위원회 참여 경험상 국가지속위가 강제성을 갖게 한다거나, 모든 정부 부처가 중장기계획을 낼 때마다 맨 앞장에 SDGs 목표별 조치사항 또는 달성사항을 넣도록 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에서 전체 정부 부처 계획 중 어떤 것은 꼭 검토보고서를 받겠다는 리스트를 ‘영(令)’으로 못 박을 수 있다(연간 50~60개 검토하도록). 물론 사무국을 어디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측면에서 K-SDGs 통합적 이행을 위한 유관 위원회(부처) 간 연계점을 포착해야 한다.

- UN에서도 상호 목표 간 연계성이 있다. 많은 논의 통해 공청회 가면 결국 과업별로 분절화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 사후적으로 중복이라고 한다. 특정 지표가 어느 지표와 연계돼 있는지 확인 후 ‘어떻게 협업하고 중복을 해소하냐’는 접근이 아니라, 국가지속위가 정책 일관성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켜 지표 간 임팩트를 내야 한다. 세부지표별 공통 연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중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각각 해당 분야에 집중하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위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다양하게 만나 교차 검토해야 한다.
- 국가지속위와 정부위원회 간 지표를 서로 트래킹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SDG를 주류화해서 정부위원회별 연간 평가는 SDG에 대한 과업과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 정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위해 해야 할 목록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각자 활동과 국가지속위의 상호 교차성을 넓히는 차원에서 어떤 실행계획을 규정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를 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유관 정부위원회별로 둬으로써 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면, 사회보장실 내 한 사람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우선 국무조정실부터 변화를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위원회별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 유관 정부위원회와 소통·협력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 유관 정부위원회 간 지속가능성 연계 정도에 따라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데, 플랫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 국가지속위의 사전지속가능성 검토 작업과 더불어 클러스터 내 속한 위원회 간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다.
- 유관 정부위원회 간 모임 정례화가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 공통 주제를 주면 논의가 가능하다. 1년에 한번은 영역별 모임(사회, 환경, 경제 등)을 정례화하면 지속위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정 정부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급은 대통령, 국무조정실 등 수준에 따라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
- 국조실 주관 핵심 위원회 3곳 만이라도 우선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서를 내면 다른 정부위원회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부처에서 자료 제출도 안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첫 번째 스텝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위원회 간 협력을 먼저 추진하면 참고가 될 수 있다.
- 소속의 수준(급) 중심으로도 필요하지만, 업무 중심으로도 봐야 한다. 국토부 국토종합계획(중장기 행정계획) 주거종합계획 등의 경우, 위상으로는 아래지만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는 중요한 계획이다.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부위원회와 협력 실효성 확보 위해 국회 상임위와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 결국 실효성 가지려면 국회 의결이 되어야 한다. ‘분절화’, ‘중복’,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부처-국회 간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 여야 주요 상임위에서 함께 토론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조율이 이뤄지면 정부에서 굳이 나중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 행정비용 줄일 수 있다. 입법 사전 절차로서 다소 무거운 공청회 형태는 아닌 ‘정책 간담회’ 수준이면 충분하다.

- 정부위원회 위원들의 인식 개선 및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 업무평가를 매년 하면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연말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국가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 지표'라는 인식을 줘야 하는 것이다.
- 인식 개선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종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들은 강의 실라부스를 제시할 때, '몇 번 목표'에 해당하는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한다.
- 위원회 및 부처에서 다루는 다양한 성과 목표와 달성 지표가 많은데, 관련 위원회와 산업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SDG 지표'라는 것을 잘 모른다. 지표가 상향되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 지표가 필요하다. 매개 지표를 관리, 검토하면 그것이 곧 국가 지표로 이어질 수 있다.

다. [5·6차] 경제/과학·거버넌스 그룹

□ 정부위원회와 협업 및 소통

- 국가위원회의 소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타 위원회와 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소통 구조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 시에는 숙의공론장 운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통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는 수직적소통(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과 수평적 소통(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초·광역의 성과를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ex.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회)
- 법적 기반(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위원회의 위상 강화 시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다. 대통령 보고회, 성과 공유 등을 통한 대통령(최고리더십) 인식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 사무국 부서 중 '협력팀'을 운영해 수평-수직적 협업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

- 법에 근거한 국가위원회의 권한, 역할 등을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부위원회와 협업 및 소통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타 정부위원회와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 법에 근거한 권한, 역할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해야만 중첩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 국가위원회에 대한 역할 이해가 부족하면 다른 정부위원회와 협업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위원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다른 정부위원회에도 역할을 제안하

고 협력할 수 있다. 현재는 법에 근거한 정부위원회 간 협력 등이 명확하지 않다.

- 위원회에 참여해도, 위원의 역할을 위촉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알게 된다. 이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잘 미리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이 된 후, 바로 생산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 국가위원회 역할

- K-SDGs 설정 및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위원회(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중앙-광역-기초 간 수직적 단절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간 협업 및 소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종합적 가이드라인 제공도 필요하지만, 지방분권 자치의 의미에서 지역 특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전략 모델 확산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수립되어도 각 계획간 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관련계획 정도로 고려된다. 상위 계획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는 타 정부위원회와 K-SDGs에서 발생하는 목표나 지표의 중첩을 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하여 협업을 할 수 있다.
- K-SDGs 모든 지표를 국가위원회가 관리할 수 없다.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있어서 17개 목표의 지표는 2개 이내로 정하여 관리하면서 갈등조정, 소통, 인식개선 등의 역할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
- K-SDGs 지표보다 더 앞서서 잘 관리되는 지표와 이를 추진하는 정부위원회가 있다면, 사업추진과 지표관리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작업을 내실화(시기, 가이드라인 제공)해야 한다.

-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시 중후반부 개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초안 단계부터 지속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 타 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준거틀(평가 프레임워크)의 부재 문제가 있다. 각 부처·기관의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준거틀 미비로 지방정부에서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 행정계획 수립 시 직접 개입하거나 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 기본전략이 있어도 부처에서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정 초기 단계에서 지속가능성 관점의 사전 검토 또는 피드백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 어렵다.
- 기본법에 근거하여 내용이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큰 효과가 있다. 법적인 사무를 활용할 때 시스템이 돌아가며 지속가능발전을 잘 추진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 조직정비, 제도, 향후 아젠다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미션을 실효성있게 챙겨 나가기 어렵다. 또한 정부 위원회와의 협업을 위한 소통구조 개선과 정책조율 시 힘이 실리지 않는다. PCSD와 NCSD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국가위원회가 국정 전망을 조망하고 조정할 수 있으려면, 단순 자문을 넘어서 타 위원회,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업권'을 확보해야 한다. 타 부처와 위원회의 동의/부동의 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사전 검토, 논의하고 성과보고회로 연결 가능하다.(ex.중앙국토심의위원회)
- 법, 제도적으로 예산권한 및 행정권한을 포함하고 중장기행정계획 검토, 수정 권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 헌법 개정 시 인류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이 헌법 전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적 위상 확보로 국가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포스트 2030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 아젠다에 논의가 필요하다. 유엔 차원의 후속 논의와 연계도 필요하지만,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담론 형성과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
- 아울러, 정부 평가와 지속가능발전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처별 평가에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를 탑재(자체평가+메타평가 구조)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위원회는 단순 보고나 모니터링을 넘어서, 국정과제 및 국가 전략의 지속가능성 조정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확산(인식확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Goal 4)와 국민 행동변화와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는 세부목표,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들도 있어야 한다.

- 평생교육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도 중요하므로 관련 세부목표, 지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 아울러, 생태적 감수성, 자연에 대한 경외감(정서적 요소 포함)을 교육에 포함하여 피교육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국민들이 실천 가능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지방정부 차원과 실천 단위에서는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감축관련 지표는 현재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에 대한 지표이다. 국민 개인이 달성하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ex. 나무심기, 자전거 이용 등) K-SDG 지표 수립 시 국민실천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ex.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 등)
- 국가지속위 위원들 인식제고가 더 필요하다. 미래세대들은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이해도 높게 학습하고 있다.(ex. 위원대상 연찬회)
- 국가위원회는 소프트웨어이자 착하게 살자는 이념이기도 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 결정을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방식으로 인식개선과 의제확산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들에 기반하여 미래세대가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여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라. [7차] 전·현직 공직자 그룹

□ 정부위원회와 소통 및 협업

- 국가위원회의 총괄조정 역할이 가능하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정부위원회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국가위원회가 상징적으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만 쥐도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 뒤 위원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내에서도 탄핵위가 더 큰 역할을 해서 일반 부처에선 국가위에 관심이 없는데, 그 구조 하나만 바꿔도 전체 정부위원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다 하려고 욕심내면 어려우니 2~3개라도 실행 가능한 곳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국가위원회 위상 정립 및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부처는 다 빼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핵심적인 몇 개만 우선 추진해야 한다.

- 국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이전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정과제협의체’를 5년 내내 운영했다. ‘위원장단 회의’, ‘사무처장 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 회의’ 등 3개가 상시 돌아갔다. 예를 들어 ‘인구문제’라고 할 때, 그 아래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 각각의 위원회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의제 개발을 공동으로 했다. 지속위도 사실 더 큰 의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소구력 있는 의제로 우선순위 정해서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와 함께 ‘무엇을 논의했느냐’도 중요한데,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를 보면 많은 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 국가위원회 내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등 주요 협력 지점에서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 중장기 업무 관련 부처별 위원회가 많은데, 국가위원회가 다 컨트롤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분과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미나, 워크숍 등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했을 당시, 안건별로 주심 위원을 선정해 주도적으로 검토하게 했는데, 인상적이었다.

- K-SDGs 이행 관리 및 연례보고서 작성 등 종합적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조망하면서 관련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지속가능지표 평가를 1년마다 하는데, 못하는 것은 수시로 빼고, 필요한 것은 넣고 해야 한다. 보고 역시, 국가 전체 아젠다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요즘은 「국회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해서 정기국회 시작하는 8월까지 지속가능발전 백서를 내서 ‘어떤 지표가 미진하고 부족한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젠다가 되면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자기 일로 여기게 된다. 평가의 경우, 지방정부 평가나, 지방정부 재정보조금 할 때 이런 평가제도 도입하고, 공공기관평가에도 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지표가 들어가도록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국가위원회 역할

- 국가위원회 위상에 맞게 시대정신을 담은 핵심과제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

•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국가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정부위원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있고 현재 시대적 요구가 큰 의제를 선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시대정신 담은 핵심과제를 분야별로 정해서,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되고 지속위만 터치할 수 있는 아젠다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거대 담론만 논의하다가 5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 국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제 확산 및 실행 기반인 지역 네트워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국가지속위는 전국에 지방조직이 있어서 지역에 의제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국제 의제를 사회 운동이나 민간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다른 위원회보다 강점이 있는 만큼, 그 점을 어필해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위원회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

• ‘Globally Think, Locally Act’란 슬로건처럼 글로벌 활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물포럼’을 만들어 사무국을 동경에 두었는데, 1년 내내 작동하면서 아태지역 물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도 국가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등 세계를 권역화해서 SDG 의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룸’이 많다고 본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국가위원회의 국내 역할과 기능도 활성화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 분석

가. 정부위원회 간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접근경로

-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위원회 간 협업의 구조적 한계 인식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부위원회 내부, 정부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부위원회 간 소속 위계, 의사결정 구조, 회의 횟수, 참여 방식의 차이로 실질 협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음.
 - 정부위원회 간 의제 중첩에 대한 협의구조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정의로운 전환, 고령화, 탄소중립 등에서 중첩이 상당히 발생함.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양자·다자 협의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간 협업 목적, 대상,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존재하나, 구체적 실현 전략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정부위원회 간 공동 아젠다 설정과 역할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간 협의 체계가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쟁점에 대한 협의 체계(프로토콜)와 연계망(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 관련 부처와 정부위원회 간 위계가 불일치하다는 측면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쟁점에 대한 협의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 체계(프로토콜)'가 필요함.
 - 정부위원회 간 사안별 협업 로드맵 및 그룹핑 체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즉,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사회 등 연관도 높은 핵심 위원회(가칭 1그룹)를 중심으로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하며, 필요시 여타 분야의 2·3그룹으로 확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위원회 간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거나, 주요 위원회 담당관의 국가위원회 상시참여 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 각종 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공유 및 회의 구조를 디지털화하여 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위원회 간 정보 불균형과 소통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의안, 회의록, 정책자료, 계획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회의 속기록 시스템, 의제 트래킹, 안건 공유시스템, 온라인 협업 공간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위원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정부위원회 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정책 조정 허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조정·조율 기능이 미약한 현실로 나타남. 국가위원회가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연례 평가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평가·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총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이는 K-SDGs 목표 및 지표 설계에서 관련 위원회와 공동 기획체계 마련이 관건임. 기본전략 초기 단계부터 공동 수립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검토 시기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완료 후가 아닌 초안 단계부터 지속가능성 평가가 개입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음.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성과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대중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은 '실천'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정부위원회 위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비롯하여 산업계, 국민 대상 인식 증진을 병행하여야 함.
 - 각종 회의자료, 공문 등에서 SDGs 연계 시각화(예: 아이콘) 도입을 통해 친근하게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업무 연계성을 이해하도록 함.
 - 시민 실천지표 도입(ex. 자전거 이용, 나무 심기 등)을 통해 K-SDGs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음.
-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활성화와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 기능 확대 및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 현 추진단 체계는 국무조정실 업무의 일환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적극적으로 전략 수립 및 조정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현재는 상시적으로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하는 구조는 아니며, 추진단의 직제상 국무조정실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도 있음.
 - 따라서 사무처를 독립시켜 상시적으로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적극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실무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조정, 연계 협력,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고 내재화해야 함.
 - 현재 3팀 규모의 추진단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 확산과 지방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 실행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지속가능도시 인증제 도입,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확대, 지역 포럼 및 사례 공유모임 등 여러 가지 노력 필요.
 - 생애주기별 실천 연계 모델(청년 캠프, 시니어 거버넌스 아카데미 등) 등을 통해 여러 계층, 여러 지역에서 일상 속에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1. 핵심 위원회 담당관 면담 분석

- 앞서 분석한 핵심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위원회의 근거, 관할하는 행정계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타 위원회와의 소통경험, K-SDGs에 대한 이해도, 협력사업 경험, 협력의제 등을 파악하고자, 각 위원회의 담당관들에게 면담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기간 내에 일정이 가능한 위원회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14~20일,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 공통질문:
 - 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관할하는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은 무엇입니까?
 - 귀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이나 행정계획안을 심의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외에 다른 행정부처/정부위원회와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여러 부처들은 하나의 SDG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 중첩되는 활동[사업·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귀 위원회 활동 중 다른 정부위원회들과 차별화가 필요한 활동이 있습니까?
 - 귀 정부위원회에서 그동안 특정한 SDG나 개별 지표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부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둘러싸고 다른 정부위원회와 협력·협업하면 좋겠다고 느꼈던 사례가 있습니까?
 - 귀 위원회가 특정한 SDG와 관련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다른 정부위원회(들)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추진·후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 귀 위원회가 국가위원회 또는 다른 정부위원회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agenda)가 있습니까?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가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정부위원회 상호 간 SDG 관련 협력·협업을 우선하거나 합동 워크숍 등을 여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속가능발전 관련 거버넌스에 관하여 또는 국가위원회의 정부위원회 간 협력증진 활동에 관하여 제안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 각 위원회 담당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위원회의 직역 중첩 여부

- 법 작성 시 상호참조의 경험이 있어서 다소 중첩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이 작성될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참조하였고,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참조하였기에, 상호참조로 다소 중첩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국가위원회의 SDGs 사무에 속하는데,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에 속한다. 에너지 대책에서 행위주체들 상호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 있어 수요공급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예로는 물 문제, 즉 수자원 관리에서도 부문 간 균형이 필요하다. 국가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탄녹위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영역에서 중첩이나 관점에서 중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K-SDGs와의 연관성과 경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에너지 전환(SDG 7)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SDG 13)과 관련되어 있고, 산업혁신, 정의로운 전환(일자리), 폐기물(자원순환), 생태계보전(SDG 15)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성이 있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공동사업 수행 경험

- 탄녹위가 2022년 10월에 출범하였고, 위원회 안에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위원회들과 협력한 경험이 없다.

4)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국가위원회가 협업을 제안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국가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SDGs 관련 지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최적 실행안을 알리는 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간담회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 위원들의 교차 참여, 확대연석회의 등의 방법이 있다.

- (보고서 작성) SDGs 지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설정이 중요한데, 각 정부위원회가 모를 수도 있으니 국가위원회가 데이터 추적(follow-up)을 돕고, 해당 정부위원회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 의존하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 부처에 필요한 SDG 데이터가 없을 경우, 국가위원회가 통계청[국가통계연구원]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문제해결적 접근) 국가위원회가 SDGs 사무에 관하여, SDGs의 의의와 핵심쟁점을 이해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다른 정부위원회에 실행에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적합한 ‘최적실행안’(best practices)을 제안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업무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비교적 생소하므로 각 정부위원회들이 서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수행하는가를 모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거나 (나) 대안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겠다. 이때 국가위원회가 다른 정부위원회에 (가) SDGs를 소개하고 (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차 참여) 정부위원회 간 협력을 위하여서는 행정적인 접근 방안으로써 SDG 전문가들이 다른 정부위원회들에 ‘당연직처럼’ 들어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연석회의) 국가위원회가 차별화 속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가위원회가 힘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정부위원회들의 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국가위원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 결의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회에 통보하고, 화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UN 지표라도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위원회에 따라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국가위원회가 연석회의(joint meeting)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끝으로, UN SDGs를 주도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타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략 심의, 포털사이트 운영,⁸⁷⁾ 홍보, 사업평가 등에 주력하고 있다.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무상원조(ODA)는 KOICA가 소속된 외교부가 계획을 수립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균형과 국정운영 방향과의 조율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다.

87) 편집자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52.

2) K-SDGs와의 연계성

- SDGs와 관련은 있으나 위원회 간의 협력보다는 부처 차원의 지원, 협조가 가능하다.

• SDG 17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곤, 기아,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되어 여러 주제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러나 ODA를 통해 SDG 관련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타 위원회와의 협력이나 상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예를 들어, ODA에 필요한 과학기술전략 이전을 추진한다면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녹색 ODA를 지향하고 있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자료나 데이터를 요청한다면, 협조가 가능하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타 위원회는 아니고 주요 사업 주관 기관들과의 협업 경험이 있다.

• ODA 등 원조사업에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 특히 EDCF, KOICA ODA 사업 실무 관계자들이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 업무 실무에서는 해당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관 내에 기재부와 외교부가 있어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사업 간의 중첩이나 균형을 보는 수준이고, 주관 기관들이 타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전문 분야가 다양하고, SDGs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원회 간 회의는 안내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실무 차원에서는 상의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국가물관리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서 국무조정실장이 관할한다. 물·하천과 관련된 이슈를 다 다루고 있지만, 녹조, 수리권에 관한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위원회다.

2) K-SDGs 연계성

- SDG 6 (물과 위생)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 물관리에서는 점차 이익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상하류 지역 간뿐만 아니라 행위주체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 관리가 주요한 안건이 된다.
- 국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물, 하천 전문가들이 SDG 6 물관리 세부목표나 지표 수립에는 참여할 수 있다.
- 하천수리권과 농업수리권 사이의 협력이나 이익교환과 관련하여서는 물관리위원회보다는 상급 단위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정부위원회 간 협업 사례는 없다.

- 물관리에서는 공론화, 즉 공청회나 토론회 과정에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권이나 녹조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소리가 반영되고, 필요한 전문가를 모셔 올 때 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섭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거시적인 쟁점에 관하여 문제제기와 소통이 이루어진다.
- 이번 5월 30일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녹조 세미나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그렇지만 물관리 건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SDGs 지표 및 세부목표에 관해서 협업 가능성이 있다.

- SDG에는 수리권, 녹조, 기후변화대응담 등 현안에 관한 세부목표와 지표는 없으니, 시대나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목표와 지표를 위해 협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위원회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해당 부처(담당과)가 지표를 개발하면 물관리위원회(정책소위원회 등)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 국가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녹조나 수리권에 관한 이슈를 다뤄야 한다면 단계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용수의 경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협의하고 나서, 관계 기관들과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현재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40명의 인원이 근무한다. 정부가 위원회 예산을 전액 지원하긴 하지만 위원회 자체는 중립을 지향한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勞·使·政)이라는 ‘3자주의’에 입각하여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노사정 갈등관리에 주력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공동번영’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움직이고자 한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고, 의제상의 우선순위가 경쟁되기는 한다. 본 위원회는 행정계획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전임노조원 근로시간 면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일반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안건을 3년 단위로 심의하였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1998~2007)에서 출발하여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7~2018)를 거쳐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발전하였다.

2) K-SDGs 연계성

- SDG 8(일자리와 경제성장)과 관련되지만,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관해 다루긴 하지만, 이른바 ‘3자주의’에는 대립 관점이 존재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하 특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가 각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 본위원회로 올리긴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신 노사관계를 중심에 둔다.
- 시대상황에 따라 노사관계 법령안이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는 있지만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뻔하기도 하였다.
- 좋은 일자리에 관하여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 ‘좋은 일자리’라는 담론에 해당하는 ILO의 지표로서 바라본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은 없다.

-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과거 일자리위원회(2017~2022),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2022), 녹색성장위원회(2009~2021)와 유사한 직역을 가졌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탄소중립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인 협업은 담당 부서의 역할로 보인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사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작동하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SDG 세부목표나 지표 관련 의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기획실(규제개혁담당관)에서 관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SDG 5 관련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남녀 임금격차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각각 처한 여건이 달라서 전체적인 조율은 곤란하다. 경력단절 극복이나 생애소득 실천과 같은 개념들을 실행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아쉽게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SDG 세부목표와 지표들⁸⁸⁾이 잘 작동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비율을 특정하고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한다.

마. 양성평등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설립되어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있다.

- 국무총리가 단독 위원장을 맡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를 전담하는 사무국은 없고 여성정책과의 담당관 2명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부처 중심’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 위원회 특성상 여성 전문가들이 6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이 여성인력 비율을 다룬다.
- 「성별영향평가법」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제13조)가 관할한다. 상장법인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은 DART(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사이트⁸⁹⁾에 공시되어 있다.

88) 편집자주: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8>. 특히 SDG 8의 ① 세부목표 8.5.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a) 지표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b) 지표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② 세부목표 8.6. “청년 니트(NEET) 비율 감소”: 지표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③ 세부목표 8.8. “노동권 보호 및 안정적 근로환경 증진”: 지표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89) <https://dart.fss.or.kr>.

2) K-SDGs 연계성

- 성평등 의제(SDG 5)는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다.

- 성평등 지표가 세부목표와 불일치할 때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평등 확보에 적절한 지표(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들이 여전히 미비하다. 유사한 예로,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들이 대두된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정책결정과정참여)에 따른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이 고위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관장한다.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본금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특정 성별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위원회 간의 협업은 아니고, 금융위원회 ESG 지표 수립할 때 부서 협조 경험이 있다.

- 금융위원회에서 ESG 지표를 수립할 때 여성가족부 담당관들이 양성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공시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한 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에게 의견을 회람하였는데 최종안은 아직 미완이다.
- 여성가족부 업무로서 여성국이 ESG 경영지원 일환으로 기업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채용·휴직 등에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 여성정책과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통하여 조직진단(1년차) → 개선책 마련(2년차) → 환류(feedback)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각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달라서 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다자간 협업은 더욱 그럴 것이다.

- 정부위원회들의 목표와 기능이 각각 근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협업이나 협력이 필요한 접점이 다소 애매하다. 양자간보다 다자간 협업에서 더욱 그럴 것 같다. 특히 실행 조직이 없는 정부위원회에서의 위원회 간 공동사업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0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제21조)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다.

-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상근)과 보건복지부 장관 2인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을 맡고 있다.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 직원은 현재 70여 명이다.⁹⁰⁾ 2024년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위원회를 주재하였고, 평소에는 부위원장이 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 2005년 법에 기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조직에 다소 부침이 있었는데,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정부부터 위원회가 힘을 받게 되었다.
- 과거에는 여성들의 저출산과 삶의 질이 중심이었다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이후 고령화가 부각되었다.⁹¹⁾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다. 관련 단체들과 인구위기나 저출생위기 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⁹²⁾을 체결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성과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K-SDGs 연계성

- SDG 3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관련되었는데, 주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분야가 그러하다.

- 본 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였을 때 노인 부문에서, 그리고 2024년 6월 양육 관련 대책을 세울 때 이에 대해 고려하였고, 인구일반·저출산·고령화 통계지표⁹³⁾를 활용한다.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나 지표 관련하여 이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무선을 넘어서는 과제로 보인다. 목표는 상향식으로 가더라도 지표는 하향식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총괄하는 쪽에서 먼저 제안하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산부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저출생과 노인문제에 주력하였다. 2026년부터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되는데, '사교육·좋은일자리·수도권집중'과 같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구조 개선을 하나의 주제로 포함하였다.

90) 편집자주: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introduction/organizationFunction.do>.

91) 편집자주: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92) 편집자주: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Activity/mou.do>.

93) 편집자주: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tatistics.do>.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와의 교류가 있었다.

•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을 입수하여 우리 업무에 참조한 적이 있다.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부터는 농어촌의 저출생 과제를 받기도 하였다. 상대 위원장님과 우리 측 부위원장님이 같은 부처 출신이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었던 것 같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정부위원회 간 협력 시라고 해도 부처 공무원 간의 협력 관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단계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부위원회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더라도 관계 부처 공무원들 간의 협력 관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위원회들은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소 유연하지만, 부처 공무원들은 외관상 정부위원회들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연중에 본인들의 권한을 방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나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도 평소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실무워크숍이나 위원회 간 연대회의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계적 소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관한 협력의제[초안]를 작성하여 다른 정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거시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의 변화 가능성에 공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가칭)'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사. 사회보장위원회

1) 주요 의제 및 활동 영역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관장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이다.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2) K-SDGs 연계성

- SDG 1, 10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되는 목표다. 그러나 SDGs가 없어도 사회보장 정책은 꾸

준히 지속되는 것이다.

- SDG 1, 10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된 목표인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 위계와 서열을 달리하는 정책과 법령에 따라 행정계획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다 보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목표나 지표의 개선이나 변경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SDG 세부목표나 지표가 없더라도 사회보장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여러 사회계층, 즉 노인·여성·모성·청소년·장애인 등⁹⁴⁾ 각각의 사회보장 주체들과 관련된 다수 계획들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문들의 개별 대책들은 여전히 분절적이라 볼 수 있다.

3) 타 위원회와의 협업 경험

- 직접적인 협업 경험은 없다.

4) 국가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 및 방법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로 새 정부의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어렵다. 타 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려했을 때 공동위원장을 총리가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2년이라 종료되었고, 또 현재 위촉권자가 부재 중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야 새로 출발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의 협력 사무를 가능하게는 쉽지 않다.
- 여러 정부위원회가 정책수요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본다. 일부 정부위원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화된 감도 있다. 국가위원회 활동이 지속가능성 국가기본전략이나 평가지표들과의 간격을 메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위원회 간 거버넌스를 이룩하려면 어느 단위에선가 (국가위) 책임을 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겠으나, 실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가위원회 위원장께서 민간인이시라면, 다른 정부위원회들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협업·협력 의제는 국가위원회가 발굴하면 좋겠다.

94) 편집자주: <https://www.ssc.go.kr/home/kor/contents.do?menuPos=45>.

아. 정부위원회 면담의 시사점

1) 정부위원회 상호 간 협업·협력을 위한 접점

- 그동안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의 당위성에 비하여 수요가 부족하였다. 각 SDG에서는 중첩이 불가피하나 세부목표·지표에서는 접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세계적 가치인 UN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를 기반으로 접점을 만들 여지가 있다.
- 국제목표·기본전략·증장기추진계획에 비추어 세부목표·지표를 점검한다. 보편적 국제지표와 국내 세부지표 간의 불일치나 부정합성에 주목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접점을 발굴한다.

2)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의 가능성과 실효성

- 경제주체들 간의 이익충돌이 일어나면 이익교환과 조정이 필요하다. 부처 간 혹은 위원회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리더십에 기반하는 정치적 접근과 법적·행정적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 그동안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 경험이 없었으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상호 협업·협력을 위한 행정적·절차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 행정적 접근은 작업반(TF) 등 실무 차원의 협업·협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의 한계와 대안

-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령안·증장기행 정계획을 넘어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각 정부위원회들은 고유한 SDG를 넘어 다른 SDG들과 연결된다. 다른 정부위원회들의 유형과 속성을 구분하여 공동 관심사를 발굴한다. 지향점이 다른 정부위원회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유보할 수 있다.

4) 협업·협력 의제의 발굴

- 각 정부위원회의 세부목표·지표만으로는 관련 의제가 미흡하다. 국가위원회가 정부위원회들의 현안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근거 법령들이 바뀔에 따라 구심점이나 위계·주류가 바뀌기 때문에 국가위원회가 능동적으로 협업·협력 의제를 발굴한다.

- SDG 간 불균형에 주목하고 평가가 없거나 뒤지는 부문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국가기본전략에 부합하는 세부목표·지표의 개선·변경을 추진한다.

5) 협업·협력의 실행경로

- 국가위원회가 정부위원회들에 대한 지원(outreach) 기능을 확대한다.
- 국가위원회 위원 혹은 전문위원을 관련된 정부위원회에 추천하여, 가교 역할을 통해 소통·교류한다.
- 실무선의 간담회·협의회를 거쳐 연석회의(joint meeting)나 협력약정(MOU)을 추진한다.
- 의제나 절차에 따라 정부위원회 외에 주무 부처와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2. 국가위원회 - 관련 위원회 간 협력 의제⁹⁵⁾

가. 국가위원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K-SDGs 7번(에너지 정책) 분야 정책수립 단계

● 추진 배경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20%, 2040년 35%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와 기술개발을 지원함.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부작용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석탄 및 원자력 발전 감소 등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연착륙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 강화 문제 대두.
- 국가위원회는 에너지 분야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설정하려고 하며, 이는 소관 위원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 필요.

● 협의주체

- 양자협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주요의제 ※ 목표와 비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예시)

- 목표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비전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추진전략1 :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
 - 추진과제1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추진과제2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 추진전략2 :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 추진과제3 :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 추진과제4 :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축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 추진전략 3 (이하 생략)

● 에너지 분야 협의 대상 일부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일부 예시)

분야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비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95) 본 절에서는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방안을 1개씩 제시함. 국가위원회와 다른 정부위원회 간 협력 방안은 [부록 5] 참조.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추진전략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과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존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지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국가에너지효율지표	건물에너지효율지표
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8.88%(현) • 2030 : 30% • 2040 :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5.8%(현) • 2030 : 12.0% • 2040 : 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0.0979toe/백만원 • 2030 : 미정 • 2040 :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2017년 대비 14.4% 저감
위원회 협의	양자협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협의의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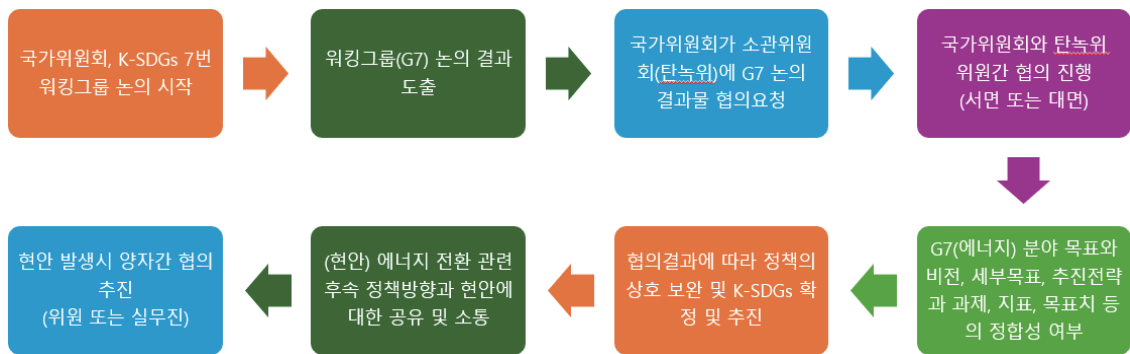
- SDGs 7번 목표와 비전의 적절성
 - 목표(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와 비전(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가? 탄핵위도 동의하는가?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세부목표 적절성
 - 세부목표(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는 적절한가?
-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적절성
 -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과 이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대’와 ‘친환경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탄핵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의 적절성(2018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88% → 2030: 30%, 2040: 35.0%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 미흡하지 않은가? 탄핵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②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의 적절성(2018년 현재 5.80%를 2030: 12.0%, 2040: 17.6%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 또한 다른 세부목표(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와 추진전략(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은 적절한가?
 - 다음 지표의 목표치는 적절한가?
 - ①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2018년 현재 0.0979toe/백만원 → 2030년, 2040년은 어떻게 할 것

인가? 탄녹위에서 가능한 목표치 제시 필요

② 건물에너지효율지표 : 2030년 2017년 대비 14.4% 저감하는 것이 적절한가? 2040 목표치
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K-SDGs 7번 목표 전반에 대해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관련 핵심위원회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에 협의 요청.
- 국가위원회에서 Goal 7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G7)의 논의 결과물(초안)을 토대로 탄녹위와 협의.
- 논의 대상은 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지표의 목표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 협의주체는 목표 수립에 참여하는 양쪽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담당관.
- 협의방식은 서면 검토양식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



[그림 20] K-SDGs 7번 의제(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양자 협의절차

2) 일상 추진 또는 점진 단계

● 협의 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 수립할 때 탄녹위와 협의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건물에너지효율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탄녹위에 지표 추진현황 점검요청(지표 점검표 양식 송부) → 탄녹위 내부적으로 지표 점검 및 국가위원회로 회신(향후 추진방향 포함) → 국가위원회는 현저하게 지속가능성에 저해하거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탄녹위와 정책방향에 대해 협의.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단계

● 협의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위원회는 탄녹위가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과정에서 국가위원회와 탄녹위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 파악 및 검토 일정 협의 →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탄녹위 심의 2~3개월 전) 국가위원회가 탄녹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안 송부요청 협의 → 국가위원회가 탄녹위로부터 송부받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30일) 및 필요시 탄녹위와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탄녹위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를 탄녹위에 회신 및 필요시 탄녹위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탄녹위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탄녹위가 반영결과에 대해서 국가위원회에 회신.

□ 지속가능성 검토 시 중점 착안사항

(국가위원회 자체 검토 가이드라인 참조)

* 국가위원회는 검토대상 중장기행정계획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착안사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가능

- 경제측면
 - 현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세대에 비용 전가 여부
 - 경제적 기회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주체 고려 여부
 - 농·어·임·축산업에 대한 경제적 기회와 영향 고려
 - 에너지와 물질소비를 줄이는 방식의 계획 여부 등
- 사회측면
 - 사회적 형평성의 보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증진 등
- 환경측면
 - 환경생태계에 대한 고려
 - 생물다양성의 보전 고려
 - 재생불가능 자원의 이용 제한
 -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의 적정성 등
- 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의 적절성
 - 지난번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검토의견 반영 여부
 - 계획수립 및 이행과정의 거버넌스 확대 여부 등

나. 국가위원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의제: K-SDGs 7번 '에너지 복지, 에너지 기본권 확립'

●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이를 위하여 국가위원회는 수립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 필요.

● 협의 주체

- 다자협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 - 저출산·고령사회위)

● 협의 대상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일부 예시)

- 추진전략 : 보편적 복지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
- 추진과제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

● 협의 의제 및 내용

- K-SDGs 7번 목표와 비전의 적절성은 국가위원회와 탄녹위에서 협의 완료
- 추진과제에 대한 주관부처 또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주관위원회는 탄녹위 또는 저출산·고령위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 목표와 비전을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의 적절성
 - 세부목표(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적절한가?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적절성
 - 추진전략 '보편적 복지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과 이를 추진하는 과제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는 탄녹위, 저출산·고령위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동의하는가?
 - ①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 2019년 현재 6.2%를 2030년 100만 가구, 2040년 200만 가구로 설정하는 것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인가? 탄녹위, 저출산·고령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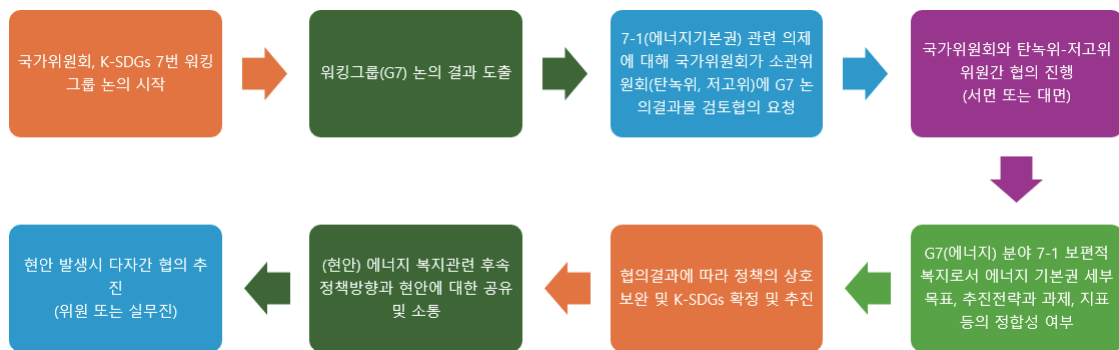
● 에너지 복지 부문 협의 대상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일부 예시)

분야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비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추진전략	보편적 복지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
추진과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
지표	에너지바우처 공급가구수
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현재) : 6.2% • 2030년 : 100만 가구 • 2040년 : 200만 가구
위원회 협의	다자협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협의 절차

- 국가위원회가 K-SDGs 중 에너지 복지 논의 시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에 협의 요청.
- 논의의제는 ‘에너지 복지로서 기본권’을 위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지표의 목표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적절성, 지속가능성 협의.
- 협의주체는 목표 수립에 참여하는 각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담당관.
- 협의방식은 서면 검토양식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 수립 이후 추진현황 점검과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앞서 양자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추진.



[그림 21] K-SDGs 7번 의제(에너지 복지, 에너지 기본권 확립) 다자 협의절차

1. 결론

한국의 SDGs 관련 법률들과 행정계획 등은 양적 측면에서 SDGs 시행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나 거의 모든 목표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 기후변화대응(SDG 13) 목표, 해양·수중 환경·생태(SDG 14) 목표 그리고 육상 환경 및 생물다양성(SDG 15) 목표는 국가별 이행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⁹⁶⁾ 우리 국가위원회가 2024년 12월에 간행한 『2024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⁹⁷⁾에 따르면, K-SDG 17개 목표 전체를 통틀어, 4단계 평가등급 중 ‘맑음’으로 평가된 지표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51.7%)로, K-SDG 지표 중 절반 정도에 대하여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 기본법은 정부와 국가위원회에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사명을 부여하였다. 다수 정부위원회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국가위원회에 통보하는 198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중장기 행정계획들의 3/4을 심의하기 때문에 국가위원회의 중요한 파트너들이다. 본 연구는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사무를 분석하여 핵심 위원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위원회별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전문가단의 델파이 조사와 연속포럼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국 지속가능발전 기구 현황 및 관련 조직 상호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조사 대상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정책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는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를 생태전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생태환경부 소속으로 독립적이면서 감시나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았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포럼[그르넬 환경포럼]을 환경지속가능발전감사원으로 변경하였다. 독일과 핀란드는 총리실에 지속가능발전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일본은 총리실에 전담팀을 두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보좌한다.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부처 간 차관보위원회’(The Interdepartmental Assistant Deputy Minister Committee)를 두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방향을 제시·조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진 우선순위로 꼽히는 SDGs는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10(불평등 해소),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및 목표 9(산업 성장과 혁신·사회기반시설 구축)이다.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정부

96) <https://www.iisd.org/publications/report/progressing-national-sdgs-2023>.

97)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2024 국가지속가능성 평가』(2024.12.), p.180.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다. 물론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위원회별 역할의 타당성 및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범주는 조정이 가능하다. 후자에 속하는 정부위원회로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가는 … 다른 법령에 …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과 …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이 원칙은 정부위원회들에도 통용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은⁹⁸⁾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들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소통,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국가위원회 사이의 통보·회신·반영 절차를 통하여 추진된다.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들 사이에도 법령에 모두 담기 어려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로들이 필요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마련하는 중앙추진계획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안들은 해당 정부위원회들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국가위원회로 통보됨이 바람직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으로는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자 할 경우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협력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결여된다.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은 경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⁹⁹⁾ 예컨대, 탄소중립의 요체인 에너지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¹⁰⁰⁾와 환경부¹⁰¹⁾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둘러싼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업과 협력 경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서도 이러한 부정합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행정계획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우회하는 공백 상태를 낳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관계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정계획간 연계가 필요한 사례에 속한다. 국가(국토교통부 장관)가 국토계획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국토기본법」 제5조제1항). 한편 국가(환경부 장관)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3항). 그러나 「국토

9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국가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2024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국가기본전략(2026년~2045년)은 현재 수립 중이다. 각 부처들이 수립하는 중앙추진계획은 국가기본전략이 모습을 드러내야 뒤따를 것이다. 지방추진계획과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등도 마찬가지다. 현존하는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매뉴얼」은 2022.8.1.(환경부) 간행본이다.

99)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중앙추진계획들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서 중앙추진계획의 부정합성을 가늠한다.

100) <https://www.motie.go.kr/kor/보도·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1.28.).

101) <https://me.go.kr/2025briefing>. (환경부 2025.1.15.).

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제8조)는 전통을 고수한다. 따라서 관련 정부위원회들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위원회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율에서는 유엔개발단(UNDG)의 권고를 참고할 수 있다.

유엔개발단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류화(Mainstreaming), 가속화(Acceleration), 정책지원(Policy Support)[MAPS]을 정립하였다. MAPS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중점을 두며, 파트너십, 데이터, 책임성이라는 교차요소들(cross-cutting elements)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¹⁰²⁾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나 관련 정부위원회들 간의 중첩이나 공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개별 SDG나 지표들 상호 간의 정합성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행정기관들이나 위원회들의 활동에서 서로 공통되거나 접점을 지니는 주제[예컨대, 일자리, 성평등, 기후행동, 탄소저감 또는 환경보전 등의 주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즉 교차쟁점(cross-cutting issue)으로 통합하여, 전체 정책이나 인식증진에서 주류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류화’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정착시키고, 국가, 지방 및 지역발전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예산 배분에도 적용된다. ‘가속화’는 주류화 과정에서 확인된 우선순위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함을 뜻하며, (의제의 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부문 간 상승효과와 상충관계, 병목현상, 재정 및 파트너십, 그리고 측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정책지원’은 유엔개발시스템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시의적절하고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¹⁰³⁾

우리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들은 협력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핵심 이해당사자들이지만, 정부위원회들은 여러 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호 간의 협업이나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본 연구 중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정부위원회들은 국가위원회의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원회들이나 소속 부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국가위원회를 활용한 경험이 없었다. 정부위원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국가위원회와의 협업·협력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나 지표들이 관할 사무들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국가위원회의 정보공유나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한다.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위원회 사무에 투입된 다수의 관계자들은 변화된 상황이나 여건에 따른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의 수립·변경·적용 명령을 적기에 숙지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고 국가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

국가위원회가 관련 정부위원회들과 협력 가능한 의제로서는 (가)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

102) UNDG-Mainstreaming-the-2030-Agenda-Reference-Guide-2017, Section A3 : MAPS : Mainstreaming, Accelera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14.

103) *Ibid.*

역격차 등 국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K-SDGs의 재설정, (4)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제를 들 수 있다. 국가위원회가 관련 정부위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경로로서는 (가)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의 구축, (나) 부처별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기능 복원, (다) 지방위원회 지원체계 마련, (라) 국가위원회 역할·위상 재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 관련 정부위원회들 간 협력이 가능한 사무를 ‘양자간’ 및 ‘다자간’ 의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부위원회 간 협업·협력은 현행 체제와 의제만으로 완수되기 어렵고 일부 절차적 보완을 요한다. 국가위원회 본회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방향[국가기본전략 또는 중앙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모색하고, 중요정책[법령안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포함한다]을 조율하며, 주요한 교차쟁점들을 검토하고 평가결과 등을 점검하는 **고위급 책임관회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수평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 안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책조정소(小)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수직적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 사이의 고위급 협의회도 물론 가능하다. 이러한 행정적 접근을 위하여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지 아니하고도 대통령이 나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예규로 협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정부위원회 간 실무회의(작업단 Taskforce)의 운영**을 제안한다. 고위급 책임관회의가 실행된다면, 실무회의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대안으로서 사무처]은 다른 정부위원회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작업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정비 없이도 위원회 간 합의에 따라 또는 국무조정실장의 훈령이나 예규 등의 경로를 통하여 실행이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활용하면 정부위원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당초 네트워크 분석과 해외사례 조사 그리고 델파이 조사 및 연속포럼을 실시하여, 국가위원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정부위원회들의 기능을 분석하고, 위원회 상호 간 기능 중복 문제와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실태 및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위원회 간 협업·협력에 필요한 접근경로와 국가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국가위원회 역량 강화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련 법제도 개선수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정책기능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가) 중앙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나) 법령안이나 행정계획안에 대한 조율, (다) 관련 정부위원회들에 대한 지원·제안에 필요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다음에 직제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 대통령 비서관(지속가능발전담당) 임명 및 자문위원 위촉, (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제, (다) 국가위원회 간사위원, (라) 전문위원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 관한 법제 개선안을 성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네트워크 분석, 델파이 조사 및 연속 포럼에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향후과제로 미룬다.

2. 제언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위원회 기능분석에 따른 핵심 위원회 도출

1) 지속가능발전 주요 위원회(연관분석 결과)

- K-SDGs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는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10개 이내의 위원회이며, 이들의 전략적 연계가 SDGs 정책 실행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합성, 부처 간 시너지, 성과 중심의 SDGs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심층 분석을 진행한 11개 정부위원회는 K-SDGs 세부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연관성을 살피는 한편, 다양한 위계를 고려하였다. K-SDGs 17개 목표 및 4대 전략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와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G2, G7, G9, G11, G12, G13에 연관되며 번영, 환경을 주로 다뤘음.
 - 양성평등위원회는 G4, G5, G8, G16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 평화/협력 분야를 주로 다뤘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G1, G3, G4, G5에 연관되며 사람을 주로 다뤘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G1, G2, G10에 연관되며 사람을 주로 다뤘음.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G6에 연관되며 환경을 주로 다뤘음.
 -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G3, G9, G11, G12, G15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 환경을 주로 다뤘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G2, G6, G14에 연관되며 번영, 환경을 주로 다뤘음.
 -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G4에 연관되며 사람 분야를 주로 다뤘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G14, G16, G17에 연관되며 환경, 평화/협력을 주로 다뤘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G3, G4, G16에 연관되며 사람, 평화/협력을 주로 다뤘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G8, G10에 연관되며 번영, 사람을 주로 다뤘음.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국정 비전과 철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적 과제를 다부처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위원회 설립 취지와 소속(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에 맞게 정부위원회와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간 발생하는 중첩 지점에 대해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호 원활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선 영역	제안 방안
검토체계	수립단계부터 사전검토기준 협의 및 검토 참여
협업방식	위원회 간 교차 참여(협의) 및 가치 공유
정보연계	지속가능발전포털 고도화, 합동 포럼 운영
실행역량	사무국 확충, 예산 확대, 위원회 중심 독립적 활동 강화
거버넌스	17개 목표별 다양한 소관 위원회들과 협업 구조 마련

2) 각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가능성

-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각 위원회의 기능, 소관 법령, 심의 기능 유형, 예산 및 사업 내용을 종합하여 K-SDGs와의 기여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관련 핵심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할
통합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K-SDGs 조정·점검 총괄
기후·환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환경 전략 수립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사회 포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용사회 조성, 취약계층 대응
	사회보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노동·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 및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
물·생태계	국가물관리위원회	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글로벌 SDGs 연계 외교전략

- 상기 위원회는 변화될 수 있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 공유와 정책협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국가위원회와 타 정부위원회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1) K-SDGs 역할 분담 방안

(1) 현황

- K-SDGs는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통합 목표로서, 다수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중첩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 따라서 업무의 중복은 피하고 효율적 협업을 통해 정책 정합성, 예산의 낭비 방지, 실질적 SDGs 이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추진 방향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위원회 간 기능의 구분이 필요하다. 큰 원칙은 국가위원회는 K-SDGs 관련 기본전략과 정책의 총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소관 분야 정부위원회는 실제적인 추진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영역	주체별 역할과 기능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소관 부처
K-SDGs 기본전략	기본전략 수립 총괄, 조정 / 심의	소관 기본전략 검증	전략 내용 수립 및 추진
K-SDGs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조정 및 협의 / 심의	소관 추진계획 검증	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지표 평가 총괄 / 심의	소관 지표 평가 및 점검	소관 지표 관리 및 데이터 취합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검토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 마련(송부)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 반영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립(변경)
일상정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의견 제시	관련 정책의 일상 추진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추진

2) K-SDGs 달성을 위한 협업 방안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 고려사항〉

- K-SDGs 수립 시 공동으로 목표 설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K-SDGs의 세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행역량을 보유한 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또는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함.
 - 예: 기후정의 목표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생물다양성 목표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설정.
- 정부위원회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협업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국가위원회는 총괄 조정자 역할로서 K-SDGs의 방향성, 주요 전략목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개별 정부위원회는 해당 세부목표의 실행 책임 주체로서 실질적 추진과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분담은 책임의 명확화 및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조정 거버넌스를 형성함.
- K-SDGs의 성과 공유 및 공동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세부목표에 대한 성과는 소관 정부위원회가 작성하되, 국가위원회는 이를 종합·통합하여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을 구성함.

- 공동 책임에 기반한 위원회 간 수평적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 지속가능발전은 다차원적이며 교차적인 이슈이므로, 개별 위원회 단독 추진은 한계가 있음.
 - 국가위원회는 이를 전제로 하여 공동 책임과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협의체(예: 공동 포럼, 연석회의, 협업 로드맵 등)를 운영해야 하며, 정부위원회 간 중첩 의제 조정, 협업 시범 사업 발굴, 공동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등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1) K-SDGs 목표설정 및 지표관리 체계화

① 문제점 및 한계

- K-SDGs 지표의 실효성과 실행 책임이 불분명하며 정부위원회별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 기본전략 수립 내용만을 보자면, 일부 목표는 지표만 존재하고 이행 전략이나 평가 방식이 부재한 경우도 존재한다.
-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다.

② 추진 방향

- K-SDGs 목표 및 지표 설계 시 해당분야 전문성이 높은 정부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목표별 지표관리와 성과 평가를 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운영한다.

③ 세부 실행안

- K-SDGs 수정·보완 시 숙의 공론장 개최를 통해 관련 위원회, 전문가,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참여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
- K-SDGs 관련된 개별 정부위원회는 해당 목표의 지표관리와 중간 점검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국가위원회는 종합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 환류 기반의 정책 개선 제안 기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한다.
- 국가위원회는 성과지표 이행 상황을 반영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와 연계한 정기 평가 체계(2년 주기)를 운영하되, 숙의공론장을 통해서 추진토록 한다.

④ 기대효과

- 정부위원회별로 해당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 및 정책 개선 연계를

높일 수 있다.

(2)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의 내실화

① 문제점 및 한계

- 정부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이 최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주관부처가 지속가능성 사전검토를 인지하지 못하여 검토 없이 수립하기도 한다.
- 국가위원회 검토 결과의 반영 강제력이 없어 실행력이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지속가능성 검토의 기준을 몰라 담당부처에서는 초기부터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중장기 행정계획을 최종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 간 공식협의를 사실상 없다.

② 추진 방향

-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검토 권한을 실질적인 협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사후 반영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③ 세부 실행안

-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 부처 및 해당 위원회 대상 연간 검토 로드맵을 공유한다.
- 필요시 중장기 행정계획 심의 소관 위원회와 공동 검토체계를 구축(예: 환경계획은 환경정책위와 공동 협의)하여 공동으로 점검하거나 협의를 추진한다.
-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검토 총괄팀을 두고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한다.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처 협의 및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기대효과

-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정부 차원의 위원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① 문제점 및 한계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위원회 또는 관련된 100여 개 정부위원회 간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상호 접근성 및 연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 간 유사성을 파악하는 도구가 부족하여 연계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 정보공유 체계가 현재까지 수기·문서 중심으로 자동화 기반이 부족하다.

② 추진 방향

- 정부위원회 간 주요안건, 정책 의제, 정책 연계, 성과공유,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한다.

③ 세부 실행안

- 1단계로 현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보(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반영결과, 지표, 주요정책 등)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편.
 - 부처 행정계획에 SD 가치 반영 수준을 자체평가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소관 위원회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등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주요 정부위원회의 정책자료, 회의록 등을 제공함.
- 2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위원회 간 협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가 생산한 정책자료 및 회의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 K-SDGs와 연계된 100여 개 위원회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의 정책자료, 회의록, 의결 사항, 예산 배분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주제·위원회·부처·연도별로 분류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통해 정리함.
 - 기존 문서 중심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위원회 간 정보 접근성과 상호참조 가능성을 높임.
 -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 대시보드 및 정책 브리프 플랫폼을 운영함. 정책 실행현황, 성과지표, 담당 위원회, 연관된 법령 또는 계획 등 핵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구축함. 해당 플랫폼은 각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브리프 요약, 연계 계획, 피드백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대국민 공개 혹은 내부 협업용으로 분리 운영함.

- 3단계로 정부위원회 간 온라인 협업 공간을 구축한다. 위원회별 간사, 실무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의제 협의·자료 공유·의견 조율이 가능하도록 전용 협업 플랫폼(예: 클라우드 기반 포럼 혹은 슬랙형 협업 채널)을 구축한다.
 - 주제별 실무 포럼, 공동 정책 분석 작업 공간, 피드백 교환 기능 등을 통해 정책 수립 전 협의-검토-조율의 흐름을 디지털화함.
 - 정책 간 연계성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개발함. K-SDGs 17개 목표 및 하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각 위원회의 정책을 연계 분석하여, 정책 간 중복 여부, 연계 가능성 등을 자동으로 도출해 주는 분석 툴을 개발함.

④ 기대효과

- 위원회 간 정보 접근성 향상, 위원회 간 실질적 협업과 연계 정책 설계의 활성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행정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한다.

(4) 정부위원회 연석회의 및 실무협의체 제도화

① 문제점 및 한계

- 정부위원회 간 정보 공유 및 정책 의제 연계가 매우 제한적이며, 위원회 간 일관된 조정·협의 메커니즘 부재로 인해 정책의 공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 일부 간헐적 회의 또는 행사성 포럼 위주로 진행된 경우도 드물며, 정례화·제도화된 협의체가 없어 실질적 협업을 구현하기 어렵다.

② 추진 방향

- K-SDGs 중심 정책과제의 효과적 이행과 범정부적 연계를 위하여, 각 위원회 고위급 연석회의, 분야별 실무협의체, 중앙-지방 책임관 협의체를 제도화시킨다.
- 이를 통해 위원회 간 중첩·접점 과제를 조정·분담하고, 공동 사업 발굴 및 협력 이행 구조를 상시화한다.

③ 세부 실행안

- 주요 정부위원회 간 K-SDGs 세부 목표 또는 교차의제(예: 기후정의, 저출산 대응, 취약계층 포용 등)를 기준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협의체에서는 공동 추진 의제, 역할 분담, 협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성과 공유 및 평가체계

를 함께 운영한다.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정 주요 부서(대통령실 정책실, 국무조정실 등)가 주관하는 반기 1회 이상 고위급 연석회의를 정례화한다.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을 수 있다.
- 해당 회의에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밀접한 10개 내외 핵심 위원회(예: 탄소중립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가 참여하여, 정책 방향 조정, 중첩 의제 조율, 공동 전략 수립을 논의한다.
-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G) 등 K-SDGs 핵심 영역별로 분기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실무협의체는 국장급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정책자료 교환, 이행현황 점검, 공동 보고서 작성, 협업 사전 조율 등을 담당한다.
- 중앙정부와 시·도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 책임관 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한다. 지방단위 연찬회, 지역 K-SDGs 포럼 등과 연계하여 지역 실행사례 공유, 지자체 정책 수요 반영, 공동 시범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4 기대효과

- 위원회 간 정책 효과성 증대,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 기후위기, 저출산, 양극화 등 복합 쟁점에 대하여 위원회 간 연계·협업을 제도화함으로써 단절적 대응에서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 정책 연계성 및 일관성 강화, 지방정부와 실행력 있는 연계를 확대할 수 있다.

다. 국가위원회 역할 정립

1) 국가위원회 역할과 방향

① 국정철학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연결하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심의기구이다.

- 국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정철학을 제도화·전략화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보좌기구로서 기능하며, 국가 정책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점검을 총괄한다.

- 위원회는 K-SDGs의 국가화(국내 이행 목표화)와 연동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실천계획 수립, 실행점검 및 이행 평가까지의 전주기를 총괄한다.

- 이를 통해 국가 전략과 중장기 행정계획 간의 목표 일관성 및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중앙정부 주요 행정계획·법령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을 수행한다.

- 중앙정부가 수립·변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및 주요 법령 제·개정 시, 그 내용이 K-SDGs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부합성을 갖는지를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를 통해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속가능성 관점이 내재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 지속가능성의 주류화 및 국가위원회의 기능 고도화

① 문제점 및 한계

- 각종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 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후속 피드백 체계 및 책임 추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고려가 법령상 요구되나, 실제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정합성 검토나 평가 절차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

② 추진 방향

- 국가위원회를 국정철학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로 위상을 정립한다.
- 국가 중장기 행정계획 및 법령 검토 시 지속가능성 반영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조정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정·감시·검토 기구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③ 세부 실행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년) 및 중앙추진계획(5년)이 관련 국가계획 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최상위 기준[지속가능성의 주류화]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중장기 행정계획, 주요 법령 제정·개정 시 이러한 방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 중앙부처는 매년 1월, 당해 연도 수립·변경 예정인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취합해 우선 검토계획을 수립한다.
- 목록은 분야별(환경·사회·경제 등)로 분류하고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은 공동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다.
- 국가위원회는 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속가능성 검토결과를 공식 회신하고, 부처는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반영 회신서' 형식으로 재송부하도록 한다. 반영이 어려운 항목은 국가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검토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며, 향후 정책 조정 및 협업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책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 중복·오류 사전 예방, 국가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지속가능성 기반 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

① 현재 문제점 및 한계

- 국가위원회가 국가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전문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제4항에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

② 추진 방향

-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세부 실행안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기관이 지속가능발전연구실(본부, 센터)을 설치하고 연구인력 10여 명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국가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
 -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조사 연구 지원
 -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
 - 국가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 국가위원회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정례적 협의를 추진한다.
 - 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두 기관의 정례적(분기별) 워크숍 개최
 - 각종 지속가능발전 현안 이슈 대응과 국가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협력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협의 등

④ 기대효과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으로 국가위원회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 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사무처 독립성과 전문조직 확대

① 현재 문제점 및 한계

- 현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소속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정책 조정·기획·모니터링 기능 수행에 있어 정치적 자율성과 조정권한이 제한적이다. 소규모 조직으로 다양한 정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 현재 팀 체계는 K-SDGs 17개 목표별 대응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행단위로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추진 방향

-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대통령 국정철학 내재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을 위원장의 상시 지휘를 받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 특히 K-SDGs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실무팀을 세분화하고, 기획-집행-점검 기능을 포괄하는 상시적 정책 조직체계로 재편한다.

③ 세부 실행안

- 기존 국무조정실 산하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지속가능발전 사무처’ 또는 ‘기획운영실’로 승격 및 독립시키며, 필요시 대통령실 직속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무처장은 정무직 임명 또는 대통령실 비서관 겸직 방식으로 위상을 격상하여, 타 위원회 및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협의 및 조정력을 확보한다.
- 조직 기능 세분화 및 전담팀 확대가 필요하다. 즉, 전문가들을 임용한 해외사례 또는 2050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전략 수립과 점검·평가, 지방지원, 홍보협력 등을 강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구분	현행	개선
사무처 명칭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국가위원회 사무처
총괄책임자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정무직
직제	3팀	직제와 인력 확대 개편
인원	10명(파견인력 포함)	

- 필요시 부처 간 공동 기획과제 발굴, 시범사업 조정, 정책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운영한다.

④ 기대효과

- 정책 기획 및 전략조정 기능의 상시화를 통해 국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 각 부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2)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1) 지속가능발전주간 및 사회 인식 제고 캠페인

① 문제점 및 한계

- 공직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반영이 높지 않다.
- 지속가능발전(K-SDGs)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 수준이 낮아, 정책 이행에 필요한 시민 참여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 지속가능발전 주제의 캠페인이 부처별·지방정부별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국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상징적 홍보 주간이나 미디어 연계전략이 미흡하다.

② 추진 방향

-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발전주간(Sustainability Week)’을 지정하여 범사회적 대국민 홍보 및 시민참여 확산 전략을 전개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공동 주관하고,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전국적 참여형 캠페인 체계를 구축한다.
-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미래세대에서 고령세대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이 되도록, 세대별 정책 참여 플랫폼과 세대 간 통합적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③ 세부 실행안

- 매년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정례화하여 실행한다.
 - 매년 특정 주를 ‘지속가능발전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상징성과 반복성 있는 공공 인식 확산 구조를 마련함.
 - 대통령 메시지, 중앙부처 행사, 민관 공동선언, 국회 토론회, 정책박람회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 정책 행사 주간으로 운영함.
 - * 최초로 2007년 10월 4일부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제1회 지속가능발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였음. 이후 이어지지 않다가 2019년 환경부 주관으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을 다시 운영한 적이 있었음.
 - * 10월에 국한할 필요 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4월(지구의 날 주간), 6월(환경의날 주간), 9월(유엔총회,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주간, 유럽 지속가능발전주간, 글로벌 목표주간) 등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주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지방-시민사회가 연계하는 기획행사를 운영한다.
 - 국가위원회가 캠페인 기조 및 메시지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자체 캠페인 및 지역 거버넌스 행사(포럼, 박람회, 플로깅, 마을실천 등)를 병행함.
 - NGO·교육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형 공동 기획 행사(시민토크, 리빙랩, 시민실천 사례 발표대회 등)를 지원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재개발원은 지속가능발전 과정 또는 강좌를 의무화한다.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인재개발원의 주요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실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설계' 등을 개설.
- 광역지방정부 인재개발원에 '지속가능발전 이해과 실행' 과정 개설 및 운영.
- 국민 참여형 공모전 및 콘텐츠를 확산한다.
 - 전 국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UCC 대회, 대학생 정책제안 경진대회, 가족 단위 ESG 실천 일기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콘텐츠 공모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소셜미디어 캠페인을 강화한다.
 - SNS 챌린지, 카드뉴스 시리즈, 유튜브 숏폼 릴레이 등 온라인 기반 캠페인 채널을 다양화하여 청년·MZ세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및 결과를 환류한다.
 - 매년 '지속가능발전주간' 종료 후 '국민 인식조사(정책 인지도, 실천경험, 기대효과 등)'를 실시하여 정책홍보 개선과제 도출 및 캠페인 설계에 반영함.
- 청년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성 정책캠프를 정례화한다.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활동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사회 현안을 연결하는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 캠프를 개최함.
 - 전문가 멘토링, SDGs 분석, 실제 행정과 연계된 시범과제 도출 등을 포함하여, 정책 실험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 시범사업 또는 정부위원회와 연계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 경로를 마련함.
- 생애주기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로 적합한 지속가능성 이해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교육 내용은 연령에 따라 환경, 기후, 성평등, 경제정의, 사회적 돌봄, 건강 등 다양한 K-SDGs 주제를 포함하되, 참여자 중심, 체험형, 실천연계형으로 구성함.

④ 기대효과

- SDGs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유도한다.
- 세대별·지역별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2) 지속가능인증제 정착 및 확산

① 문제점 및 한계

- 법적 추진근거는 있으나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중심으로만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모델이 없어 전국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단체, 기업, 공동체, 사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② 추진 방향

- 도시, 기관·단체, 사업 프로그램 등 각종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③ 세부 실행안

- 지속가능도시 인증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한다.
 - 국가위원회 주관으로 환경, 사회, 경제 분야를 통합한 지속가능 도시 인증지표 마련.
 - 기존 K-SDGs와 연계된 핵심 지표(예: 온실가스 감축률, 녹지율 등)를 구성함.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와 협업하여 평가 매뉴얼 마련.
- 지속가능도시 인증제 운영 및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연 1회 공모 및 신청 접수 → 서면평가 + 현장심사 + 종합심의 절차 운영.
 - 인증 등급 부여: 예) 1등급(선도), 2등급(도약), 3등급(기초).
 - 인증 도시에 대해 재정지원(예: 국고보조사업 연계), 중앙정부 홍보, 국제사례 교류 기회 제공.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주요 프로그램 등을 인증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단체 : SDGs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1년 이상의 성과와 실적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속 지정 가능.
 - 프로그램 또는 사업 : 3개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한해 인증.
- 인증제 운영성과의 정책 연계 및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 인증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에서 정기 공유.
 - 성과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 SDGs 이행보고서(VNR) 및 K-SDGs 성과관리 체계에 연동.
 - 우수 정책은 타 지역 벤치마킹 대상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

④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지역모델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인식을 제고한다.
- 민관 협력 기반과 실행력 있는 도시모델 발굴로 중앙-지방-민간 간 연계된 지속가능발전 생태계를 조성한다.

(3) 지방 실행력 강화 및 지역 확산 전략

① 문제점 및 한계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별 추진 편차가 크다.
- 지역 간 행정·재정 격차로 인해 실행력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기반의 격차가 크며, 대부분 자율적인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

② 추진 방향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실행역량을 제고하여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실천 구조를 강화한다.

③ 세부 실행안

- 매년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 지속가능도시 발표와 우수사례 공모전을 도입하여 지역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확산한다.
-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원(가칭) 등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업, 전략수립, 평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컨설팅을 실행한다.
- 지역사회·대학·언론·연구기관이 연계된 각급 단위 공론장을 연례화한다.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화형 교육·체험 활동으로 연계한다.

④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실현과 지방정부 실행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시민 참여 기반 확대와 생애주기별 실천력 강화, 지역 간 정책격차 해소 및 전국 확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4) 국가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① 문제점 및 한계

- 국가위원회 위원 및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직원들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관계자이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숙지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전략 수립과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국가위원회 구성원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로 공동의 비전 공유가 어렵다.

② 추진 방향

-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획·조정·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과 실무조직의 전문성과 협업역량을 제고한다.
- 국가위원회 위원과 추진단 구성원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통의 지향점을 형성하고, 정책 추진의 내부 동력을 확보한다.

③ 세부 실행안

- 국가위원회 위원 및 지속가능발전추진단(대안: 사무처) 대상 연례 전략 연찬회 및 실무 워크숍을 정례화(연 1~2회)한다.
- 지속가능발전 철학, K-SDGs 구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위원회 협업체계에 대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추진단 대상 정책 설계, 협업 조정, 성과 평가 등 전문직무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지방 실무자와 공동 워크숍 및 합동 포럼을 구성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거나 분야별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환경, 경제, 사회, 제도 등 주요 분야별 역량강화와 위원회 역할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위원회 운영 매뉴얼 및 협업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한다.

④ 기대효과

- 국가위원회의 정책설계 및 조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위원과 추진단 간의 지속가능성 철학 공유 및 실행력을 강화한다.
- 정부위원회 및 외부 파트너와 협업 수행능력을 향상한다.

(5) 지속가능성 개념의 헌법 반영

① 문제점 및 한계

- 지속가능발전은 궁극적인 국가 운영의 핵심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개념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환경·사회·경제 간 균형, 세대 간 형평, 미래세대 보호 등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가 국가 비전이나 법치국가 원칙에 반영되지 않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 또한 정책의 지속성, 책임성, 미래지향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근거 부재는 제도 설계와 평가체계 마련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② 추진 방향

- 지속가능성 개념을 헌법 전문 또는 기본권 조항에 반영하여, 국정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 국가 운영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한다.

③ 세부 실행안

- 헌법 개정 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포함한다.
 - 헌법 전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 명시.
 - 국정 운영의 기본이념 항목에 지속가능성을 별도 원칙으로 삽입.
- 헌법 외에도 국가비전·각종 기본계획·정부업무평가 기준 등에 지속가능성을 기본 철학으로 명문화한다.
- 국회 및 개헌 논의 기구에 지속가능성 항목 반영을 촉구한다.

④ 기대효과

- 헌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비전으로 명문화하고, 모든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책임성을 제고한다.
- 미래세대 보호 및 세대 간 형평 실현을 위한 헌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성 중심의 국가전략 수립·평가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6) 정부 업무평가 시 지속가능성 개념 반영

① 문제점 및 한계

-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행정의 핵심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포괄성, 추상성, 장기성 등으로 정부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정부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이 부차적 요소로 취급되어 정책의 질과 방향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

② 핵심 내용

-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에 반영하여, 국가운영 철학과 행정체계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한다.
- K-SDGs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 행정 실행체계를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

③ 세부 실행안

-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지침」에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 부처별 행정계획과 정책과제에서 K-SDGs와의 정합성, 지속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평가.
 - 정성·정량지표 병행을 추진함. 즉 정책지속가능성 점수, 협업 또는 거버넌스 수준 등.
- 지속가능성 우수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포상, 예산 가점, 우수사례 공유 등)한다.

④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법령·계획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의 방향성을 단기성과 중심에서 중장기 지속성과 사회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부록 1] 향후과제: 법제 개선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정부위원회 간 협업과 역할정립 방안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고, 국가위원회가 이러한 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증진 시킴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간 어떠한 사무들이 어떻게 증척되거나 반대로 사각지대[공백]를 보이는가, 그리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K-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위원회들을 추출하여 위원회 중심성 분석과 목표 중심성 분석을 기초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위원회 간 협업·협력 수요를 파악하였고, 국가위원회의 기능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분석 및 연속포럼을 개최하여 집단지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위원회들의 협업·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개편할 연구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상호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위원회가 정부위원회들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위원회를 넘어 국가위원회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지위와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법령안·행정계획·지표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들과의 거버넌스 내지 행정행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예컨대,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법 제7조)의 수립·변경은 국무조정실장이 총괄·조정한다(영 제2조제1항). 5년 단위 중앙추진계획(법 제9조)은 국무조정실장의 참여 경로(영 제4조제4항)가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법 제14조제1항)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법 제14조제2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가 관여한다. 하지만 법제상으로 국가위원회는 ‘검토’와 그 통보에 그친다. 그러나 국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능동적인 조정 내지 조율이 가능하고 국가위원회가 관련 정부위원회들에게 지원 및 제안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지만, 집단지성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경계도 존재한다. 국가위원회는 때로 법리상 ‘신분의 혼동’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른 한편 정부위원회 간 협업이나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들 간의 협업과 협력은 행정기관 상호 간 협력문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는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집단의 역량,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기반으로 삼는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통치와 달리 명령·통제로 실현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동으로 가능하다. 집단 구성원 상호 간에 사회자본 수준이 낮으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군에서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쪽(23개 국가 중 17위)으로 분류된

다.¹⁰⁴⁾ 자율 기반의 거버넌스에서는 기관 상호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력약정(MOA)이 활용되기도 한다.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균형 있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선과 함께 행정기관 상호 간 자발적 협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법제 개선론과 거버넌스론을 기능편과 직제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기능 개선론

가. 중앙추진계획의 협의·조정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의 협의·조정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창안에 달려 있다. 즉 어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 그 기관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기본법 제10조제1항). 국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묻지 아니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이에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능동적 조율을 위해서는 기본법(제10조)에서 국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조정 의견을 요청받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조사·검토를 실행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령안이나 행정계획안에 대한 조율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법령안과 행정계획에 대한 통보와 검토 절차를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국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법령안이나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6항). 그러나 이러한 ‘통보와 검토 결과의 통보’라는 한정적 절차만으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이나 정부위원회들과의 협력·협업을 위한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위원회와 교차쟁점(cross-cutting issues) 등에 관한 능동적인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법(제14조)이 개선되어야 한다.

104) 정갑영·김동훈,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한국경제포럼(한국경제학회, 2019), vol.12, no.1, pp.1-26.

다. 관련 정부위원회들에 대한 지원과 제안

현행 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영 제2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영 제4조④)에 관하여 정부를 대리한 국무조정실장에게, 그리고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법 제14조), 중앙추진계획의 점검(법 제11조), 지속가능성평가(법 제15조②)에 관하여 국가위원회에 책무를 지운다.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른 정부위원회들과 협업하거나 협력할 제도적 경로가 없다. 하지만 정부위원회들은 대부분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국가위원회에 통보하는 중장기 행정계획들을 심의하고 때에 따라 관할 부처들이 수립하는 법령안과 관련된 사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위원회는 해당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속가능발전 목표, 세부목표 또는 평가지표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들에게 현안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위원회들도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위원회 상호 간의 정책 연관성 내지 정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지원 서비스를 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령(제14조)을 개정하여 국가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위원회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협업·협력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위원회가 협력문화를 기반으로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협업·협력 방식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형식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위원회 간 양해각서의 체결 및 운영 요령은 다음과 같다. 모두 선택사항이다.

- (가) **협업·협력 목표의 명확화:** 협업·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나)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의 분담:**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한다.
- (다) **협업·협력 내용의 구체화:** 정보 공유, 공동 조사, 합동 사업 추진, 정책 조율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명시한다.
- (라) **협업·협력 절차 및 방식의 규정:**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실무 협의 채널 운영 등 협업·협력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마) **성과 평가 및 공유:** 협업·협력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2. 직제 운용론 및 개선론

가. 대통령 비서관(지속가능발전 담당) 임명 및 자문위원 위촉

내각책임제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법령안과 중장기 행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부처 장관들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 대안으로서 국무총리가 국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위원회 간사를 맡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율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도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라지만 대통령실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소통할 수 있는 인적 경로(파트너)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의 임명과 자문위원의 위촉은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¹⁰⁵⁾ 제5조(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및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로 가능하다.

나. 공동위원장

현행 국가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다(법 제18조제3항). 이는 국가위원회의 자발성과 유연성에서 기인한다. 입법 당시 입법자의 의사이기도 하다. 국가위원회가 감시자의 입장에서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법 제14조)을 검토하고, 중앙추진계획을 점검하는(법 제11조) 한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법 제15조②)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민간인 단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수립하는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능동적으로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다른 정부위원회들의 협업·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인 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편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 위해서는 기본법(제18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국가위원회 자체의 지위나 권능과 같은 핵심과제를 연구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또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이나 델파이 조사 및 연속포럼에서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아니하였다. 입법의견이나 해외사례만으로는 해당 법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다. 국가위원회 간사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기관들을 조율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사무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진단 구성원이 아닌 당연직(국무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임명하여 공동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을 맡

105)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34889호, 2024. 9. 10., 일부개정][시행 2024. 9. 10.]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민간인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가 필요하다. 법의 위계를 고려한다면, 「탄소중립 기본법」 제15조의 예¹⁰⁶⁾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간사위원으로 보함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제13조) 수정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국가위원회 간사로 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장을 국가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당초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네트워크 분석, 델파이 조사 및 연속포럼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입법의견 수준에 그친다.

라. 전문위원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국가위원회가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법령안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검토할 경우, 이것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부문 간(cross-cutting) 정합성 확보가 요청된다.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할 기구로서는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아래 전문위원회(법 제18조제5항; 영 제15조)가 있고, 외부 전문기구로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법 제27조제4항; 영 제22조)가 있다. 이들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위원회에는 고용·건강·교육·평등·사회복지·탄소중립·생태계 등 부문별 전문가들이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부문별로 특화시켜 정부출연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회의 활동분야(법 제18조제5항)와 정수 및 임면권자(영 제15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해당 전문가들이 비상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충족되기 위하여서는 종래와 같이 비상근 겸직 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국가위원회 체제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임기, 자격, 근무방식, 처우와 신분보장이 병행되어야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모법(제27조제4항)에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이라는 역할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지정·운영을 대부분 국무조정실장의 고시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재위임한다(영 제22조제3항). 감독사무도 고시에 위임된다(영 제22조제5항).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상의 연구센터 관리 체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향후 연구센터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협동연구개발법」이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과학기술기본법」과 「연구성과평가법」이 적용될 것인가는 국무조정실장의 고시[운영기준]를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부처별 국가R&D법령·지침’¹⁰⁷⁾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만 나타난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종래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을

106)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107) <https://www.ntis.go.kr/rndtrend/rndlaw/lawList.do>.

훈령으로 정하였고, 산하기관들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인 연구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현재로서는 연구센터에 관한 법제 개선 수요가 파악되지 아니한다.

운영기준의 운용방향을 가늠하자면, 연구센터는 외부 기관인 만큼 행정법상 우월적 관계나 행정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계약관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연구센터와의 용역계약은 다른 한편 포괄적 역무공급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 서로에게 적용되고 「조달사업법」(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 등이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록 2] 12개 위원회 조사 자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2022.7.5.)

위원회 설치일자

- 2024년 10월 1일

설치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주요사업

-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작성·공표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이해관계자 협력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거버넌스
-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55명)

위원장 (임명권자)	• 정철영(대통령)
공무원 (총 12명)	•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민간위원 (총 43명)	• (위촉직) 26명 - (분야) 학계 11명, 연구기관 8명, 산업계 5명, 시민단체 1명, 기타(변호사) 1명 - (별도구분) 여성 10명(38%), 비수도권 9명(35%), 청년 0명(0%) • (당연직) 17명(17개 시·도 지방위원장)
분과 (5개)	• 지속가능발전 전략전문위원회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문위원회, 포용적 사회 전문위원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대응 전문위원회, 이해관계자 협력 전문위원회

- 위원회 운영인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총 10명) *파견 인력 포함
 - 단장(경제조정실장 겸임)
 - 3개팀 : 기획총괄(4명), 경제협력팀(2명), 사회기후팀(2명)

□ 예산(천원)

- 2025년(안)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및 유형자산
628,000	-	425,900	-	2,100	-	200,000	-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423,600	93,600	-	330,000	245,200	5,200	-	240,000
2024년	729,000	79,000	-	650,000	590,509	50,133	-	540,376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4년	6	1	1	-	5	5	-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보고 	11.14.
전략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안건 검토 등 논의 	11.4. 12.4.
경제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안건 검토 등 논의 	10.24.
사회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안건 검토 등 논의 	10.28.
기후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안건 검토 등 논의 	10.2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2024.10.22)

위원회 설치일자

- 2010년 1월(녹색성장위), 2022년 3월 25일(탄녹위)

설치목적

-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주요사업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주요 심의·자문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 이행현황의 점검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52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한화진(대통령)
공무원 (총 22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민간위원 (총 30명)	● (분야) 학계18명, 연구계6명, 산업계3명, 시민단체1명, 국제기구1명, 법조계1명 ● (별도구분) 여성 6명(20%), 비수도권 12명(40%), 청년 1명(3%)
분과 (5개)	● 총괄기획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 위원회 운영인력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총 58명)
 - 사무처장(국무조정실 2차장 겸임) 및 사무차장
 - 4개국, 2개관, 8개과, 6개팀

□ 예산(천원)

- 2025년(안)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및 유형자산
5,049,000	682,775	3,482,132	206,860	143,633	129,600	200,000	21,364 20,000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5,789,000	2,694,000	3,095,000	-	4,399,000	1,809,000	2,590,000	
2023년	5,724,000	3,197,000	2,527,000	-	4,880,000	2,634,000	2,246,000	
2024년	5,165,000	2,752,000	2,413,000	-	2,869,000	1,342,000	1,527,000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58	2	1	1	56	51	5
2023년	50	6	4	2	44	36	8
2024.9	32	2	1	1	30	26	4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결과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NDC 수립 추진계획(안) (보고) •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종합보고 (보고) 	7.10 (서면)
총괄기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안) • 탄소중립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안) 	7.11
온실가스감축분과위	• 온실가스 감축 분과 운영계획 등 검토	2.14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검토	3.22
	• 2035 무공해차 전환전략 심의 등	4.12
	•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안) 검토 등	5.27
	•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계획 검토 등	7.2
	• 제4차 배출권거래제 수립방향 검토 등	7.24
	• 제3차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등	9.6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검토의견 통보(안) 검토 등	9.30	

구 분	주요안건	개최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E 추진현황 계획 및 보고 •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 보고 • 제1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산업 발전전략 • 수소 정책방향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형태양광 도입전략(안) 보고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결과 보고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보고 • 제6차 품질경영종합시책 심의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보고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원(DR) 시장 운영현황 • VPP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검토 	9.9~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검토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검토의견 통보(안) • 격년투명성보고서 	9.30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 주요 업무일정 •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추진방안 •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권역별 포럼 개최계획 •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 산업 공급망 CF(carbon-free) 역량 강화 방안 •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관련 세미나 추진계획 • 넷제로 프렌즈 제2기 추진계획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추진상황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종합보고(안) •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후속조치 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 계획 - '24년 5~6월 분과 내 전문위 회의 주요내용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검토 •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포럼 개최계획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안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차 전기본 검토의견 통보(안) • 격년투명성보고서 	9.30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8 주요성과 및 COP29 추진방향(안) • 환경부 예타사업 경과 • 국제감축 사업 추진계획 • 경제산업기술과 주요업무 현황 •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추진방안 •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점검 계획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계획(안) 설명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총괄보고서 설명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베 간 국제감축사업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무상원조 분야 그린 ODA 현황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결과 『AI 기반 그린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결과 	6.17

□ K-SDGs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30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2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2-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7-1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7-2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7-2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전력정책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7-3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국토부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7-3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부·국토부
(1) 친환경차 확대 수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7-4		한국교통연구원	환경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7-4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9-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수소경제위원회의(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환경부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 비율		9-5		한국환경연구원	산업부·환경부
(3)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톤/일)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1-6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
(1) 자원순환기초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2-1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환경부·산업부·중기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국내 1인당 자원 소비량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2)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1) 식품 손실 지수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2-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2-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폐기물의 원천예방과减量,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2-5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폐기물의 원천예방과减量,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2-5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2-6		산업연구원	산업부·중기부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로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2-9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로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2-9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2-11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3-1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행안부·해수부·기상청·농촌진흥청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13-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기후변화에 대한 조차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3-2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13-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3-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3-3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업부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3-4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국조실·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농촌진흥청·신림청

양성평등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2015.7.1) 및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8조(2015.7.1)

위원회 설치일자

- 2015년 7월 22일

설치목적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주요사업

- 해당 없음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 국가성평등지수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점검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조

- 구성(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공무원 (총 15명)	•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민간위원 (총 10명)	• (분야) 권익·복지 3명, 행정 2명, 경제 1명, 법률 1명, 청년 3명 • (별도구분) 여성 6명(60%), 비수도권 5명(50%), 현장전문가 3명(30%)
분과 (3개)	• 실무위원회 • (분과위 2개)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경제 및 의사결정영역의 여성 참여

- 위원회 운영인력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 예산(천원)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2,220	2,220	-	-
2023년	-	-	-	-	6,000	6,000	-	-
2024년	-	-	-	-	3,275	3,000	-	275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6	1	-	1	5	-	5
2023년	8	2	-	2	6	-	6
2024.9	4	1	-	1	3	1	2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안)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3년 이행점검 결과 	5.9~5.16 (서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안)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3년 이행점검 결과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추진계획(안)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4.26~4.30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안)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안) 	9.25~9.27 (서면)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이행점검 등 초등학교 교원성비 불균형 문제 논의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안) 논의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표 개선 논의 	10.18

□ K-SDGs와 양성평등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17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교육에서의 성별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5	국가통계위원회(기획재정부)	통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5-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1)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및 대응률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5-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5-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고용부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4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가부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가부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여가부
(3) 피임 실천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가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5-6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가부·과기부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8-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여가부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6-11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2) 차별 경험 비율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2005.9.1.)

위원회 설치일자

- 2005년 9월 1일

설치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주요사업

- 일생활돌봄 대책
 -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난임지원, 건강한 출생지원
- 고령화 대응
 - 고령화 고용·연령기준 조정, 고령자 건강·돌봄·주거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 축소사회 대응
 -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정책평가, 축소사회 대응

주요 심의·자문 사항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24명)

위원장 (임명권자)	• 대통령(당연직)
공무원 (총 9명)	• 대통령, 복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민간위원 (총 15명)	• (분야) 전문가 15명 • 여성 6명(40.0%), 청년 2명(13.3%), 비수도권 3명(20.0%)
분과 (4개)	• 운영위원회, 일생돌봄소위, 백세사회소위, 미래전략소위

● 위원회 운영인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총 59명)
-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 3개국, 11개과

□ 예산(천원)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746,000	310,000	2,436,000	2,000,000	4,156,000	245,000	1,922,000	1,989,000
2023년	5,512,000	300,500	2,677,500	2,534,000	4,742,000	171,694	2,131,306	2,439,000
2024년	10,497,000	300,500	2,082,500	8,114,000	12,020,631	457,338	3,559,311	8,003,982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2	2	1	1	20	19	1
2023년	29	6	4	2	23	21	2
2024.9	12	10	7	3	2	1	1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4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지침(안)	2.21
본회의(45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생 대책(안)	6.19
본회의(46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9.6
본회의(47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 지침(안)	12.31
운영위원회	• 저출산대책(안)	5.30
	• 저출생 대책(안)	6.18

□ K-SDGs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16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중위 가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 집단여부별)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 부담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일자리사업)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자수)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6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영아사망률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3-8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공공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포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3-9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4-2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5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가부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2013.1.27.)

위원회 설치일자

- 2013년 5월 1일

설치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

주요사업

-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사회보장 전략의 수립·조정·평가
- 중장기 사회보장 재원조달방안 수립
- 유사·중복사업의 연계·조정 등 사회보장정책의 효율화
-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의 작성·관리

주요 심의·자문 사항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사회보장통계
-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00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공무원 (총 15명)	●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총 00명)	● 구성중
분과 (7개)	● 실무위원회 ● 전문위원회(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 제도통합)

- 위원회 운영인력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총 38명)
 - 3개과

□ 예산(천원)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2,834,000	454,000	189,000	2,191,000	2,538,000	392,000	163,000	1,983,000
2023년	3,291,000	454,000	189,000	2,648,000	3,168,000	454,000	180,000	2,534,000
2024년	3,265,000	483,000	199,000	2,583,000	3,095,000	406,000	162,000	2,527,000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1	2	-	2	9	1	8
2023년	33	3	1	2	30	20	10
2024.9	42	3	-	3	39	34	5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32차 사회보장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4.22~23 (서면)
본회의 (33차 사회보장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지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협력방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26)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보고 	7.8~9 (서면)
본회의 (34차 사회보장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23년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보고 	11.19~20 (서면)
실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4.22~2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지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협력방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26)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보고 	7.1~2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23년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보고 	11.12~13 (서면)
기획전문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중점 핵심과제 중심 성과관리(과제 관리,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 방안 논의	1.18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이행관리 방안(과제 관리,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 및 '24년 시행계획 등 논의	2.26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3.26
	경계선 지능인 지원 현황 및 과제	4.22
	중점과제 컨설팅(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양질의 공급자 육성기반 마련 등)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지표 개발연구 중간보고	6.21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성과지표(안) 구축 결과보고	12.3
기획전문위 평가전문위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간모니터링지표 조사결과 및 활용방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별 성과지표 분석 및 보완방안 논의 	8.29

구 분	주요안건	개최
평가전문위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관련 논의 등	2.22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중간보고 • '23년 심층평가 '생애주기별 현금성 복지제도 평가' 최종보고 • '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과제선정·보고	4.26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안) •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사후관리 현황 보고	6.14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사후관리 관련논의 •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지표 수립 연구 현황보고 • 「비공식 양육· 돌봄지원제도 평가」연구용역 착수보고	7.24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중 '사업 영향 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명확화 등 일부개정 논의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추진방향 및 방법논의 • '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	10.18
	• 조건부 협의완료사업 관련 보고 • '24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보고 • '24년 심층평가 비공식 양육·돌봄지원제도 평가 최종보고	11.22
재정전문위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검토(산출 제외 검토)	1.19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기준 및 지자체 산출 방법	2.6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검토 (사회보험 산출 검토 등)	2.27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검토(지자체 및 공공기관)	3.22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안) •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개선(안) 중간 보고	5.31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추진현황 보고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안) 검토 및 논의	7.12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안) 보고 • 2024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안) 보고	10.29
제도조정전문위	• 2024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주요 사전협의 방향 등 논의	2.23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협의 방향 논의 등	4.9
	• 출산 지원 주요 안건 협의 방향 • 조건부 협의 완료사업 평가결과 후속 조치 방안	6.21
	• 지자체 아동, 다자녀 가정 진료비 지원사업 협의방향, 조건부 협의 완료 후 성과평가 결과검토 등	8.28
	• 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 검토보고 등 • 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방향	11.28

구 분	주요안건	개최
제도통합전문위	•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주요결과(농어민수당, 청년수당) 논의,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착수보고	2.29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효율화 방향 검토, 현금성 출산·양육 지원 사업 개편 방안,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재정분담체계 효율화 방안,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통합관리 추진 현황	5.24
	•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효율적 운영 관련 쟁점과 과제	6.20~24 (서면)
	•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 관계 체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 등	7.15
	• 2025년 중앙부처 통합관리 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	10.4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	• 2023년 1기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결과 보고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현안 보고	3.8
	• 사회보장통계자료 구축방안 • 소득이동통계자료 구축 범위 확대 등	5.17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협력방안	6.11
	• 「2023년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완료 보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정책영역 및 생애주기 분석」 진행 방향 보고	7.18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부담과 급여의 분포 분석」 진행방향 보고 • 「연령대별 자산빈곤율 분석」 진행 방향 보고	9.12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2025년도 사회보장 통계 운용지침(안)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정책연구 및 생애주기별 분석연구」	11.29

□ K-SDGs와 사회보장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14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1-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1-3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 원 예산 및 비율 (※긴급복지예산 = 긴급 복지지원금+일자리 사업)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 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 화한다.	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 품안정성 확보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2-1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식품부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 위 40% 인구의 균등 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 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기재부
(2) 소득격차비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기재부
(1) 소득 5분위 배율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 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 한다.	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고용부· 기재부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지부·고용부· 기재부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 배율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 의 평등을 달성한다.	1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한국개발연구원	고용부·기재부· 중기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환경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물관리기본법」 제20조(2019.6.13.)

위원회 설치일자

- 2019년 6월 13일

설치목적

-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주요사업

- 물관리 관련 정책과 현안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통합물관리, 유역물관리, 국민 안전 물관리 등
- 물 관련 주요 현안 사항 심의·결정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물관리 관련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
- 중앙-지방, 유역간 물분쟁의 조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38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배덕효(대통령)
공무원 (총 10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민간위원 (총 28명)	•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수력원자력(주) 사장,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명 • (분야) 교육인 12명, 기업인 1명, 시민사회 2명, 법조인 2명, 연구원 3명 • (별도구분) 여성 5(20%), 비수도권 13명(43%), 현장전문가 4명(13%)
분과 (3개)	• 계획·물분쟁조정·정책 분과

- 위원회 운영인력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총 58명)
 - 6개팀

□ 예산(천원)

- 2025년(안)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4,253,000	1,243,044	2,099,045	37,050	16,245	114,600	500,000	243,016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814,000	1,333,000	-	3,481,000	3,708,000	787,000	-	2,920,000
2023년	4,706,000	1,293,000	-	3,413,000	3,971,000	820,000	-	3,151,000
2024년	4,511,000	1,075,000	-	3,436,000	1,712,000	346,000	-	1,366,000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8	1	0	1	7	6	1
2023년	23	5	2	3	18	13	5
2024.9	7	1	0	1	6	6	0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관리 계획(2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5.13
계획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합성 심의 후속조치 검토 결과 보고 부합성 심의 사전 검토 2건 유역 간 물이동 심의체계(안) 보고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합성 심의 안건(안) 검토 유역 간 물이동 심의체계(안) 논의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논의 등 	4.11
정책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물공급 대책 유역위 의견 관련 부처 검토의견 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방안 보고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국가위 주요 추진과제(안) 중 물이용·물환경 분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등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국가위 주요 추진과제(안) 중 물이용·물환경 분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등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3년도 이행상황 평가 결과 보고 4대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운용 현황 보고 	6.14

□ K-SDGs와 국가물관리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12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수돗물 만족도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6-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6-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 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유역별 물순환율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6-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상수도 누수율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6-4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지방상수도 지급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물 관련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 실적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 하고 강화한다	6-6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환경부	환경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 설치근거 및 시행일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2003.7.1.)

□ 위원회 설치일자

- 2003년 9월 17일

□ 설치목적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주요 환경관련 정책·계획 심의

□ 주요사업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변경
-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
-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설정 등 주요환경 정책 심의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
-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150명)

위원장 (임명권자)	• 환경부 장관, 조홍식(호선)
공무원 (총 1명)	• 환경부 장관
민간위원 (총 149명)	• (분야) 학계 68명, 시민단체 13명, 공공기관 35명, 산업계 33명 • (별도구분) 여성 63명(42%), 비수도권 64명(42.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25명(16.7%), 청년 15명(10%)
분과 (7개)	• 환경정책·자연환경·자원순환·환경경제·기후대기·물·보건화학/생활환경

- 위원회 운영인력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예산(천원)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2,460	12,460	0	0	12,460	12,460	0	0
2023년	11,818	11,818	0	0	11,818	11,818	0	0
2024년	2,002	2,002 (간접사업) 세계환경의 날 행사개최	0	0	0	0	0	0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70	2	1	1	68	3	65
2023년	63	1	1	0	62	3	59
2024.9	64	2	2	0	62	8	54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 2024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분과별 토론	2.28
	• 하반기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분과별 토론	8.21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기후대응담 관련 자문	9.27
자연환경분과위	• 24년 자연보전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문	1.19
	• 생태·경관 보전지역 확대 심의	2.20
	•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심의 51건	1~12월 (서면)
환경경제	• 2024년 녹색전환정책관실 업무계획 자문	1.30
	•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및 BAR-AEL 수정보완 심의	3.14
	• 석유정제산업, 무기화학산업, 유기화학산업(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개정 심의	6.25
	• 발전 및 소각업종 BAT-AEL 2기 보완 심의	7.4 (서면)
물	• 2024년도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문	2.2
기후대기	• 2024년 기후변화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관실 업무계획 자문	2.19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심의	11.12 (서면)
자원순환	• 자원순환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문	2.21

□ K-SDGs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12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기후·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3-7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다.	3-8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3) 산업집중도* * 특정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이나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9-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중기부·금융위·산업부·과기부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1-7	공원위원회(환경부)	국토연구원	환경부·국토부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공원위원회(환경부)	국토연구원	환경부·국토부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2-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환경부· 산업부·중기부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 비 기본계획 수립 여부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환경부· 산업부·중기부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 보 확보율		12-4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공공분야(지방자치 단체)녹색제품 구매율		12-7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행안부· 기재부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행안부· 기재부	
(1) 육상 및 담수 생물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 비율		15-1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산림청
(2) 도심/생활권 복원		15-7		한국환경연구원	산림청·환경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 설치근거 및 시행일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19.4.25)

□ 위원회 설치일자

- 2019년 4월 25일

□ 설치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주요사업

- [Break]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 [Relationship] 국민·농어민·정부의 융합적 관계를 지향한다
- [ICT] 첨단기술에 기반한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 [Development]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 [Global] K-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형 농어업과 쾌적한 농산어촌 환경을 추구한다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30명)

위원장 (임명권자)	• 장태평(대통령)
공무원 (총 5명)	•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간위원 (총 24명)	• 농어업 단체 소속 12명, 농어업분야 전문가 12명 • 여성 5명(21%), 비수도권 9명(38%), 현장전문가 12명(40%)
분과 (7개)	•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물 • (특위)미래산림, 미래수산, 농업세계개선, 바이오경제

- 위원회 운영인력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회 사무국(총 29명)
 - 사무국장, 6개팀

□ 예산(천원)

- 2025년(안)¹⁰⁸⁾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유형자산
3,447,000	625,857	1,871,924	105,489	101,520	79,200	43,010	43,010 20,000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3,859,000	548,970	1,770,030	1,540,000	2,898,386	342,130	1,653,656	902,600
2023년	3,658,000	602,194	1,755,806	1,300,000	3,179,044	364,011	1,672,143	1,142,890
2024년	3,388,000	575,694	1,712,306	1,100,000	2,524,214	555,372	1,547,445	1,085,183

10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농림축산식품부).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4	4	2	2	10	10	0
2023년	20	4	4	-	16	16	0
2024.9	38	4	4	-	34	34	-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안) 등 4건 심의 • 농어업 관련 미래신산업 예측 및 전망 등 3건 보고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삶의질 지수 결과 및 지자체 우수사례 3건 발표 •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등 4건 보고 등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4건 심의 •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등 4건 보고 	12.18
농어업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의결사항 이행 추진상황 보고 • 2024년 농어업분과위원회 의제(안) 6건 보고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분과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 • 농어업분과 주요 의제 보고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농어업분과 위원회 주요 의제 등 보고 • 전남 선도농가 워크숍 준비 논의 등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주요의제 추진상황 보고 •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분과 주요의제 추진상황 보고 • 본회의 상정안건 검토 	11.18
농어촌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 삶의질 지표체계 및 지수 관련 세미나 계획(안) 보고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 이민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유 및 워킹그룹(안) 논의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상정안건 관련 보고 및 심의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 귀농어·귀촌 주거정책 의제 워킹그룹 진행사항 보고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결사항 추진실점 점검 •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상정 안건 보고 및 논의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 이슈페이퍼 진행사항 보고 	11.20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농수산식품분과위	• 2024년 중점추진 의제 논의 및 의견 수렴	1.18
	• 제20차 분과위 이후 추진 현황 • 본회의 안건(논의 및 의결)	2.22
	• 제5기 농수산분과위 구성 보고, 위촉장 수여 및 활동계획 보고 • 농수산분과 안건 논의 등	7.1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TF 진행경과 보고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본회의 상정 안건 의결	8.28
	• 수출TF 진행경과 보고 • 연구용역 최종보고(전통식품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25년도 신규안건 제안 발표	11.29
미래산림특위	• '23년 의제 추가 논의, '24년 중점추진의제 결정 등	1.16
	• 본회의 상정 안건(산촌공간 활성화) 논의	2.26
	• 2024년 특위 운영계획 보고	3.21
	• '24년 주요의제 추진상황 보고	6.3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결사항 추진실점 점검 • 본회의 상정 안건(산림경영 인프라) 논의	8.28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차년도 신규의제 선정	11.26
미래수산특위	• 미래 수산업 대응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필요성 논의 • 친환경 육상양식 시설 표준화 방안 마련 필요성 논의	1.26
	• 정책연구과제(미래 수산업·수산인 정의) 수행 검토·의결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안) 이슈페이퍼 작성 의결	4.15
	•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 보고안건 상정 의결 •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보고 • 정책연구과제(미래 수산업·수산인 정의) 착수보고	6.4
	• 정책연구과제(미래 수산업·수산인 정의) 중간보고 • 어업인·수산인 범위 및 어업·수산업 지원에 관한 자문의견 수렴	9.6
농업세제개선특위	• 농업 부문 가업승계 세제개선 방안 논의	2.27
	• 농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논의 • 농업 부문 가업(영농) 승계 세제 개선 방안 논의	4.19
	•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논의	5.29
	• '농어업법인 세제개선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농어업법인 활성화 의제 논의	9.20
	• 농어업법인 활성화 의제 보고안건 상정 논의 등	11.19
바이오경제특위	•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발족식 • 4개 분야 워킹그룹(협력,기반,기술,정책) 구성 및 위원별 논의안건 제안	6.18

□ K-SDGs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9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농가소득	농가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 대를 도모한다.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 축한다.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농진청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농진청
(3) 발토양 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농진청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 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 다.	2-4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진청
(1) 정부 비축미 평균 재고량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2-5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 하게 공급한다.	6-1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 를 제공한다	6-2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
(1) 어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4-6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교육부	교육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평생교육법」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2008.2.15.)

위원회 설치일자

- 2022년 12월 12일

설치목적

-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주요사업

- 해당 없음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실적 평가
-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조

- 구성(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교육부 장관(당연직)
공무원 (총 10명)	•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민간위원 (총 10명)	• 기관, 학계, 현장활동가 각 2명, 지역, 단체, 산업계, 장애인 분야 각 1명 • 여성 4명(40%), 비수도권 5명(50%), 청년 0명(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2명(20%),
분과	• 평생교육실무조정(1개)

- 위원회 운영인력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예산(천원)

- 4개년(2022~2025) 예산집행 실적¹⁰⁹⁾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500	4,500	-	-	1,400	1,400	-	-
2023년	4,500	4,500	-	-	-	-	-	-
2024년	4,500	4,500	-	-	900	900	-	-
2025년	4,500	4,500	-	-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0	2	0	0	0
2023년	0	0	0	0	0	0	0
2024.9	1	1	0	1	0	0	0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 해당 없음

□ K-SDGs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9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3)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3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109) 2025년도 교육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1) 평생학습 참여율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4-4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성인 문해율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6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외교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외교부
(3) 교육과정 내 세계 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외교부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20.11.27)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20.11.27)

위원회 설치일자

- 2010년 7월 26일

설치목적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

주요사업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의 종합·조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수정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변경
-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수정
-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회계 등 기관 운영
-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의 운영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인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관 협력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29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공무원 (총 15명)	● 국무총리,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민간위원 (총 14명)	● 교육인 5명, 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 여성 5명(42%), 비수도권 1명(8.3%), 청년 1명(8%),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명(42%)
분과 (3개)	● 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 위원회 운영인력
 - 국제개발협력본부(35명)
 - 2개국, 6개과

□ 예산(천원)

- 2025년(안)¹¹⁰⁾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5,396,000	78,775	1,450,386	258,000	81,000	3,257,000	8,839	262,000

110) 국무조정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2025년).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2,254,000	208,800	238,400	1,806,800	2,052,400	205,000	238,400	1,609,000
2023년	2,870,000	242,540	225,460	2,402,000	2,720,000	237,090	244,610	2,238,300
2024년	2,972,000	317,557	246,443	2,408,000	1,982,061	250,690	222,910	1,508,462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1	4	2	2	7	6	1
2023년	10	4	2	2	6	3	3
2024.9	9	3	2	1	6	3	3

● 2024년 회의 주요안건(홈페이지 참고)

구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제48차 개발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제48-1호)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48-2호)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안)_국개위 (제48-3호)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_국개위 	2월
본회의 (제49차 개발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제49-2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안) (제49-3호) ODA 정보공개 추진방안(안) 	4월
본회의 (제50차 개발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공개) (제50-3호) 2023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공개) 	6월
본회의 (제51차 개발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51-1호) 중남미 개발협력전략 (51-2호) 2024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51-3호)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규정 개정안 	12월
실무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2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4.9~12 (서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6.20
평가전문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6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9.11~13 (서면)

□ K-SDGs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8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3) 정부의 ODA 중 해양 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수산부·외교부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16-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인권위
(1) ODA/GNI 비율(%)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기재부·국조실
(1)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재부·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2)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		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재부·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7-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교부·기재부·과기부·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17-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기재부·국조실
(2) ODA 민간협력 재원의 비율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7-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2012.8.5),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2012.8.5)

위원회 설치일자

- 2013년 5월 13일

설치목적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아동정책 심의·조정

주요사업

- 해당 없음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구조

- 구성(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공무원 (총 10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민간위원 (총 15명)	• 사회복지·아동(2명), 의학(2명), 법학(2명), 언론(1명), 문화예술(1명), 청년(2명), 아동 관련 단체장(2명), 교육(2명), 보육(1명) • 여성 7명(46.7%), 청년 2명(13.3%), 비수도권 6명(40%)
분과 (1개)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위원회 운영인력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 예산(천원)

- 해당 없음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1	1	-	1	-	1
2023년	2	1	1	-	1	-	1
2024.9	2	1	-	1	1	-	1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제48차 개발협력위원회)	• 출생통보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추진 상황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 2023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3.25
	• 출생통보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추진 상황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 2023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3.29

□ K-SDGs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7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6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 리사회적 안녕(well- 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 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4-2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 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수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 한다.	16-2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찰청·복지부
(2)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경찰청·복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대통령	고용노동부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2018.6.12.)

위원회 설치일자

- 1998년 1월 15일

설치목적

-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격차해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약자보호(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관행개선(불공정한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 지속가능(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주요 심의·자문 사항

-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위원회 구조

- 구성(총 17명)

위원장 (임명권자)	• 권기섭(대통령)
공무원 (총 2명)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원 (총 14명)	• 상임위원 1명, 노동계 4명, 경영계 5명, 민간전문가 4명 • 여성 2명(33.3%), 비수도권 0명(0%), 장애인 0명(0%)
분과 (8개)	•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이행점검위원회, 지속가능한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 위원회 운영인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총 40명)
 - 상임위원(사무처장), 기획위원
 - 1개국, 3개실, 2개과

□ 예산(천원)

- 2025년(안)¹¹¹⁾

합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해외이전 유형자산
3,905,000	635,186	2,595,157	89,300	256,600	72,200	200,000	28,677 17,880 10,000

- 3개년(2022~2024) 예산집행 실적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3,355,000	3,355,000	-	-	3,141,573	3,141,573	-	-
2023년	3,291,000	3,291,000	-	-	3,156,801	3,156,801	-	-
2024년	3,530,000	3,530,000	-	-	3,435,906	3,435,906	-	-

111) 2025회계연도 예산각목명세서(고용노동부).

□ 활동 결과

● 3개년 회의 개최실적(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09	1	-	1	108	107	1
2023년	16	-	-	-	16	16	-
2024.9	119	3	1	2	116	113	3

● 2024년 회의 주요안건

구 분	주요안건	개최
본회의	• 안건 확인 불가	출석1회 서면2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 향후 회의체 운영방안 논의 등	23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	25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	27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 향후 회의체 운영방안 논의 등	17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 공익위원 의견 검토 등	24회

□ K-SDGs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세부목표/지표 3개

지표	세부목표	세부 목표번호	관련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
(2) 창업기업 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8-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중견기업정책위원회(산업통상 자원부)	한국노동연구원	중기부
(1) 남녀 임금격차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8-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여가부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한국개발연구원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부록 3] 정부위원회와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간 연관성 검토 총본

-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간 연관성 검토 총본은 다음과 같음
- 분석 대상
 - 현행 K-SDGs: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 정부위원회 총 576개(정부위원회 572개+헌법상 위원회 4개)
- 양식 안내(예)

목표 00 『K-SDGs 17개 목표 명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연구 기관
K-SDGs 세부목표 번호	K-SDGs 세부목표 내용	K-SDGs 세부목표 지표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부처	기본법 14조에 근거한 지 속가능성과 밀접한 사전검 토 대상 198개 행정계획 (분량상 행정계획 수립근거 법률은 제외함)	198개 행정계획에 대 한 소관 심의 위원회 (해당계획에 법률적 위 원회임)	198개 행정계획 소 관위원회 아니지만, K-SDGs 세부목표, 지표와 관련한 상위 위원회(대통령 또는 총리)와 밀접한 정부 위원회를 기술	해당 세부목 표와 관련한 정책지원을 하는 연기기 관으로 출연 연구기관과 정부연구원 을 기술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1	남녀노소, 장애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 으로 줄인다.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 율 (성별, 연령집단 별, 장애집단여부 별)	보건복지부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4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14.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 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대통령)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복지 급여(소득 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보건복지부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고, 빈곤층 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 장을 달성한다.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4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대통령)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고용보험 가입률	보건복지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 구원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보건복지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3	빈곤층과 취약계 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 다.	(1)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보건복지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개발연 구원
		(2) 사회복지 서비스 업 종사자 비중	보건복지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4	빈곤층과 취약계 층의 경제·사 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 고, 회복력을 강 화한다.	(1) 취약계층 긴급복 지지원 예산 및 비율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일 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대통령)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보건복지부	35.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148.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 무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1) 소득수준 하위 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농식품부	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2	농가 소득원을 다 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 여 농가소득 증대 를 도모한다.	(1) 농가소득	농식품부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 농작물 재해보 험 가입률	농식품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대통령)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3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를 구축 한다.	(1) 유기농업 인증 면적 비율	농식품부· 농진청	170.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없음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 농경지 토양유 기물 함량	농식품부· 농진청	170.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없음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3) 밭토양 산도	농식품부· 농진청	170.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없음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4	종자, 작물, 가축 의 유전적 다양성 을 유지하고 신종 종을 개발한다.	(1) 종장기 보존시 설에 확보된 식물유 전자원 점수	농진청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 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 구원
		(2) 종장기 보존시 설에 확보된 동물유 전자원 점수	농진청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 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 구원
		(3) 기후변화에 대 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농진청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대통령)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 량 접근성을 보장 한다.	(1) 정부비축미 평 균재고량	농식품부	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 별위원회 (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당뇨병 조절률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성인 흡연율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1)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보건복지부	139.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15세이상 인구1인당 알코올 섭취량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교통사고등 각종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 교통사고 사망자수(1천 명당)	국토교통부	24.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한국교통연구원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인구 10만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모성의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보건복지부	7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3-6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보건복지부	7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보건복지부	7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기후·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환경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60.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환경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환경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6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45.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없음(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1) 영아사망률	보건복지부	7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보건복지부	47. 장기요양기본계획 4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보건복지부	47. 장기요양기본계획 4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1) 공공 병상 수(인구 천 명당)	보건복지부	1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 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유아교육보육위원회(국무총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3) 국가수준 학습 성과지표 산출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교육부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교육부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115.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교육부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133.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교육부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114.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 학생 1인당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교육부	136.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67.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없음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4-4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교육부	3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167.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없음 없음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교육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교육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국가통계위원회(기획재정부)	통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 추도록 한다.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교육부	없음	없음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성인 문해율	교육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기초학력보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4-7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교육부·외교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사업 비율	교육부·외교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교육부·외교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교육부·외교부	17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중앙교육정책심의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 학교 내진보강률	교육부	22. 교육시설기본계획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교육시설정책위원회(교육부) 없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교육시설정책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국가재정운용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교육개발원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교육부	133.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중앙유아교육위원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중앙교육정책심의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부	23.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없음	중앙교육정책심의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목표 5 『성평등 보장』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을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2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여가부	12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여가부	12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여가부	12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여가부·고용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6. 건강가정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없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민간부문 여성관리자 비율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5-5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개발원
		(3) 피임 실천율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 5 『성평등 보장』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여가부·과기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대학교 여성과 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여가부·과기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통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건의 수용률	여가부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1) 수돗물 만족도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 연구원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한국환경 연구원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한국환경 연구원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17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없음		한국환경 연구원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1) 유역별 물순환율	환경부	108.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09.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65.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없음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 연구원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환경부	77.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없음 없음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 구원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환경부	77.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없음 없음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 연구원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상수도 누수율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100.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없음		한국환경 연구원
		(2) 지방상수도 자급률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100.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없음		한국환경 연구원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76.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17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없음 없음		한국환경 연구원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환경부	4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44.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29.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환경부	4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44.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29.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환경부	112. 습지보전기본계획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운영 실적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환경부	7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산업부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에너지경제연구원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산업부	110.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22.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52. 전력수급기본계획	없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경제연구원
		(2)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산업부	110.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22.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52. 전력수급기본계획	없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1) 국가에너지효율 지표	산업부·국토부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에너지경제연구원
		(2) 건물에너지효율 지표	산업부·국토부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1) 친환경차 확대 수	환경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19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없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교통연구원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환경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19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없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에너지경제연구원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1)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기재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한국개발연구원 (KDI)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고용노동부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5.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노동연구원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고용노동부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5.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8-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중기부	159.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없음 없음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한국노동연구원
		(2) 창업기업 수	중기부	9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58.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없음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한국노동연구원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남녀 임금격차	고용노동부·여가부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42.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1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없음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5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고용노동부·법무부	150.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노동연구원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고용노동부·법무부	12.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42.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168.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노동부) 없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노동연구원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노동부	42.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9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 전체 재해율	고용노동부	42.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9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9-1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보급률	국토부·통계청·과기부	66.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국토부·통계청·과기부	없음	없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국무총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중기부·금융위·산업부·과기부	없음	없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중기부·금융위·산업부·과기부	없음	없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국무총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산업집중도* * 특정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이나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중기부·금융위·산업부·과기부	50.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9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196.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중양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없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산업연구원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 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인력의 다양성, 혁신 클러스터 발전정도, 인구백만명 당 국제공동발명건수, 이해관계자간 협력, 과학논문의영향력지수, 인구백만명 당 특허출원 건수, GDP 대비 R&D투자, 연구기관 역량지수, 구매자의 성숙도, 인구백만명 당 상표출원 건수	과기부·산업부·중기부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9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9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96.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97.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18. 과학기술기본계획 13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176.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국무총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국가우주위원회(대통령)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발행하는 지수로, 국가별 혁신 능력과 성공 정도(7개의 기본 혁신 기둥을 바탕으로 각 경제를 측정하며, 7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입 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96.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97.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1) GDP 대비 연구 개발비	과기부·산업부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과기부·산업부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부·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07.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13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94.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수소경제위원회의(국무총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산업부·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 율을 국가평균보 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 다.	(1) 전체 인구의 균 등화한 가구소득 대 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 구소득의 비율	복지부· 기재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소득격차비율	복지부· 기재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0-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지위 등과 관 계없이 모든 사람 에 대한 사회·경제· 정치적 포용성 을 확대한다.	(1) 소득 5분위 배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 소득 1, 2분위 가 구의 순자산 점유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8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10-3	나이, 성별,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적 대우를 철폐하 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 인구집단별 고 용률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2.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 25.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노동 연구원
		(2) 장애인의무고용 률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3.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 14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 (국무총리)	한국노동 연구원
10-4	재정정책, 임금정 책, 사회보호정책 을 강화하여 더 높 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 GDP 대비 노동 소득 분배율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42.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없음	경제사회노동 위원회(대통령) 사회보장위원 회(국무총리)	한국개발 연구원
10-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 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 해 환경을 조성한 다.	(1) 이주민 권리보 장에 관한 국제/국 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법무부· 여가부	150.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국민통합위원 회(대통령)	한국법제 연구원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 례 제정률	법무부· 여가부	150.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국민통합위원 회(대통령)	한국행정 연구원
		(3) 국민 다문화 수 용성 지표	법무부· 여가부	58.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50.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통합위원 회(대통령)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 화 교육 이수시간	법무부· 여가부	58.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50.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행정 연구원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국토부	38. 국토종합계획 156. 주거종합계획	국토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국토연구원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국토부	146.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없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3)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및 재정 집행액	국토부	146.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없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국토부·행안부	29.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2) 저상버스 보급률	국토부·행안부	29.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63.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3) 자전거 수단분담률	국토부·행안부	69.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방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국토부·행안부	38. 국토종합계획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국토연구원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국토부·행안부	없음	없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한국행정연구원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세계유산 등재건수	문화재청	73.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문화재청	73.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기본계획 126.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 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명)	행안부·국토부	24.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82.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66.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2. 안전교육기본계획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 (국도교통부) 없음 중앙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 (행정안전부) 없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없음 없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 예산액	행안부·국토부	148.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 미세먼지 나쁨일 수	환경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	60.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6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환경부) 없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2)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mu\text{g}/\text{m}^3$)	환경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	60.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6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환경부) 없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연구원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일)	환경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	143. 순환경제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	환경부·국토부	68. 공원녹지기본계획 70. 도시숲등 기본계획 140. 공원기본계획	없음 없음 공원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	국토연구원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환경부·국토부	68. 공원녹지기본계획 70. 도시숲등 기본계획 140. 공원기본계획	없음 없음 공원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	국토연구원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채 연구기관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기재부·환경부·산업부·중기부	143. 순환경제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재부·환경부·산업부·중기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환경부·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물 질 흐름 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 수	환경부·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12-3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 식품 손실 지수	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환경부	145.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환경부	19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19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2-5	폐기물의 원천 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43. 순환경제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43. 순환경제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채 연구기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산업부·중기부	9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없음		산업연구원
		(2)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산업부·중기부	9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없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산업연구원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환경부·행안부·기재부	5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환경부·행안부·기재부	5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환경부	193. 국가환경교육계획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환경부	193. 국가환경교육계획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2-9	플라스틱이 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환경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부	143. 순환경제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 수	환경부·문체부	19.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0.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국무총리) 없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에너지경제연구원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기상청· 농촌 진흥청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48.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환경부·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 기후·에너지 전담 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환경부·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부)		한국환경연구원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환경부·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환경부·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환경부· 산업부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환경교육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국조실·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농촌진흥청·산림청	4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3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 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 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해수부·환경부	10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18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187.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없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해양수산부)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2)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수부·환경부	18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187.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해양수산부)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갯벌복원면적	해수부·환경부	5.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18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국가습지심의위원회(환경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2)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해수부·환경부	181.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18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양수산부	186.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1) 총 허용 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해양수산부	105.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중앙수산조정위원회(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1)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해수부·환경부	178.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18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86. 해양환경종합계획 187.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없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해양수산부	18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81.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182. 해양심층수기본계획 18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없음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4-7	해양과학 연구 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 전을 확대한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해양수산부	17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해양수산부	19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없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수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해수부· 외교부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해양수산부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1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해양수산부	105.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중앙수산조정위원회(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육상 및 담수 생물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환경부·산림청	14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환경부·산림청	87. 산림기본계획 95.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정책협의회(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 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산림청	87. 산림기본계획	산림정책협의회(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환경부·국토부·산림청	89. 산림복원 기본계획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정 수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3)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87. 산림기본계획 95.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정책협의회(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4) 종 보호 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5)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15-5	야생생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생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1)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환경부·기재부·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한국환경연구원
		(2)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환경부·기재부·문화재청	117.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없음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채 연구기관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	195.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산림청·환경부	80.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2)도심/생활권 복원	산림청·환경부	195.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경찰청·교육부	8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학교폭력피해 경험	경찰청·교육부	17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국무총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수	경찰청·복지부	6. 건강가정기본계획	없음(여성가족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경찰청·복지부	113.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법무부·경찰청·행안부·인권위	8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권익위	없음	없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마약범죄건수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권익위	없음	없음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총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5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를 감소시킨다.	(1) 부패경험지수	국민권익위원회	없음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전부처	없음	없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한국행정연구원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전부처	없음	없음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	한국행정연구원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복지부·법무부	없음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채 연구기관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전부처	없음	없음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행정 연구원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전부처	없음	없음		한국행정 연구원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외교부·인권위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없음	없음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
		(2) 차별 경험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없음	없음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인권위·법무부·경찰청	없음	없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인권위·법무부·경찰청	없음	없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통일연구원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관련 행정계획 (시행령 기준 198개)	소관 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 관련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ODA/GNI 비율 (%)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한다.	(1)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	기재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	기재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17-4	전략적인 개발협력력을 추진한다.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환경 연구원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환경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한국환경 연구원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 다자간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외교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15.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위원회(외교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7-7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외교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대통령)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환경 연구원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외교부· 지속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	36.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부록 4] 네트워크분석(전체)

Label	closeness	degree	level	metrics::last	weight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0.0902256	21	3	0.09022556	5
중앙환경정책위원회	0.0726817	15	1	0.0726817	3
사회보장위원회	0.0463659	12	2	0.04636591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0463659	10	3	0.04636591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0363409	10	3	0.03634085	2
양성평등위원회	0.0463659	9	2	0.04636591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0.0357143	7	2	0.03571429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0.0388471	7	3	0.03884712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0.0219298	5	1	0.02192982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0.0281955	5	1	0.02819549	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0.0213033	5	2	0.02130326	2
국가물관리위원회	0.0219298	5	3	0.02192982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0.0181704	4	1	0.01817043	1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0.0181704	4	1	0.01817043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	0.0244361	4	3	0.02443609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0.0206767	4	2	0.02067669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0.0175439	4	3	0.01754386	1
고용정책심의회의	0.0213033	4	1	0.02130326	1
에너지위원회	0.0213033	4	1	0.02130326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0275689	4	2	0.02756892	1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181704	4	1	0.01817043	1
국가교통위원회	0.0225564	4	1	0.02255639	1
중앙산지관리위원회	0.0181704	4	1	0.01817043	1
산림정책협의회	0.0144110	3	1	0.01441103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0.0144110	3	1	0.01441103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0.0106516	3	1	0.01065163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0.0206767	3	2	0.02067669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0.0144110	3	1	0.01441103	1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0144110	3	1	0.01441103	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0.0175439	3	3	0.01754386	1
국민경제자문회의	0.0106516	2	3	0.01065163	1
국민통합위원회	0.0137845	2	3	0.01378446	1

Label	closeness	degree	level	metrics::last	weight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0.0106516	2	2	0.01065163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0.0150376	2	1	0.01503759	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0.0068922	2	1	0.00689223	1
국토정책위원회	0.0119048	2	2	0.01190476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0.0106516	2	1	0.01065163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0.0106516	2	1	0.01065163	1
국가습지심의위원회	0.0137845	2	1	0.01378446	1
지방시대위원회	0.0119048	2	3	0.01190476	1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0.0106516	2	1	0.01065163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0.0137845	2	1	0.01378446	1
외국인정책위원회	0.0137845	2	2	0.01378446	1
중앙유아교육위원회	0.0106516	2	1	0.01065163	1
국가교육위원회	0.0106516	2	3	0.01065163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0.0137845	2	2	0.01378446	1
무형유산위원회의	0.0119048	2	1	0.01190476	1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0.0068922	2	1	0.00689223	1
아동빈곤예방위원회	0.0137845	2	1	0.01378446	1
기초학력보장위원회	0.0106516	2	1	0.01065163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0.0137845	2	2	0.01378446	1
미세먼지특별위원회	0.0150376	2	2	0.01503759	1
환경교육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공공외교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0.0068922	1	3	0.00689223	1
국가우주위원회	0.0068922	1	3	0.00689223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국립공원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수소경제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중앙연안관리심의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국가관광전략회의	0.0068922	1	2	0.00689223	1

Label	closeness	degree	level	metrics::last	weight
여성폭력방지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고용보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화학물질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068922	1	3	0.00689223	1
새만금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감염병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마약류대책협의회	0.0068922	1	2	0.00689223	1
지방교통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정보공개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도시개발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자연유산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유아교육보육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국가치매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금강수계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재정운용전략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0.0081454	1	2	0.00814536	1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문화유산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도로정책심의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청소년보호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국가통계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Label	closeness	degree	level	metrics::last	weight
전력정책심의회	0.0068922	1	1	0.00689223	1
교육시설정책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장기요양위원회	0.0068922	1	1	0.00689223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0.0081454	1	1	0.00814536	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0.0068922	1	2	0.00689223	1
국가안전보장회의	0.0068922	1	3	0.00689223	1

[부록 5] 국가위원회 - 정부위원회 간 협력 방안

1. 국가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 정책수립 단계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책 부족함.
 -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여전히 낮은 체감도,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며, 빠른 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양질의 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는 부족.
 - 국가위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분야의 비전으로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건강복지'를 설정하려고 하며, 이는 소관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 필요.
- 협의주체
 - 약자 협의(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요의제 * 목표와 비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예시)
 - 목표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비전 : 양극화, 고령화, 팬데믹에 대응하는 건강복지
 - 추진전략1 : 모성 건강 보호 및 증진
 - 추진과제1 :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 추진전략2 :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 추진과제2 :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 추진전략3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추진과제3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관련 협의 대상 일부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일부 예시)

분야	사회		
지속가능발전 비전	양극화, 고령화, 팬데믹에 대응하는 건강복지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추진전략	모성 건강 보호 및 증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	산모와 영아 사망률 감소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지표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1) 영아사망률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1.3명(현) • 2030 : 7.7명 • 2040 :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5명(현) • 2030 : 지속 감소 • 2040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 2.8%(현) • 2030 : 2.5% • 2040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74.5%(현) • 2030 : 추후 보완 • 2040 :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6.1(현) • 2030 : 7.0 • 2040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74.5%(현) • 2030 : 추후 보완 • 2040 :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56.7%(현) • 2030 : 82% • 2040 :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1.5%(현) • 2030 : 지속 감소 • 2040 : 지속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 74.7%(현) • 2030 : 74.0% • 2040 : 75.0%
위원회 협의	양자협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협의 의제 및 내용

- SDGs 3번 목표와 비전의 적절성
 - 목표(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와 비전(양극화, 고령화, 팬데믹에 대응하는 건강복지)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가? 저출산·고령위도 동의하는가?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 적절성
 - 세부목표(모성건강보호, 아동건강보호, 저출생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는 적절한가?
-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적절성
 -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와 이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서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출산·고령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지표의 적절성
 - 2018년 현재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11.3명 → 2030: 7.7명, 2040: 6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 미흡하지 않은가? 저출산·고령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필요시 저출산·고령

위에서 가능한 목표치 제시 필요)

- 다른 세부목표(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와 추진전략(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은 적절한가?
 - 지표의 목표치는 적절한가? 미흡하지 않은가? 저출산·고령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필요 시 저출산·고령위에서 가능한 목표치 제시 필요)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5명(현) • 2030 : 지속 감소 • 2040 : 1명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74.5%(현) • 2030 : 추후 보완 • 2040 : 85.0%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1.5%(현) • 2030 : 지속 감소 • 2040 : 지속 감소

- 다른 세부목표(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와 추진전략(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은 적절한가?
 - 지표의 목표치는 적절한가? 미흡하지 않은가? 저출산·고령위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필요 시 저출산·고령위에서 가능한 목표치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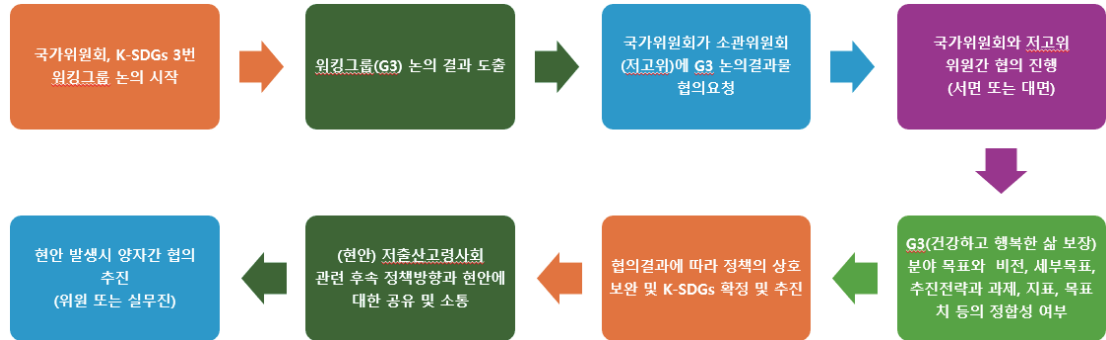
(1) 영아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 2.8%(현) • 2030 : 2.5% • 2040 : 2.1%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6.1(현) • 2030 : 7.0 • 2040 : 8.0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관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56.7%(현) • 2030 : 82% • 2040 : 85%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 74.7%(현) • 2030 : 74.0% • 2040 : 75.0%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K-SDGs 3번 목표 전반에 대해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관련 핵심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협의 요청.
- 국가위원회에서 Goal 3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G3)의 논의 결과물(초안)을 토대로 저출산·고령위와 협의.
- 논의 대상은 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는 '양극화, 고령화, 팬데믹에 대응하는 건강복지'를 위

한 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지표의 목표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 협의주체는 목표 수립에 참여하는 양쪽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담당관.
- 협의방식은 서면 검토양식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



〈K-SDGs 3번 의제(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양자 협의절차〉

나. 일상 추진 또는 점검 단계

● 협의 내용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정책의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 수립 시, 저출산·고령위와 협의로 확인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위에 지표 추진현황 점검요청(지표 점검표 양식 송부) → 저출산·고령위 내부적으로 지표 점검 및 국가위원회로 회신(향후 추진방향 포함) → 국가위원회는 현저하게 지속가능성에 저해하거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위와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단계

● 협의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위원회는 저출산·고령위가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과정에서 국가위원회와 저출산·고령위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 파악 및 검토일정 협의 →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저출산·고령위 심의 2~3개월 전) 국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송부요청 협의 → 국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위로부터 송부받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30일) 및 필요시 저출산·고령위와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저출산·고령위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를 저출산·고령위에 회신 및 필요시 저출산·고령위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저출산·고령위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저출산·고령위가 반영결과에 대해서 국가위원회에 회신.

2. 국가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정책수립 단계 (K-SDG 8번 목표)

- 추진 배경

- 대한민국 인구가 2060년대 후반 4,000만 명 이하로 전망되고 그 사이 노인 인구가 1,82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저성장 역시 고착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이런 가운데 고소득 가구의 자산소득 집중이 심해지면서 자산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에 국가위원회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설정했으며, 이는 유관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협의주체

- 양자 협의(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주요의제 * 목표와 비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예시)

- 목표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비전 :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 추진전략1 :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 추진과제1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추진과제2 :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 추진전략2 : 취약집단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청년 구직난 해소
 - 추진과제3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추진과제4 :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 추진전략3 (이하생략)

● 일자리·경제 분야 협의 대상 일부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분야	일자리·경제			
지속가능발전 비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세부목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8.5 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추진전략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취약집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청년 구직난 해소	
추진과제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지표	인구집단별 고용률 (성별/연령별/장애여부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성별, 연령집단별 61.5% • 장애인 34.9% • 2030 : 지속 확대 • 2040 :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36.4% • 2030 : 지속 감소 • 2040 : 지속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외국인 65.3% • 귀화허가자 64.8% • 2030 : 안정적 유지 • 2040 : 안정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산출식 개발 필요 • 2030 : 지속 감소 • 2040 : 지속 감소
위원회 협의	양자협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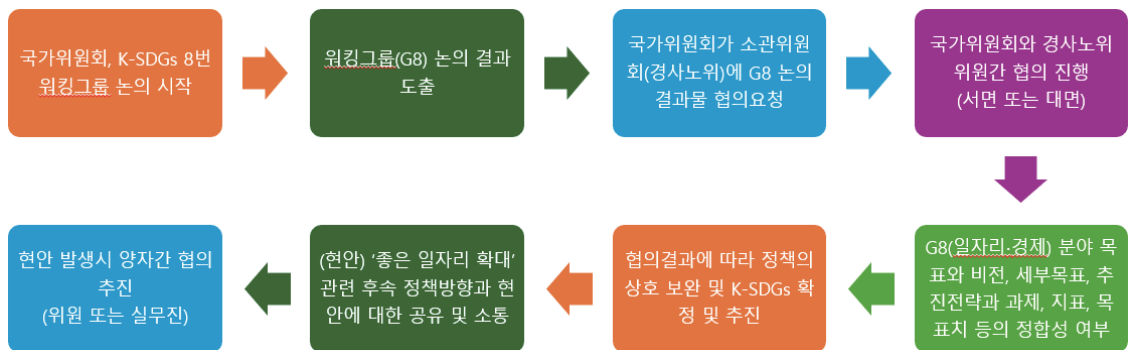
● 협의 의제 및 내용

- SDGs 8번 목표와 비전의 적절성
 - 목표(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와 비전(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동의하는가?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의 세부목표 적절성
 - 세부목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적절한가?
-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적절성
 -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과 이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서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① 인구집단별 고용률' 목표의 적절성 : 2019년 기준 고용률 비중 61.5%(성별/연령집단별), 34.9%(장애인) → 2030년 '지속 확대', 2040년 '지속 확대'가 적절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②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목표의 적절성 : 2019년 기준 36.4%를 2030년 '지속 감소', 2040년 '지속 감소'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 또한, 다른 세부목표 8.5 '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와 추진전략(취약집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청년 구직난 해소)은 적절한가?
- 다음 지표의 목표치는 적절한가?
 - ①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 2019년 기준 65.3%(외국인), 64.8%(귀화허가자) → 2030년 '안정적 유지', 2040년 '안정적 유지'가 적절한가?
 - ②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 통계 산출식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2030 '지속 감소', 2040 '지속 감소'가 적절한가?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K-SDGs 8번 목표 전반에 대해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관련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협의 요청.
- 국가위원회에서 Goal 8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G8)의 논의 결과물(초안)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
- 논의 대상은 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지표의 목표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 협의주체는 목표 수립에 참여하는 양쪽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담당관.
- 협의방식은 서면 검토양식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



〈K-SDGs 8번 의제(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양자 협의절차〉

나. 일상 추진 또는 점검 단계

- 협의 내용
 -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정책의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 수립할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인구집단별 고용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등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 협의 절차
 - 국가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지표 추진현황 점검요청(지표 점검표 양식 송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적으로 지표 점검 및 국가위원회로 회신(향후 추진방향 포함) → 국가위원회는 현저하게 지속가능성에 저해하거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

3. 국가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의제: K-SDG 8번 목표 중 '성차별 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경제 저성장 추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세대별·성별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성별임금 격차, 청년실업, 근로빈곤 확산 등과 같은 갈등 요소로 인해 사회통합 및 연대가 저하되고 있음.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이 시작된 이래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및 남성에 비해서는 낮음. 특히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하고 고용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 승진 전망 등에서 차별 또한 여전해 관련 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가위원회는 수립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를 필요함.
- 협의 주체
 - 다자협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협의 대상,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일부 예시)
 - 추진전략 : 성차별 없는 일터

- 추진과제 : 성차별 없는 일터 (* 추진전략과 동일)

● 협의 의제 및 내용

- K-SDGs 8번 목표와 비전의 적절성은 국가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 완료.
- 추진과제에 대한 주관부처 또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 중 어디로 할 것인가? 주관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는 양성평등위원회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 목표와 비전을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의 적절성
 - 세부목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적절한 세부목표인가?
-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인 ‘성차별 없는 일터’는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동의하는가?
 - ① 남녀 임금격차’ 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 2019년 현재 67.8%에서 2030년 85.5%, 2040년 ‘지속 증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목표인가?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일자리·경제 부문 협의 대상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일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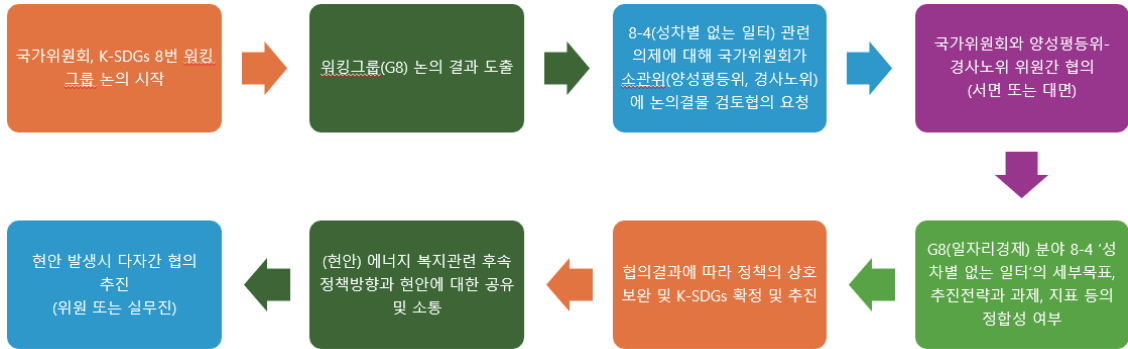
분야	일자리·경제
지속가능발전 비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추진전략	성차별 없는 일터
추진과제	성차별 없는 일터
지표	남녀 임금격차
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현재) : 67.8% • 2030년 : 85.5% • 2040년 : 지속 증가
위원회 협의	다자협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협의절차

- 국가위원회가 K-SDGs 중 일자리·경제 분야 논의 시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협의 요청.
- 논의 의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세부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지표, 지표의 목표치 등 세

부사항에 대한 적절성, 지속가능성 협의.

- 협의주체는 목표 수립에 참여하는 각 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담당관.
- 협의방식은 서면 검토양식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



〈K-SDGs 8번 의제(성차별 없는 일터) 다자 협의절차〉

나. 일상 추진 또는 점검 단계

● 협의 내용

- 성차별 없는 일터 관련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 수립할 때 양성평등위원회와 협의로 확인한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 협의 절차

- 국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에 지표 추진현황 점검요청(지표 점검표 양식 송부) → 양성평등위원회 내부적으로 지표 점검 및 국가위원회로 회신(향후 추진방향 포함) → 국가위원회는 현저하게 지속가능성에 저해하거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성평등위원회와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

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단계

● 협의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과정에서 국가위원회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지만, 양성평등위원회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협의 절차

- 국가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기 파악 및 검토일정 협의 →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양성평등위 심의 2~3개월 전) 국가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송부요청 협의 → 국가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송부받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30일) 및 필요시 양성평등위원회와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양성평등위원회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양성평등위원회에 회신 및 필요시 협의(국가위원회 검토위원 또는 담당관 + 양성평등위원회 담당위원 또는 담당관) → 여성가족부가 반영결과에 대해서 국가위원회에 회신.